우수한 교육을 전수는 체리크릭 학군

2025 년 7 월 1 일

학생 품행 및 규율, 권리와 의무
www.cherrycreekschools.org

체리 크릭 학교 학군:
우리 학교 학군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에게 생각하며 배우며 성취하며 서로 도웁는 것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이 사명은 안전하고 질서가 정연한 학교 및 학급에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운영하는 학교는 합리적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규정과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은 전반적인 학습 환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 크릭 학군의 교육 위원회는 학군 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 위원회는 안전 및 징계에 대한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책자를 발간하는 목적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학교 위원회의 방침 및 학생들의 책임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학교 구역의 방침은 학기 동안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방침 및 규정에 대한 전체 내용은 각 학교의 교장실이나 학군의 행정실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Cherry Creek School District No. 5
4700 South Yosemite Street
Greenwood Village, Colorado 80111
303-773-1184

학교 구역의 방침 및 규정에 대한 책자 사본은 www.cherrycreekschools.org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체리크릭 학군은 학군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나이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어 능력의 부족이 입학 또는 학군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체리크릭 학군 5는 고용 또는 고용관행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1973년 504 재활법, 1972년 교육 개정 타이틀 IX, 1975년 연령 차별법 및 1990년 미국 장애인법으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질문, 불만 또는 요청은 지정된 준법 감시인에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Stephanie Davies, 지정된 준법 감시인 입니다. Educational Services Center (교육청), 4700 S. Yosemite Street, Greenwood Village, CO 80111 720-554-4471 또는 직접 미정부 교육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VIII, Federal Office Building 1244 North Speer Blvd., Suite #310, Denver, CO 80204.

Stephanie Davies, District Compliance Officer
4700 South Yosemite Street
Greenwood Village, Colorado 80111
720-554-4471

목 차

학부모를 위한 권리 및 책임 고지 (Parent Notification of Rights & Responsibilities)

FERPA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에 따른 권리의 고시	1-2
PPRA	체리크릭 교육구 5 학군 학생의 권리보호 수정조항에 따른 권리의 고시	3
C.R.S. 21-1-124	학부모를 위한 성범죄자 정보에 관한 고지	4
JICA-E	학생의 행동감시를 위한 비디오 카메라 사용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고시	5
JLDAC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스크리닝/테스팅에 관한 고시	5-8

학생의 권리 및 책임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C	협박/괴롭힘/체벌	8
ACD	학생 괴롭힘 및 차별 방지	8-14
ADC	마약 및 담배 없는 학교	14-15
JICC	학교 버스 내의 학생 행동	15
JH	학생의 결석 및 사유	16-18
JHB	무단 결석 및 이탈	18-19
JIC	학생의 품행	19-20
JICA	학생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	20
JICA-R	학생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	20-21
JICAB	학생의 복장 규정	22-23
JICDA	품행 및 징계 규정	23-25
JICDB	폭력 및 공격적인 행동	25-26
JICDE	약자폭행 예방 및 교육	27
JICEA	학교관련 학생의 출판	27-28
JICEA-R	학교관련 학생의 출판/학교 출판 규정	28-29
JICEC	학생의 비학과 이수과정 자료배포	29-30
JICED	학생의 의사 표현 권리	30
JICF	비밀조직/깡패 조직 활동	31
JICH	학생에 의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31-33
JICH-R	학생에 의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33-39
JICHA	학생에 의한 담배 사용	39-40
JICI	학교 내의 무기소지	40-41
JICJ	학생들의 전자 통신기 사용	42
JIH	학생에 대한 심문, 수색 및 체포	43-46
JJI	학교 대항운동경기	46
JJI-R	대항 운동경기 (운동코드)	47-48
JK	학생에 대한 징계	48-50
JKBA	학급으로부터 징계에 따른 퇴실	50-51
JKBA-R	학급으로부터 징계에 따른 퇴실	51-53
JKD-1	학생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53-56
JKD-1-R	학생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56-59
JKD-1-E	정학, 퇴학 혹은 입학 거부에 대한 근거	59-60
JKD-2	장애학생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60-62
JKD-4	퇴학 학생을 위한 교육 대한	62-63
JKG	교내정학	63
JLCA	학생 건강 서비스 및 요구 사항	63-65
JLCB	학생에 대한 예방 접종	65
JLCB-R	학생 예방 접종	66-67
JLCD	응급 및 긴급 치료	67-69
JQ	학생에 대한 요금, 벌금 및 부과금	69-70
JRC	학생에 관한 기록/정보제공 허용	70-76

차별없는 정책 (Nondiscrimination Policies)

AC	차별 금지 /기회의 평등/개인 간/인간 관계	76-79
AC-E-1	차별없는 기회 평등	79-80
AC-R-4	학생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	80-81
AC-R-5	학생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 탄원절차	81-86
AC-R-6	민족 및 인종에 근거한 차별금지	86-87
AC-R-7	장애/불구에 근거한 차별금지	87-89
	인권 및 인종협박 탄원 절차	89-91

네트워크 자원 정책 (Network Resources Policies)

EHC	전자통신망 정보 자원	91-96
JS	인터넷 및 전자통신에 대한 학생의 사용	96-99

추가 규정 **(Additional Policies)**

KI 학교방문자 99-100
KI-R 학교 방문자 100
IKA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사정(査定) 및 평가 101-104
JLCDA 만성 또는 급성 건강 상태의 학생……...104-105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에 따른 권리의 고시(FERPA)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 법령 (“FERPA”)은 학부모와 18세 이상의 학생들 (해당 자격 학생들)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의 권리를 제공한다. 그와 같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학군이 열람 악세스 신청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45일 근무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토 및 심사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학교 교장이나 혹은 위임권자에게 그들이 열람을 희망하는 교육 기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교장은 악세스를 위한 시간약속을 하여 학부모나 혹은 해당 자격 학생에게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하여 줄 것이다.

(2)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고 믿어지는 학생 교육 기록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해당 교육 기록의 정정을 요청하려는 학부모나 해당 자격 학생은 교장(또는 교장이 임명한 직원)에게 명확히 변경하고 싶은 기록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측이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기록 변경 요청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교장은 이 결정을 학부모나 해당 자격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경요구권과 관련하여 청문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청문절차와 관련된 부가 정보는 청문권이 있음을 통지했을때 학부모나 해당 자격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3)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로서 개인적으로 명시가 가능한 정보의 열람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 단 FERPA가 승인 없이 열람을 허가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는 학교 공무원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공무원은 관리자, 지도주임, 교사, 또는 지원 관리 직원(보건 또는 의료 직원 및 법 집행 부서 직원 포함)으로 고용한 사람입니다. 학교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학교가 자체 직원이나 담당자(예: 변호사, 감사원, 버스 운전사, 운동 트레이너, 의료 컨설턴트, 정신/행동 건강 컨설턴트, 치료사 및 교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회사입니다. 징계 또는 불만 처리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학교 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학부모 또는 학생, 연구를 수행하는 주 기관(예: 콜로라도 공중 보건 환경부)입니다. 또한 학군은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고 공개가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요청한 다른 학교에 교육 기록을 전달합니다.

학교 관리인은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 기록을 재검토 할 직무상 필요가 있다면 학교 관리인은 합법적으로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 FERPA의 법령에 따라 학군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서면 승인 없이 인명 정보를 열람시킬 수 있다. 체리 크릭 학군은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전공 과목, 성적 수준,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및 스포츠의 참가, 운동부 멤버들의 신장 및 체중, 등록 날짜, 포상 및 졸업증 내용, 최근 또는 종전에 등록한 교육 단체 및 기관 등을 공개 열람 대상에 해당되는 인명 정보로 간주한다. 해당 자격 학생의 전화 번호 및 주소 등은 콜로라도 법에 따라 공개 열람 될 수 없다.
- 학부모 및 해당 자격 학생은 제공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지정을 거부하는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교장실에 9월 7일 이전 또는 9월 7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그와 같은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요청시 서면의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학생이 등록하고 싶거나 이미 입학했거나, 전학의 목적을 둔 다른 학교와
  학군에 FERPA 보호에 대한 예외하에 공개 된다.

(4) 학군 측의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 법령 (“FERPA”) 위반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불평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 FERPA를 관장하는 부서의 이름 및 주소는: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SW, Washington, DC 20202-4605.

학군 정책 JRC, 학생 기록부/학생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학생 기록부의 공개에 따른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본 정책문의 사본은 개별 학교나 학군 웹사이트 www.ccsd.k12.co.us or , 또는 체리크리크 학군 교육 서비스 센터(주소: 4700 S. Yosemite St., Greenwood Village, CO 80111)에서 제공된다.

체리크릭 교육구 5학군 학생의 권리보호 수정안에 따른 권리의 고시 (PPRA)

PPRA는 부모와 18세 혹은 성년 (“해당 자격 학생들”)에게 본 학교 구역이 실시하는 설문, 마케팅 목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사용 그리고 일부 신체검사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그와 같은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다음 보호지역 (“보호된 정보 조사”)에 대한 설문으로 미국 교육부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부 또는 그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는 설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 동의가 요청되는 권리. 교육부:

  1.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정치/정당 가맹 혹은 정치적 신조;
  2. 학생 및 학생 가족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
  3. 섹스 행동 혹은 태도;
  4. 불법, 반사회적, 자기고발 혹은 품위를 떨구는 행동;
  5. 친한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6. 변호사, 의사 및 성직자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권 관계;
  7. 학생 또는 학부모의 종교적 관습, 가맹 혹은 신앙;
  8.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수입.

- 고시를 수령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다음의 기회를 선택하도록 하는 권리.
  1. 자금지원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된 정보에 대한 설문;
  2. 출석을 조건으로 요구되는 비응급 상황의 침입적인 신체검사 및 스크린으로 학교 또는 그 에이전트가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학생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하지 않은 것. 단, 청각, 시각 또는 척추만곡 스크린이나 주법에 의하여 요구 및 허용되는 신체검사 및 스크린은 예외.
  3. 상업 또는 매매나 타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를 수집, 노출 또는 이용하는 활동.

- 요청을 받고 학교 행정 앞에서 검사 혹은 사용하는 권리.
  1. 학생들에 대한 보호된 정보 설문;
  2. 상업, 판매 또는 기타 배포의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된 자료 및
  3. 교육 이수과목의 일환으로 사용된 지도자료.
- 이러한 권리는 부모/보호자로부터 18 세 이상 학생이나 부권에서 해방된 미성년자에게 양도 된다.

- 체리크릭 5학군은 위와 같은 권리와 보호된 설문의 진행 및 수집, 노출 또는 상업, 매매 및 기타 배포의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정책을 개발 및 채택하였다. 학군은 학부모와 해당 자격 학생에게 이와 같은 방침을 적어도 매년 초에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한 통보하여야 한다. 체리크릭 학군은 그와 같은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JLCA (학생의 건강검진 및 요구조건)과 JLDAC (학생의 스크린 및 테스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사본은 온라인이나 학교측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체리크릭 학군은 특정활동 및 조사 참여대상의 부모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통보하며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와 같은 활동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 그와 같은 활동 및 조사에 대한 특정 또는 예정일자가 지정될 경우 학군은 학년 초에 부모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학교가 시작된 후에 발생되는 일정에 대하여는 학군은 부모들에게 그와 같은 계획된 활동과 조사에 대하여 적절한 통보를 하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그와 같은 활동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 부모들에게는 또한 조사와 관련된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및 자격 있는 학생은 아래 기관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미 교육부 가족정책준수사무국 (주소: The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4605)**

제 5 체리크릭 학군
학부모를 위한 성범죄자 정보에 관한 고시

콜로라도 교육연합회에서는 콜로라도 내의 각 학군들로 하여금 해당 학군 내 학교의 학부형, 학생들(18 세 이상) 및 주민들에게 콜로라도 사법기관들에 의해 수집된 각종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 5 체리크릭 학군에서도 동 학군 내 여러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군 관할 내 사법기관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어떤 성범죄자가 동 학군 주거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학부형들과 18 세 이상 학생들 및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법기관을 통해 직접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법기관들은 전화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학부형 및 학생들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자의 해당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증명이 확인되면 해당 사법기관에서는 자료 요청자에게 "Sex Offender Advisement Form (성범죄자 자료요청 서식)"의 작성을 요청하게 되며 사법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해당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체리크릭 학군내 거주자를 위한 사법기관 명단:

- 그린우드 빌리지 경찰서
  Greenwood Village Police Department
  6060 S. Quebec St.
  Greenwood Village, CO 80111
  303-773-0252
  thevillage@greenwoodvillage.com

- 체리힐스 경찰서
  Cherry Hills Village Police Department
  2450 E. Quincy Ave.
  Cherry Hills Village, CO 80113
  303-789-2541
  village@cherryhillsvillage.com

- 오로라 경찰서
  Aurora Police Department
  15001 E. Alameda Pkwy.
  Aurora, CO 80012
  303-739-6000
  access@auroragov.org

- 글랜데일 경찰서
  Glendale Police Department
  950 S. Birch St.
  Glendale, CO 80246
  303-759-1513
  info@glendale.co.us

- 아라파호 카운티 경찰서
  Arapahoe County Sheriff's Department
  13101 E. Broncos Pkwy.
  Centennial, CO 80112
  dwalcher@co.arapahoegov.com
  303-795-4711

- 성범죄자 등록과
  Sex Offender Registration Unit
  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
  690 Kipling Street, Suite 4000
  Denver, CO 80215
  303-239-5732
  cbi.denver@cdps.state.co.us

위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체리크리크 학군 안전보장처의 펫 설리반(Mr. Randy Councell)씨(전화 720-554-4489)에게 문의 바람.

학생의 행동감시를 위한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를 위한 고시 (JICA-E)

본 학군은 학교의 버스 차량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학기 중에 버스 운행/활동 중에 무작위로 비디오를 촬영한다. 학생들에게는 각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모니터 박스 안에 비치된 비디오가 작동될 수가 있다는 것은 알리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학군의 고등학교 시설에는 항상 비디오 카메라가 사용될 것이며 다른 학군 및 학교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테이프는 검열되며 학생의 위반행위는 기록에 남게 된다. 학군이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연락이 갈 것이며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및 학생 행동 및 규율 조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의 교육권리 및 사생활권 법령에 의하여 비디오 테이프는 개인의 보호된 기록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 테이프는 학군의 소유 자산으로 보관되며 해당 학교 또는 학군의 운영자가 보관한다.
2. 학생에게 취해진 징계조치에 대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고자 하는 부모 또는 학생은 JICA-R 규정--학생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의 사용--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3. 징계조치와 무관한 사람은 버스 비디오 테이프의 시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자: 교장 Robert D. Tschirki 1999년 2월 8일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스크리닝/테스팅에 관한 고시 (JLDAC)

A. **학생들에 대한 조사, 분석 혹은 평가:**

조사, 분석 혹은 평가는 동의서가 요청된다

적법한 법적 요구가 있지 않는 한 교과 이수관정이나 그 밖의 학교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자체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려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학생, 학부모 혹은 보호자의 개인적 고유정보이든 아니든 학부모나 학생 보호자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관한 조사 분석 혹은 평가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1. 정당(政黨) 가입 또는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의 신념

2. 학생 자신 혹은 그 가족들을 잠재적으로 난처하게 만들 만한 정신적 혹은 심리적 문제

3. 성적(性的) 행위나 태도

4 불법, 반사회적 이거나 자학 혹은 자기 비하적 행위

5. 학생의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개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

6. 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혹은 이와 유사한 관계 (변호사나 의사 및 성직자들과의 관계와 같은 것)

7. 가계수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된 수입외의 정보)

8. 학생 혹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종교 활동, 종교단체 가입 혹은 신앙
9. 쇼셜스크리티 번호

교직원은 어떤 종류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나 해당 학생 (18 세 이상)에게 늦어도 2 주안에 발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청에 의거 명시되어야 한다:

1. 조사, 분석 혹은 평가를 위해 요구되거나 조사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

2. 그 정보와 자료들을 획득하는 방법

3. 그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목적

4.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단체들이나 사람들 중 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및

5. 기록과 자료를 열람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학부모 혹은 보호자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방법

이 통지조항은 미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조사 분석 및 평가에도 적용된다.

통지조항 및 조사의 대상이나 주체가 되지 않을수 있는 권리는 마켓팅을 목적으로한 조사, 분석 및 평가에 적용된다.

마케팅 목적의 조사, 분석 및 평가

학부모 혹은 보호자 그리고 적정연령의 학생(18 세이상)들은 이 통지를 받아야 하며, 마켓팅이나 영업을 목적으로한 학생들에게서의 자료수집, 발표나 사용 및 이러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등에 연관된 활동에서 탈퇴할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재고 (再考)의 권리

학부모 혹은 보호자 그리고 적정연령의 학생(18 세 이상)들은 요구에 의거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시행한 학군 혹은 제 3 의 기관이 고안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재고(再考)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예외 사항

이 방침의 어떤 조항도:

1. 언론학(저널리즘) 교사 혹은 그에 준하는 후원자의 지휘를 받는 학생이 그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은 조사 분석 및 평가활동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를 제재할 수 없다.
2. 주 정부법에 따라 아동 학대 혹은 태만에 관한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의심스런 사항에 학군 종사자가 보고 해야할 의무를 저지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없다.
3. 아동 개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학군 직원으로 활동하는 보건전문가의 재량을 제한하도록 해석 될 수 없다.
4.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을 위한 교육적 성과와 관련된 조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학부모 통보 및 동의를 요구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이 같은 성과와 사무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 대학 혹은 그 밖의 고등학교 교육기관의 모집 및 군의 모병 활동
   - 적은 비용의 교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북 클럽, 잡지 및 교육 프로그램
   - 학군 내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 이수과정 및 지도 교재
   - 학군 내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생들의 지각(知覺), 평가, 진단, 임상, 적성이나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험 및 평가
   - 학교나 교육 관련 활동 자금 모금을 위해 학생들이 판매하는 품목들
   - 학생 표창 프로그램
5. 학생의 학업 내용 표준 달성에 의한 학업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이 알고 있는것 과 할수 있는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평가 시험을 치룰때는 학부형의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6. 자살평가 또는 위험평가를 집행하는 학군의 능력을 제한한다.

개인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조사, 분석 혹은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해당 연방법 및 주 정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학생

18 세 이상의 학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의 어떤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자격이 있다.

이 방침 조항에 대한 통보 사항

각 학년이 시작할 때 학군은 학부모/보호자 및 해당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학생이 조사에 응하기전 다음의 보호된 영역에서 선택 거부를 할 수 있다는 동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1. 마케팅 목적을 위해 학생들로 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공개 한다거나 판매를 하는 활동;
2. 모든 정보 조사의 관리; 또는
3. 어떤 비 비상 사태, 침략 신체 검사, 또는 검진 (청각, 시각 또는 척추 측만 검진은 제외)그 것은:
    - 출석 조건 요구
    - 학교에서 집행하고 사전에 학교에서 일정을 예약하고; 그리고
    - 학생이나 다른 학생의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 없음

학군은 학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해당 학생(18 세 이상)들에게 이 방침에 따른 그들의 권리에 대해 통보해 주어야 한다.

B. 정신 및 심리검사의 방식과 절차

<u>서면상의 동의를 요하는 정신 및 심리검사의 방식과 절차</u>

학생들은 이미 통보되어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교실이나 그 밖의 교육현장에서 감정, 행동 또는 정신 질환 혹은 불구에 대한 평가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 및 심리검사의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학생 개인의 이 같은 검사는 학생의 부모가 정신 및 심리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세 이상의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콜로라도의 의료행위 면허를 가진 일반 의사 및 심리학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콜로라도 주 내의 지역 정신건강 센터나 그 밖의 진료소와 같은 공인된 시설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스로 동의 할 수 있다. 18 세 이상의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 및 심리검사의 방식과 절차에 동의할 자격이 있다.

공인된 학교작원들이 정신 및 심리검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지만, 어떤 정신 질환이나 결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치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면허 없이는 개입 할 수 없다.

심리검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인된 면허가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고용된 학교 직원이나 해당 전문가의 감독을 받는 실습생(인턴)만이 학생들을 검사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엄수는 정신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육의 권리와 위엄을 보장하고 학생과 그 학부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다.

심리검사 및 테스트는 해당 학생이 법적으로 스스로 검사를 허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 경우, 반드시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알린 후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만 시행 할 수 있다. 심리검사 자료는 한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경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들 중의 하나이어야 하며 3 년 이상 된 심리 검사 자료는 해당 학생 교육의 규범이나 학생 재배치 기초 차료로 사용될 수 없다.

승인된 일반 심리학 수업, 활동 및 기술 또는 정신학의 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는것은 허용되나 그것은 이 정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치료를 실행하는 것과 치료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한다. 어떤 교사든지 계획된 활동이 정신적 혹인 심리적 방법과 절차를 포함된 것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교사가 제대로 인증 받지 않은 교사라고 생각되어 의문이 생기면 교장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한다.

C. 특수교육 평가

특수교육을 위한 직원선정이나 불구 학생들을 위한 가능성 있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승인은 동 규정이 아닌 연방 법이나, 주법을 따른다. 이 규정은 학생 부모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부가적 사항일 뿐, 또 다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2012 년 11 월 12 일 개정
2006 년 2 월 13 일 채택

법적 참고자료	C.R.S. 22-32-109(i)(ee) (부모의 동의 없는 행동 평가검사를 시행하려는 관계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 C.R.S. 22-1-123 (학군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법 준수, 콜로라도의 학생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조항) C.R.S. 22-32-109.2 (정서 및 정신적 장애 혹은 불구자에 대한 선별적 검사 및 처우) C.R.S.27.10.103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자발적 적용) C.R.S. 13-22-101 (18 세는 일정한 절차를 승인할 권리를 가진 연령) 20 U.S.C. 1232(h) (학습 자료 검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및 특정 조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전 동의) 20 U.S.C. 1232(g) (가정교육의 권리 및 사생활 조례)
기타 참고자료	GCS, 전문 연구 및 출판 JID, 법적 연령의 학생들 JLCA, 학생의 건강 검진과 요구사항 JRC, 학생의 자료와 정보 공개 LC, 교육 연구기관과의 관계

협박, 괴롭힘 및 체벌
(ACC)

교육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협, 괴롭힘, 가혹행위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군 소유지, 학군 차량, 또는 학군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타인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정책 위반입니다. 가혹행위는 타인의 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이나 안전을 무모하게 또는 고의로 위협하는 강제적 활동을 포함하며,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위협과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1. physical contact that results in bodily harm (assault);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폭행);
2.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의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예: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등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 타인에게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나 제스처를 구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거나, 비하 발언, 개인적인 모욕, 조롱, 중상모략, 또는 도발 행위를 구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여 해당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타인에게 두려움, 우려 또는 불안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경우;
5.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6.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즉, 장기간의 신체 활동을 강요하거나, 어떤 물질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도록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음식·음료를 박탈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밖에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무모하게 위협하는 모든 행위(예: 학생 단체 가입을 위한 의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위협, 괴롭힘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은 신속히 학교 건물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 학군 차원의 관리자, 또는 인사부서에 보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택일자	1999년 11월 8일
관계 법률	C.R.S. 18-9-1111 (괴롭힘) C.R.S. 18-9-124(2) (가혹행위 금지) C.R.S. §22-1-143 (괴롭힘 또는 차별) C.R.S. §24-34-400.2 (POWR 법)

관련참고자료	AC 차별 금지 / 평등 기회 / 대인 관계 ACD 학생 괴롭힘 및 차별 예방 GBED 학생 괴롭힘 및 차별 예방 JK 학생 징계 JKD 학생의 정학/퇴학

학생 괴롭힘 및 차별 방지
(ACD)

이 정책은 C.R.S. § 22-1-143(3)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학교 프로그램 또는 활동 중, 또는 학교 차량 내에서 괴롭힘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Title IX에 근거한 학생 성희롱을 다루기 위해 AC-R-5에 포함된 불만 처리 절차와는 별개이며, 그에 추가되는 정책입니다.
괴롭힘과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CCSD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금지되며, 모든 개인(학생, 교직원, 계약자 포함)이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보호 대상 신분에 기반한 행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학군이 괴롭힘 또는 차별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학군은 해당 주장을 조사하고, 학군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괴롭힘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하거나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나 신고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가능한 한 많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신속히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은 직원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관리자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신고하는 학생은 본 정책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고, 괴롭힘, 차별 또는 따돌림을 금지하는 다른 CCSD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주장 내용과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동시에 또는 대체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불만 처리 절차(Grievance Procedure)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거나, 징계 조사와 같은 보다 비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책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를 시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영향을 받은 학생에게 공유됩니다. 단,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는 CCSD 교육위원회 정책이나 법률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은 학생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과 CCSD 교육위원회 정책 JRC에 따라, 학교는 다른 학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나 해당 학생이 이용한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를 포함한 학생 개별 정보의 공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나 학교가 공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학교가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를 시행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는 추가적인 괴롭힘을 중단하고 예방하며, 관련된 모든 학생이 교육 환경, 학교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지원 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른 절차와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 정책이나 본 문서에 명시된 어떤 조치가 연방법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가 본 정책과 학군의 AC 차별금지 정책 모두에 관련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군은 징계 시행에 있어 AC 차별금지 정책을 따릅니다.

1. 본 ACD 정책 시행을 위한 정의:

a. 자문인(Advisor): 본 정책에서 자문인이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를 지원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학부모/보호자는 제외됩니다. 자문인은 학교 직원일 수 있으나, 학군은 자문인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학군 직원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b. 계약자(Contractor): 학군과의 계약에 따라 학군 학생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약자에는 계약서나 협약에 따라 학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c. 신고인(Complainant): CCSD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괴롭힘 또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을 대신하여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주장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d. 직원(Employee): 학군의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교사, 보조 교사, 정신 건강 담당자, 행정 관리자, 급식 직원, 운송 직원, 건물 기술자 및 시설 관리 직원, 체육 직원, 행정 사무 직원, 학교 보건 서비스 직원, 정보 기술(IT) 직원, 보안 직원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관련 서비스 제공자 등 학생에게 학군 직원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된 계약자도 포함됩니다.

e. 괴롭힘 또는 차별(Harassment or Discrimination): 본 정책에서 괴롭힘 또는 차별이란, 학생 또는 직원이 장애,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가족 구성, 종교, 연령, 출신 국가 또는 혈통에 기반하여 특정 학생이나 학생 집단의 소속(또는 소속으로 인식되는 사실)을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나 서면, 그림, 시각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나 의사소통은 동일한 보호 대상 집단에 속한 합리적인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이나 차별로 인정되기 위해 그 행위가 반드시 심각하거나 광범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하거나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괴롭힘 또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i.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에 대한 수용 여부가 개인의 교육 서비스, 기회 또는 혜택에 대한 접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이 되는 경우

ii.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에 대한 수용, 반대 또는 거부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위협이 있는 경우; 또는

iii.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이 개인의 교육 서비스, 기회 또는 혜택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경우

1. 사소한 무례, 작은 불쾌감, 또는 예의 부족은, 그러한 행위들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상황에서 괴롭힘 또는 차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괴롭힘이나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행위가 괴롭힘 또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 행위나 의사소통의 빈도, 단일 사건이라도 괴롭힘 또는 차별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B.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에 관여한 사람의 수

C.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의 유형 또는 성격

D.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이 지속된 기간

E.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이 발생한 장소

F.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

G. 괴롭힘 또는 차별을 가한 것으로 주장되는 개인과 괴롭힘 또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 사이에 권력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H.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욕설, 비속어 또는 기타 행위나 의사소통의 사용 여부

I. 해당 행위나 의사소통이 보호 대상 집단에 속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지 여부; 또는

J. 해당 행위에 신체적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f. 지역 교육 제공자 (Local Education Provider): 콜로라도 공립 학군을 의미합니다.

g. 당사자 (Parties): 본 정책에서 당사자란 신고인(Complainant)과 피신고인(Respondent)을 의미하며, 이는 학생일 수도 있고, 학생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학부모/보호자일 수도 있습니다.

h. 정책(Policy): C.R.S. § 22-1-143(3)에 따라 채택된 본 정책을 의미합니다.

i. 공립학교(Public School): 공립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j. 피신고인(Respondent):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된 개인을 의미하며, 단 괴롭힘 또는 차별의 혐의가 CCSD 교육위원회 정책 AC-R-5에서 정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만 처리 절차(Grievance Procedure)에 따른 "피신고인"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k. 지원 조치 (Supportive Measures): 본 정책에서 지원 조치란, 괴롭힘 또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신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와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고인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지원 조치는 피신고인 또는 조사에 관련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며, 보복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혐의가 CCSD 교육위원회 정책 AC-R-5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조치는 반드시 피신고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징계적이거나 처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 신고.

a. 신고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괴롭힘 또는 차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신고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온라인 양식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c .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신고는 학교 관리자, 건물 단위의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 리더십 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학교 직원은 즉시 해당 정보를 학교 관리자,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학군 리더십 소속 직원(전무 이사나 학군 평등 준수 담당자 등을 포함할 수 있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d. 조사관 또는 그 지정인은 해당 주장을 문서화하고, 그 사본을 신고인(Complainant)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신고나, 해당 신고의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중에 드러난 정보는, 신고 학생에 대한 조사나 징계 조치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거나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이는 어떤 학생이나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가 필요한 경우이면서 CCSD 교육위원회 정책 AC-R-5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i. 피신고인 (Respondent)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방위 행위
ii. 상호 합의된 성적 활동
iii.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iv. 지각
v. 무단 결석
vi. 시설에 대한 무단 접근
vii. 신고된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위
viii. 트라우마 증상을 표현하는 행위

f. 학생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고의로 한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차별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만으로는 허위 신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대응 및 권리 고지 (Response and Notice of Rights)

a.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모든 학군 직원은 CCSD 교육위원회 정책 및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신고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b.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의무 신고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 괴롭힘 또는 차별 신고를 접수한 학군 직원은, 해당 주장을 적절히 법 집행기관 또는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신고해야 합니다.

c. 조사관 또는 조사관의 지정인은 신고 내용과 적절한 조사 절차에 근거한 문서를 제공하여, 신고인(Complainant)과 피신고인(Respondent)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와 조사 과정의 다음 단계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d. 당사자는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주장은 CCSD 교육위원회 정책 AC-R-5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정책에서의 지원 조치는 징계적이거나 처벌적이어서는 안 되며, 비공식적 해결 과정(Informal Resolution Process)의 일환으로 회복적 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치는 괴롭힘 또는 차별 신고 이후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정신 건강 담당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상담 기회
- 학교 직원과의 정기 점검(Check-in)
- 접촉 금지 합의(No Contact Agreements)

- 회복적 대화(Restorative Conversations)
- 시간표 조정
- 지정 좌석 배정
- 휴대폰 사용 계약
- 감독 강화
- 교외 활동 특권 제한
-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섹션 504 계획 검토

4. 조사 및 추가 권리 (Investigation and Additional Rights).

a. 조사는 공정하고, 편견이 없으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b. 학군은 법 집행 기관 또는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 일부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i. 외부 기관의 조사는 학군의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학군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정책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외부 조사의 결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c. 괴롭힘 또는 차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는 입증 기준은 우세한 증거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입니다.

d.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부정행위의 패턴과 기타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단 주장이 CCSD 교육위원회 정책 AC-R-5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증인이나 다른 학생을 질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 당사자는 혐의 신고, 추가 증거나 정보 제공, 지원 조치(Supportive Measures) 논의 또는 요청을 포함한 조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자문인(Advisor) 또는 기타 지원 인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i. 모든 의사소통은 당사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자문인(Advisor)이나 추가 지원 인물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ii. 자문인(Advisor)은 학군 시설 내에 있거나 학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SD 교육위원회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f. 조사관은 당사자에게 15일(학기일)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서면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g. 조사관은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와 결론을 동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i. 조사 결과와 관련된 정보는 학생별로 제공되어야 하며, FERPA(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학생 보호 규정에 따라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CCSD 교육위원회 정책 AC-R-5에 따른 성희롱 혐의는 해당 정책에서 명시된 통보 요구 사항과 기밀 유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 입증되지 않은 신고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반복 패턴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해고, 계약 종료, 부정적인 고용 참고 또는 자격 취소 조치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지역사회 자원 (Community Resources)

a.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군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b.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기밀이 보장되는 신고 방식으로 Safe2Tell 핫라인(1-877-542-7233)에 안전 관련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https://safe2tell.org/ 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도 본 정책에 해당하는 혐의를 신고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이나 인적자원부(사회복지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d.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다음 기관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1-800-799-SAFE (7233)

전국 성폭력 핫라인: 1-800-565-4673

6. 기록 관리

a. 각 지역 교육기관은 괴롭힘 또는 차별 신고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i. 괴롭힘 또는 차별 신고 기록에는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신고나 공식적인 불만에 대응하여 취해진 편의 제공 조치나 지원 조치, 그리고 지역 교육기관의 조치와 대응의 근거에 대한 문서가 포함됩니다.
최초 채택일: 2024년 7월 29일

1972년 교육개정법 제7장 (법적 근거) - 20 U.S.C. § 1681

1972년 교육개정법 제9장 (Title IX) - 20 U.S.C. § 1681 et seq.

재활법 제504조 - 29 U.S.C. § 701 et seq.

1964년 민권법 제6장 (1972년 개정 포함) - 42 U.S.C. § 2000(d)

1964년 민권법 제7장 - 42 U.S.C. § 2000(e)

미국 장애인법 제2장 - 42 U.S.C. § 12101 et seq.
연방 및 주 관련 법규

34 C.F.R. Part 100 ~ Part 110 (민권 규정)

34 C.F.R. §106.8 (Title IX에 따른 코디네이터 지정, 정책 배포, 불만 처리 절차 채택)

34 C.F.R. §106.44 (Title IX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기관의 대응)

34 C.F.R. §106.45 (Title IX에 따른 공식 성희롱 불만 처리 절차)

34 C.F.R. §106.71 (Title IX에 따른 보복 금지)

C.R.S. §18-9-121 (편견 동기 범죄)

C.R.S. §22-1-143 (학교 내 차별 행위로부터 학생 보호)

C.R.S. §22-32-109(1)(II)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할 교육위원회의 의무)

C.R.S. §22-32-110(1)(k)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 정의)

C.R.S. §24-34-301 et seq. (콜로라도 민권국)

C.R.S. §24-34-301(3.3) (성별 표현 정의)

C.R.S. §24-34-301(3.5) (성별 정체성 정의)

C.R.S. §24-34-301(7) (성적 지향 정의)

관련 규정 (Cross References)

AC - 차별 금지 / 평등 기회 / 대인 관계

AC-E-1 - 차별 금지 / 평등 기회 공지

AC-R - 차별 금지 / 평등 기회 (불만 및 준수 절차)

AC-R-1 -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Title IX 준수)

AC-R-2 - 성차별 및 성희롱

AC-R-4 - 학생 성희롱

AC-R-5 - 학생 성희롱 (불만 처리 절차)

AC-R-6 - 민족 및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AC-R-7 - 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 (Section 504 준수)

JB - 평등한 교육 기회

JRC - 학생 기록 / 학생 정보 공개

마약 및 담배 없는 학교
(ADC)

교육위원회는 본 학군이 교육기관의 하나로서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 및 직장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과 흡연과 관련된 문제와 사실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적극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함을 인지한다.

모든 학생 및 직원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리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내에서는 직원, 학생 및 일반 대중이 담배제품을 흡연, 츄잉 및 기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적용한다:

1. "교내"라는 것은 아래의 시설을 포함한 기타 영역으로 본 학군이 소유,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사용 혹은 계약된 학교의 모든 건물 및 시설을 의미한다.

    a. 교육, 도서관 서비스, 정규적인 헬스케어, 대이케어 또는 조기유년 발달서비스, 행정, 지원 서비스, 건물관리 또는 창고 등의 용도록서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또는 구조의 모든 실내 시설 및 내부 공간.
    b. 건물주변, 놀이터, 운동장, 레크레이션 및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본 학군의 통제를 받는 공간의 모든 학교부지.
    c. 학생, 직원 또는 기타 사람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학군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
    d. 인가된 학교 활동이나 행사

2. "담배 제품"이라 함은
    a. 니코틴이나 담배를 포함한 모든 제품 또는 담배로부터 파생되어 섭취하거나 흡입하고 개인 피부에 적용하는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스너프, 씹는담배 등에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b. 흡연을하는 사람에게 니코틴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인 전자 담배, 시가, 시기오 또는 파이프등에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c. "담배 제품" 은 연방 기관에 의해 승인된 사용 중단 담배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3. "사용"이라 함은 제반 형태의 담배제품의 불을 붙이거나, 씹기, 들이마시기, 섭취 또는 흡연 등을 의미한다.

모든 학교 건물에는 콜로라도 주법 및 학군의 규정에 따라 흡연 또는 기타 담배제품 사용의 금지를 알리는 사인을 부착시킨다. 이 정책은 직원과 학생 핸드북에 게시된다.

본 제재규정과 관련된 정보는 방과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 건물 및 부지를 사용하는 단체들에게도 제공되도록 한다.

학교장이나 임명권자에 의하여 본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학군의 영역을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한다. 본 규정을 어기는 직원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받는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의 징계 조치는 교내 구금, 과외 활동의 특권의 해지와 배제 또는 정학이 포함된다. 주 법에 따라 어느 학생도 담배 사용으로만 퇴학 당하지 않는다.

현재의 관행 법적으로 편찬 1991

채택일자 수동 채택 날짜
개정 2012년 9월10일

법률자료: 6 CCR 1010-6, Rule 5-306
20 U.S.C. 7181 et. seq. (2001 어린이 방치 금지법에 포함된 2001 어린이 보호법)
20 U.S.C. 3224a, 1986 마약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1989 개정됨
41 U.S.C. §U§701 and 702. 1988년 마약 없는 직장 법.
21 U.S.C. §812 (규제 마약의 정의)
C.R.S. 18-13-121(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공급)
C.R.S. 22-32-109 (1) (bb) 학교에서 담배 제품 사용금지 정책 요구
C.R.S. 22-32-109.1 (2)(a)(IH) 학교 안전계획 일환으로 필요한 정책
C.R.S. 25-14-103.5 (담배 사용은 학교 소유지에서 금지)
C.R.S. 25-14-301 (청소년 담배 사용 예방법)

관련참고자료: 4048, 약물 없는 직장 (직원들의 약물 및 알콜 이용)
IHAMA, 마약, 알코올 및 담배에 대한 교육
JICH, 학생들의 마약 및 알코올 사용
KF,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KFA, 학교 영역에서의 대중 행동
KI, 학교 방문자

학교 차량 내의 학생 행동
(JICC)

학교차량을 승차하는 특혜는 학생의 올바른 품행과 차량 정거장 및 차량 내에서의 학생 행동 규정을 잘 이행하는 조건하에 주어지는 것이다.

학교 차량의 운전자는 정차중, 운행중, 승차 및 하차 중의 학생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학생들은 학교 차량 승차중 안전, 행동 및 징계에 관련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행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차량 운송 담당자 또는 관련 교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학생의 학교 교장은 학생으로부터 학교차량 승차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차량 승차중 학군 규정과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학군 위원회의 정책에 따른 정학, 퇴학등의 징계 개입에 의해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본 채택: 정책 EEAEC, 1991
E 시리즈의 정책에서 은퇴; 개정 및 채택: 2014년 8월11일

참고 법률: C.R.S. § 22-32-109.1 (2)(a)(I)(B) (학교 차량 행위를 다루기 위한 징계 코드
C.R.S. § 42-1-102 (88.5) (학교 버스를 포함한 학교 차량의 정의)
관련참고자료: EEA, 학생 교통 및 예하 규정 JIC, 학생 행동 및 예하 규정
JK, 학생의 규율 및 예하 규정

학생의 결석 및 사유
(JH)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규칙적이고 정시간의 출석이다. 잦은 결석은 저조한 성적, 사회성 발전 미비 및 학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응 및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정규적인 출석이 가장 중요하다. 잦은 지각 및 결석과 같이 빠르기 학생의 학교생활에 방해를 끼치는 요소는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정규적이고 정시간의 출석 행태를 따르도록 해야한다.

주정부의 법에 의하면 각 부모/보호자는 자녀들이 학업연령이 되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결석이 지나치면 학업과정 및 사회적응의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나간 일을 적절히 보상하는 것은 쉽지않다. 학교에 잘 출석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고 학교 생활을 더 즐기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더 잘 할 수 있게된다. 적어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완전한 학점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1) 학업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의 충족과 (2)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좋은 출석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조기 졸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매학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사유에 의한 결석
다음은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간주한다:

1.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다친 학생 또는 사전연락을 통하여 학교의 출결담당자가 결석을 승인한 경우. 사전승인 결석은 학교 시간 외에는 처리될 수 없는 중요한 환경 및 약속에 대하여 인정된다.
2.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
3. 학교의 감독하에 일과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
4.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학생.
5. 종교적인 휴일을 지키기 위한 결석.
6. 부모/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빌딩의 교장이 결석을 승인한 학생.
7. 정학 또는 퇴학 학생

학군은 상기 예외에 대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와 같이 적절한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 보호[C.R.S. 22-32-138(1)(e)의 정의에 따름] 학생이 법정 출석 및 기타 법원이 명령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생에게 지정된 사회복지사는 학생이 결석한 이유가 법정 출석 또는 법원이 명령한 활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무단 결석
무단 결석은 위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결석이다.

지속적인 무단결석 및 반복적인 지각은 처벌조치로 연결될 수도 있다. 관련법에 따라 본 학군은 무단결석한 수업에 직접 관련되는 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경고, 학교 구류, 교내 정학등이 처벌에 포함된다. 학습 처벌, 교외 정학 및 퇴학은 무단 결석에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부서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무단 결석, 중퇴, 낙제가 처벌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절차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고려함과 무단 결석의 횟수가 높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전략을 이행한다. 학생 및 부모/보호자는 본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교육위원회가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기간에 걸쳐 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때는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결석에 대하여 부모의 승인을 받았다는 메모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메모에는 부모의 이름, 결석 일자 및 결석일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전화로 통보한 경우 그와 같은 메모는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퇴" 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완료 하기전에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를 떠나는 사람이다. 또한 다른 공립 또는 사립 학교로 전학하지 않거나 콜로라도 법령과 입증에 따른 가정기반 교육 프로그램에 콜로라도 코드에 설명된 적절한 문서에 가입 되지 않은 사람이다 1CCR 2.01(1). 학년에서 사법 절차가 의무적으로 시작되기전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10 일이다.

보충 학습
퇴학을한 학생은 제외하고 보충학습은 사유에 의한 결석자에게만 허용될 수 있다. 보충학습은 특별한 환경 및 학교 당국의 별도결정이 아닌 경우 사유에 의하여 결석한 수업은 무엇이든 허용된다. 학교에 복귀한 날 보충학습 자료를 받아가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보충학습 완성 기간은 행정부에서 결정하여 학생에게 알려준다.

학생이 학업을 유지하고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게 하는 목적으로 학생의 무단 결석이나 장학 후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충 수업의 전체 또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행전관의 승인없이 학생의 퇴학 처분을 하는동안 보충학습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학군은 주 법률에 따라 퇴학한 학생에게 대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군은 퇴학한 학생이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학점량을 결정한다.

지각
지각은 적절한 사유없이 수업이 시작된 후에 학급에 들어오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각에 의하여 타학생에게 미치는 방해 및 산만한 학습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나친 지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지각과 관련된 모든 처벌에 대하여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사나 관리자로 의새 학생이 지체하게 됐을 경우, 교사나 관리자는 학생에게 학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패스를 제공하고 지각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교사는 이 정책에 따라 패스를 인정한다. 이 정책의 규정은 출석에 대한 법 아래 학군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개정일자: 2010 년 4 월 12 일
채택일자: 2008 년 11 월 10 일

참고 법률: C.R.S. 22-32-109 (1)(n), (w))(학년도, 수업 시간 및 접촉 시간의 길이)
C.R.S. 22-14-101, 이하 참조 (자퇴 방지 및 학생 다시 참여)
C.R.S. 22-33-101 이하 참조 (1963 년 학교출석 규정)
C.R.S. 22-32-109.1 (2)(a)(행동 및 징계 규정)
C.R.S. 22-32-105(3)(d)(III)(정학 기간 중 학업 보충 기회)
C.R.S. 22-32-138(6)(시설 보호 학생의 결석 사유 허가 요건)

C.R.S.22-32-109(1)(n)(학년길이 및 교육 접촉 시간)
C.R.S.22-33-203(퇴학학생의 대안 교육 및 학점 결정)
1CCR 301-67, 규율 2.01(7) (자퇴 정의)
1CCR 301-78, 규율 1,00 이하 참조 (학생들의 출석과 무단 이탈의 계산을 위한 표준 계산)

참고자료: JK, 학생 징계
JKD, 학생의 정학/퇴학
JLIB, 퇴학처분 경고
JF, 입학 허가 및 입학 거부
JF-R, 입학 허가 및 입학 거부
JHB, 허용되지 않는 결석/무단 이탈 사유
JFC, 학교에서 학생탈퇴/자퇴

주의: 법에 따라 각 학군의 교육위원회는 출석담당자를 지정하고 의무교육에 대한 법을 준수하고 학생 및 부모를 상담하고 결석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무단 결석 및 이탈
(JHB)

학생이 부모가 서명한 사유서 없이 결석하거나 담당 교사 또는 행정관의 허락 없이 학교 또는 교실에서 나가는 경우에 무단 결석으로 간주된다. 사유에 의한 결석 또는 무단 결석의 결정은 학교 위원회 방침 JH에 규정된 기준에 의한다. "상습적 무단 결석"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연령의 학생이 1달에 4일 이상 무단 결석 또는 학년도에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의 "습관적 무단 결석" 상태 결정은 무단 결석 합계를 일수와 일수의 분수로 변환하여 계산한다.이러한 무단 결석은 누적 계산되며 연속성 및 특정 수업에 제한과 상관없다 정학 또는 퇴학에 의한 결석은 무단 결석 총 시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상습적 무단 결석생으로 판정된 학생이 결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이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시킨다. 학교의 담당 직원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을 만나서 학생의 무단 결석 이유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무단 결석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매학년도 초에 의무 출석 연령의 모든 자녀를 학교에 출석시켜야 하는 부모의 의무를 통보한다. 부모들은 그와 같은 통보을 받았음을 서면으로 인정해야 하며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기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각 학생의 무단 및 사유에 의한 결석 상황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상적인 학교 일정에 학생이 알리지 않았고 교직원이 보기에 부모가 결석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을 경우 교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자원 봉사자는 전화로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한다.

법에 따라 학군은 무단 결석하는 동안 놓친 수업과 직접 관련된 적절한 처벌을 부과 할 수 있다. 처벌은 경고,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하기, 교내 정학, 또는 다른 정학의 대안을 포함 할 수 있다. 학업처벌, 교외정학, 또는 퇴학은 어떠한 무단 결석에 부과되지 아니한다.

학군 행정부는 결석을 해결하기 위한 비배제적 전략 및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최초 채택: 2007년 12월 10일
최종 개정: 2010년 4월 12일
현재 개정: 2024년 1월 8일

법률 참조: C.R.S. 22-14-101, 이하 참조 (자퇴 방지, 학생 다시 참여)
C.R.S. § 22-32-109(1)(p) (출석 관리자 임명 요건)
C.R.S. 22-33-204 (의무 학교 출석)
C.R.S. 22-33-105 (정학, 퇴학 및 입학 거부)
C.R.S. 22-33-107 (의무 학교 출석 시행)
C.R.S. § 22-33-108(학교 출석법 시행을 위한 사법 절차)
1CCR 301-78, 규율 1,00 이하 참조 (학생들의 출석과 무단 이탈의 계산을 위한 표준 계산)

상호 참조: IHBG, 자택 학습
JEA, 의무 출석 연령
JH, 학생 결석 및 사유
JFC, 학생의 학교 탈퇴/중도 탈락

학생의 품행
(JIC)

학생, 교사, 행정 직원 및 기타 학군의 종사자들은 적극적인 교육환경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교육 위원회의 의도는 학군 소속의 각 학교가 학생들이 최대한의 개인적인 지식과, 기능 및 능력의 배양을 달성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기 위한 품행의 패턴을 익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주 법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당국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되어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품행 규칙을 명문화하여 채택 및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규칙은 특정의 행위 특히 수업과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징계조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규정은 균형잡힌 징계 개입과 결과 및 학생들이 학습에 종사하는 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규칙의 적용은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동일하고 공평하며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채택하고 승인한 파일 이름에 "JIC"이란 글자가 포함된 모든 규칙들은 규정으로 요구되는 규칙의 품행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품행 규칙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학부모, 학생, 교사, 및 행정 직원 및 기타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침해할 수 없으며 명확하고 자세하게 명시되며 학생 및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소책자 또는 기타 발행물로 제공되며 이러한 규칙의 시행일자는 발행된 소책자의 제공일자 이후이어야 한다.

품행과 징계 규칙은 학군 내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된다. 또한 품행 및 징계 규칙의 사본은 교육구의 각 학교에서 게시하거나 문서로 보관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규정에 익숙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품행 및 징계 규칙상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각 학생에게 통지하고 이를 각 학교에 게시하여야 한다.

교사는 질서정연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수업과 건설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직 및 학군의 기타 직원은 담당 교사가 그와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조를 제공한다. 학군의 모든 직원들은 학생들의 태도를 감시하고 품행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함께 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따르며 자신 및 타인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학생은 교사, 행정 직원 및 기타 직원들과 동료 학생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가 건설적인 교육적인 환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신한다. 학생은 학군 및 학교와 수업의 규칙을 준수한다.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득하지 않은 어떠한 단체도 학군 관할구역 내에서 행사 또는 서약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 본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은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징계조치 행정부서에 회부된다.

개정일자: 2012년 8월 13일
채택일자: 2000년 10월10일

법률자료: C.R.S. 22-32-109.1 (2) (학교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정책)
C.R.S. 22-32-109.1 (2)(a) (학군은 학생들이 품행과 규율에 대하여 익숙해 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C.R.S. 22.33.106 (1)(a-e) (정학, 퇴학 및 입학 거부의 근거)

참고자료: JICDA, 행동규정
JIC 하위규정 (학생의 품행)
JK, 학생의 징계
ACC 협박, 위협 및 체벌

학생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 (JICA)

교육위원회는 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복리 및 안전을 촉진하고 학교의 기강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학생을 개인의 사생활권과 직원 및 학생들의 규율,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는 학군의 의무를 신중히 검토 비교한 결과 본 위원회는 학군의 차량 및 학교에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을 지지하기로 한다.

학교의 시설, 등하교 차량 내에서의 학생 행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다.

행동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은 교육위원회의 규정 및 학생의 행동과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비디오 기록을 학생 행동기록의 일부로 보관하기로 학군 및 관련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주법 및 연방법의 적용에 따른다.

비디오 감시는 질서, 안전 및 학생, 직원 및 재산의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제안: 1999년 1월 11일
채택: 1999년 2월 8일
발효: 1999년 2월 8일

참고법률: 20 U.S.C. 1232g (가족의 교육권리 및 사생활 법령)
42 U.S.C. 1201 et seq. (장애 미국인 법령)
34 C.F.R. 99.1 et seq. (규정)

학생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 사용 (JICA-R)

학생기록

1. 본 학군은 학생의 기록에 대한 주 및 연방법을 비디오 기록의 사용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간주하고 준수한다. 학생 행동 기록의 일부로 보관되는 비디오 기록은 학생기록의 열람, 검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관리된다.

2. 부모/보호자의 핸드북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기타 학군학교의 활동에 이용되는 차량에 비디오 카메라가 이용될 것임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학생 및 부모에게 제공되는 그와 같은 통보의 일부로서 교육위원회가 규정한 비디오 카메라 관련 규정을 포함시킨다.

3. 비디오 카메라가 학군의 차량 또는 위원회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반드시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디오 카메라 장비가 가동되는 곳은 사인을 부착하여 표시한다.

저장/보안

1. 모든 비디오 기록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저장된다.

2. 비디오 기록은 최초 촬영후 5년 동안 보관하며 그 후에는 파기될 수 있다.

3. 학생의 사고와 관련된 비디오 기록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원래의 형태로 보관된다. 그후 테이프는 삭제 또는 학군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학생 행동기록의 일부로 보관될 수 있다.

사용

1. 차량운행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및 기타 학교활동과 관련된 차량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순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학생관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를 활용하는 차량에는 사인을 부착하여 표시한다. 고등학교 시설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상시 가동하며 학군의 필요여부에 따라 다른 학교 및 건물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2. 학생 및 직원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훼손 및 방해해서는 안 된다.

비디오 열람 요청

1. 비디오 기록의 열람 요청은 관련된 버스 운전사, 운송 담당자, 학교 운영자, 학군의 보험사 및 사법부, 부모/보호자 또는 해당 자격학생 (18세 이상)이나 교장, 부모의 지정인 또는 부교육장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제한된다.

2. 비디오 검토 신청은 비디오 기록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송담당 수퍼바이저, 교장, 지정인 또는 부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비디오 검토 신청자격은 부모/보호자, 학생, 운전자 및 학군의 직원으로 교장, 교육장의 지정인 또는 부교육장 등과 같은 교장, 교장의 지명자 또는 부교육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절차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은 운전자 및 가족에게만 한정된다.

4. 문제의 사안과 관련된 부분만 검토를 할 수 있다.

5. 비디오 시청 요청 후 5 일 (학교일) 이내에 승인 및 거부의 결정을 하고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비디오 기록은 검토요청의 승인 후 5일 이내에 볼 수 있다.

비디오 열람

1. 비디오의 열람은 차량운행 오피스, 학교 건물 또는 행정센터 오피스 등과 같은 학교관련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2. 비디오 테이프의 열람에는 학군관련 운영자가 포함된다.

3. 비디오의 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 시청일자, 사유, 촬영일자, 비디오 촬영 차량, 운전사 이름, 시청자 서명 등을 기입하다.

4. 비디오 기록은 학군의 자산으로 보관되며 관계법 및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복제될 수 있다.

승인자: 교장 Robert D. Tschirki, 1999년 2월 8일

학생의 복장 규정
(JICAB)

안전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교육환경은 고급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사항이다. 학군 전반에 걸친 학생의 복장 규정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징계문제를 줄이며 학교의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복장과 개인적인 외모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복장이나 수업환경을 산만하게 할 수 있거나 학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즉시 적절한 복장으로 갈아 입거나 적절한 복장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처벌은 없다.

학생이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 적절한 복장으로 즉시 갈아 입을 수 없을 때에는 학생에게 경고장을 발급하며 이를 학부형에게 통보한다. 두 번째 위반하는 경우 학생은 하루 동안 행정실에 머물면서 학교 일을 하며 이것은 자동적으로 교내 정학이 되며 학부형 회의를 갖게 된다. 3번째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생은 교외 정학 대상이 되거나 학교의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의 항목은 학교 건물, 학교 영내 혹은 학교 활동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1. 복장의 투명, 조임, 짧기 및 노출 등의 정도가 부적절하여 복부, 어깨, 둔부, 허벅지 윗부분, 등 및 가슴 등 전통적으로 신체의 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부위를 드러내거나 노출시키는 복장.

2. 광고, 심벌, 단어, 슬로건, 부수물 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진 등을 포함하는 복장, 장식, 몸 단장, 보석, 염색, 악세사리 및 향수 등.

   - 음란성 및 저속하고 야하거나 방탕 또는 법적인 모독성이 있는 것
   - 개인의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는 것
   - 학생의 품행 규정에서 금지된 행동을 촉진하는 것
   - 약물, 담배, 술 및 무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
   - 성적(性的)인 내용의 것
   - 색상이나 배열, 상표 및 기타 특징으로 약물 남용, 폭력 및 질서 파괴 행위 등을 권장하는 갱의 멤버임을 보여주는 것
   - 교육 및 학습 절차를 산만하게 하는 것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착용하여야 한다.

<u>예외 사항</u>

체육 학과 시간에는 적절한 운동복을 입을 수 있다. 학교가 지원하는 평상시의 특별 활동 및 스포츠 활동 (예: 응원복 등)과 관련된 복장은 스폰서 또는 코치의 승락을 받아 입을 수 있다.

교내 문제 위원회와 관련하여 빌딩 담당자들은 빌딩 규정의 일부분으로 본 규정에서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복장에 맞추어 별도의 학교 복장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안 일자: 8월 4일, 2000
채택 일자: 9월 11일, 2000
개정 일자: 9월 10일, 2010
법률 자료: C.R.S. 22-32-109. (2)(a)(I)(J) (위원회는 학생의 복장 규정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관련 자료: JBB, 성희롱
JIC, 학생 행동
JICDA, 행동 규정
JICF, 비밀 사회, 갱 활동
JICH, 학생의 약물 및 알코올 사용
JICI, 학교에서 무기

JK, 학생 징계
JKD/JKE, 학생의 정학/ 퇴학
JLI, 학생 보안
JICDE, 따돌림 예방 및 교육

품행 및 징계 규정
(JICDA)

교육 위원회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필요치 않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환경을 도모한다.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자신 및 타인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한다. 학생들은 교사와 행정 직원, 기타 학군의 직원 및 동료 학생들에게 위엄과 예의를 갖고 대하며 자신의 존재가 건설적인 교육 환경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처신한다. 학생들은 학군, 학교, 및 교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JIC 방침)

각종 규정은 (1) 헌법으로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2) 명료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어야 하며, (3) 학생 및 학부형에게 인쇄물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4) 게시된 자료의 보급과 더불어 시행되는 발효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JIC 방침)

I. <u>정학과 퇴학을 초래하는 위반</u>

교장은 학교 건물, 학교 부지, 지역 재산, 통학 차량, 또는 학교 후원 또는 지역 후원 활동 중 하나 이상의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3학년 이상의 학생에 대해 그 행위가 학교 또는 학군 교육 과정 또는 비교과 행사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그 학군 부지 밖에서 정지 또는 퇴학을 권고할 수 있다. C.R.S. § 22-33-106(1)(d)에 명시된 위반으로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18세 미만의 학생은 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학 처분을 받아야한다. 프리수쿨, 킨더가든, 1학년 또는 2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C.R.S. § 22-33-106.1(2) 및 정책 JKD-1에 따라 학교 외부에서만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학군 기물의 손실을 초래 및 시도하거나 학군의 가치있는 기물을 훔치거나 시도하는 행위.
2. 개인 재산의 손실을 초래 및 시도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시도하는 행위.
3. 학군 영내에서 성인의 경우 주 정부의 법에 의하여 강도 또는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4. 학군 또는 학생과 직원의 안전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형법의 위반.
5. 학군 방침 및 규정의 위반 또는 확립된 학교 규칙 위반
6. 학교 내에서의 위험한 무기에 대한 학군의 규정 위반. 무기를 발견 즉시 미 정부의 법에 따라 교사나, 행정 직원 및 기타 담당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무기를 휴대, 반입, 이용, 및 소지하는 행위는 퇴학을 의무화한다. (JICI 방침)
7. 학군의 음주 및 약물 남용 규정 위반 행위. (JICH 방침)
8. 학군의 폭력 및 공격적 행위 규정의 위반. (JICDB 방침)
9. 학군의 흡연 및금연 학교 규정의 위반. (ADC 방침)
10. 성적인 차별과 괴롭힘에대한 학군의 규정 위반. (AC-R-2, AC-R-4 방침)
11. 학군 활동의 일환이 아닌 것으로 상해 또는 재물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2. 타 학생, 학군 직원 및 학교 방문객에 대한 불경건한 행동, 저속한 언어, 음란한 제스쳐 등.
13. 언어적 폭력, 즉 이름 부르기, 민족적 또는 인종적 비방, 언어적,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지역 프로그램의 중단을 촉발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모욕적 발언에 관여하는 것.
14. 갈취, 강요, 및 협박 행위. 즉,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강제로 획득하는 행위 또는 폭력의 이용 또는 폭력 협박으로 개인의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15. 학군 직원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말 행위.
16. 시험의 컨닝, 표절 및 문서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인과 함께 허용되지 않은 협력을 하는 등의

정직하지 않은 학업자세.

17. 학군 직원에 대한 고의적으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불복 또는 집요한 반항.
18. 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학군의 기능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9. 학군 건물에 대한 행위로 타 학생 또는 학교 직원들의 복지, 안전 또는 사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포함.
20. 위협, 괴롭힘 및 못살게 굴기에 대한 학군의 정책 위반(예: 장기간의 신체 활동 강요, 물질의 과도한 소비 강요, 수면, 음식 또는 음료의 장기간 박탈 강요 또는 학생 그룹에 가입할 목적으로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기타 모든 행동 (정책 ACC).
21. 학군의 복장 규정 위반 행위. (정책 JICAB)
22. 학생의 표현에 대한 학군의 정책 위반 행위. (정책 JICED)
23. 학군의 직원에 대하여 사법기관 또는 학군에 허위로 형사고발하는 행위
24. 차별 금지에 관한 학군 정책의 위반 (정책 AC)
25. 따돌림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교육구의 정책 위반. (정책 JICDE)
26. 비밀 결사/갱 활동에 대한 교육구 정책 위반. (정책 JICF)

II. <u>유치원에서 2학년까지의 학생</u>

정학, 퇴학 및 기타 징계 개입에 관한 해당 법률 및 위원회 정책에 따라, 교장 또는 교장의 지정인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또는 학군 교과 과정 또는 비교과 행사와 관련이 있을 때 학군부지, 학군 차량, 지역 활동 또는 행사, 학군 영내 외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유아원, 유치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에 대한 퇴학을 유예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 내 무기에 관한 위원회의 정책 위반(정책 JICI). 연방법에 따라 총기를 가져오거나 소지할 경우 퇴학이 의무화된다.
2.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위원회의 정책 위반(정책 JICH).
3.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III. <u>학생과 직접 접촉한 교직원에게 규율 전달</u>

교장 및 교장의 피 임명자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생과 수업을 통하여 직접 연계되는 교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카운셀러 등과 의사를 교환한다. 그와 같은 정보를 받는 교사 또는 카운셀러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IV. <u>안전 계획</u>

교실, 학군내, 학군 차량, 학군 활동이나 행사에 지장을 주는 학생은 필요에 따라 학교 직원과 함께 학생의 안전 계획을 개발할 해당 학교 공무원을 만나야 한다.

최초 채택: 2009년 1월 12일
최종 수정일 : 2012년 8월 13일
현재 개정판: 2023년 1월 9일

법률자료: 20 U.S.C. § 1232g(FERPA)
20 U.S.C. § 7101 이하 참조. (1994년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21 U.S.C. § 812(규제 물질의 정의)
C.R.S. 18-3-202 et. seq. (대인 위반)
C.R.S. 18-4-301 et. seq. (대물 위반)
C.R.S. 18-9-124 (2) (a) (체벌금지)

C.R.S. 22-12-105 (3) (허위 고발자의 정학 또는 퇴학 권위자)
C.R.S. 22-32-109.1 (2)(a)(I) (학생의 품행, 안전 및 복리 규정 채택 의무)
C.R.S. § 22-32-109.1(2)(a)(I)(A)(학생 행동,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을 채택할 의무)
C.R.S. 22-32-109.1 (9) (학교안전 법의 면제규정)
C.R.S § 22-32-126 (교장 – 규율 전달 권한)
C.R.S. 22-33-106 (1)(a-e) (정학, 퇴학, 입학 거부의 근거)
C.R.S. § 22-33-106.1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한 정학 및 퇴학)
C.R.S. § 22-33-106.5(1) (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정보)
C.R.S. § 24-10-106.3(클레어 데이비스 학교 안전법)

관련 참고자료: AC, 차별 금지/기회의 평등 대인관계/인간관계
AC-R-2, 성적 차별 괴롭힘
AC-R-4 학생에 대한 성적 괴롭힘
ACC, 위협, 협박 치 체벌
ADC, 금연 학교
ADD, 안전한 학교
JIC, 학생의 품행
JICAB, 학생의 복장 규정
JICDB, 폭력 및 공격적인 행위
JICDE, 괴롭힘 예방 교육
JICED, 학생의 표현 권리
JICF, 비밀 단체/깡패 활동
JICH, 학생에 의한 마약 및 알코올 사용
JICI, 학교내의 무기
JK, 학생의 징계
JKD-1 학생에 대한 정학/퇴학

폭력 및 공격적인 행동
(JICDB)

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공격적인 행위는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며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다치기 쉬우며 폭력 또는 공격적인 행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같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행위를 관대하게 받아주는 경우 학군의 학생들 및 교직원들에게 주어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단기간에 파괴할 수도 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 분류되는 그와 같은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학군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잠재적인 폭발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방침은 폭력 및 공격적인 행위를 지연시키고 교육환경의 안전과 복지를 보존하기 위한 요령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폭력 및 공격적인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제재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학생 또는 직원이 학교 건물, 영역, 차량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및 학교 외부에서 발생되는 일부의 행사에서 타인에게 가해 및 가해 위협 또는 시도 행위는 본 방침에 위반되는 것이다. 폭력 및 공격 행위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의 언어 또는 행위적인 표현으로 타인 또는 재물에 상해나 손상을 끼칠 의도의 모든 표현이 포함된다. 폭력 및 공격의 협박은 상해나 가해의 개연성이 있으며 폭력 위험의 암시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의 행위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1. 신체적인 폭행: 부상 및 해로움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신체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개인 및 개인의 소지물을 때리거나 만지는 행위;
2. 언어 학대: 맹세, 소리 지름 및 음란한 제스쳐 등이 포함됨;
3. 협박: 구두 (전화 포함), 비언어적 제스쳐 또는 서면을 통하여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이나 그룹을 상대로 하는 행위;
4. 위협: 타인을 겁먹게 하여 복종 또는 굴복시키는행위;
5. 강탈: 타인으로부터 물건 또는 금전을 빼앗기 위하여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강요를 하는 행위;
6. 스토킹: 계속적인 따라다님, 감시 또는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안전 또는 마음의 평화를 위태롭게하는 행위;
7. 반항: 합법적인 권위에 대하여 중대한 반항 및 반대 행위;
8. 차별적인 비방: 개인의 인종, 성별, 성별 배경, 종교, 국가 또는 민족적 배경이나 장애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얕보는 또는 경멸적인 언어 행위;
9. 파괴 행위: 타인 소유 및 합법적인 소지 자산을 손상 또는 파손시키는 행위;
10. 테러: 테러의도, 테러 위험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 또는 건물을 비워야 하는 등과 같은 대중의 편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는 폭력의 위협 행위 또는 폭력의도의 협박.
11. 학군 정책에 설명된 괴롭힘 예방 교육.
12. 사이버 괴롭힘: 전자 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진실되거나 거짓된 아이디로 어떤 형태의 (문자, 영상, 오디오, 또는 비디오) 메세지를 전달하여 악담, 협박, 괴롭힘 또는 고의적이나 적대적으로 반복하여 다른사람을 모욕하거나 귤욕하는 행위.

학생 및 교직원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의 징조를 인식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의문의 행위나 잠재적인 폭력 상황에 대하여 빌딩 담당자 및 기타 학교 임원 또는 학군의 위기상황 직통 라인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신고는 신중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징계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폭력 및 공격 행위는 상세히 문서로 관리되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빌딩 담당자 또는 피 임명자와 정학 및/또는 퇴학을 포함하는 등의 징계 조치를 논의한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즉각적인 관여도 필수적이다.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학군 단위의 행정 요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의 담당자도 관여된다.

개정일자: 2012년 9월 10일
승인일자: 2012년 1월9일
법률자료: C.R.s. 22-32-109.1 (1)(b)(괴롭힘 정의)
관련자료: ACC, 협박, 괴롭힘과 곯림
AC R-2, AC R-4, 성 차별및 괴롭힘
JICDA, 행동 규정
JICDE, 약자폭행 예방 및 교육
JICF, 비밀사회/ 갱 활동
JICI, 학교에서 무기 소유
JICJ, 학생의 전차 통신 기기 사용
JK, 학생 징계 및 서브 규정

약자폭행 예방 및 교육
(JICDE)

교육 위원회는 위협과 괴롭힘 및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에 알맞는 안전한 학교 풍토를 지지한다. 본 정책의 목적은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가 수용될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학교 구역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로 취해지는 문서나 구두 표현 및 신체적인 행위나 제스쳐 및 그와 같은 행태를 의미한다. 본 정책의 목적상 학교 영역이라 함은 학교의 건물, 운동장, 차량, 버스 정거장 및 학교가 지원하는 모든 활동 및 이벤트를 포함한다.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정학, 퇴학 및/또는 사법 기관에의 의뢰 등을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그와 같은 행위의 심각성 및 행태는 징계 조치의 결정에 고려된다.

감독관은 모든 학교에서의 그와 같은 약자 괴롭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달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1. 학생, 직원, 부모 및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음을 전달한다.
2. 약자 괴롭힘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 단계를 취할 수 있도록 직원 및 학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3. 약자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개입, 조사 및 대치의 절차를 강구한다.
4. 수용 가능한 행위, 토론, 상담 및 적절한 부정적인 결과를 통하여 약자 괴롭힘 행위에 가담된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시작한다.
5. 약자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조성한다.
6. 개인 및 동급생들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7. 모든 학생들에게 동급생 지원망, 사회 기능 및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정규적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지원적인 행위를 인지하고 표창한다.

제안일자: 2001년 11월 12일
채택일자: 2001년 12월 10일
개정일자: 2012년 9월 10일
법률자료: C.R.S. 22-32-109.1(2)(a)(I)(K) (학교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책)
관련 자료: AC, 차별금지/평등한 기회
AC-R-7, 장애로 인한 차별
JB, 동등한 교육 기회
AC-R-1 성별로 인한 차별
AC-R-4 학생의 성희롱
JICDA, 행동 및 규율
JICDB,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JK, 학생 징계 및 서브 규정

학교관련 학생의 출판
(JICEA)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발행은 학생들이 보고, 작문, 편집 및 책임있는 언론의 이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활동 및 학생들을 위한 공개 포럼이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창조적인 표현을 학교생활의 교육혜택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라서 위원회는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의 구어 및 문어체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권장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을 통하여 각자의 견해를 피력할 것을 권장하며 책임있는 언론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허위 또는 외설, 중상모략, 주법이 명시하는 명예훼손과 같은 분명한 불법행위의 표현,

학교의 규정을 위반 또는 학교의 질서를 저해하는 표현,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재산 및 인명의 위협 표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후원 출판물의 학생 편집자는 뉴스, 의견, 본 규정과 주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출판하는 발행물의 광고내용 등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진다. 각 학교의 출판 조언자는 학교후원 출판물 제작의 감독과 언론의 책임있는 표현과 전문가적인 기준의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학교후원 출판물에의 참여가 수업 및 기타 성적을 받는 학교활동의 일환일 경우 출판 조언자는 학생들의 작문과제를 정하고 출판물이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의 경험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학교의 출판물 발행 규정을 개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 공식 출판물의 목적 설명서
2. 학교 후원 출판물 조언자 및 학생 편집자의 책임 사항
3. 주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는 안내지침
4. 학군 관할 내의 학교 후원 출판물에 대한 시간, 장소 및 배포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
5. 검열문제에 대한 학생과 학교담당자 간의 이견 해결 절차

위와 같은 출판물 규정은 매학년 초에 모든 학생 및 교사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채택: 2000년 10월 10일

법률 참고자료: C.R.S. 22-1-120 (공립학교 학생의 자유의사 권리)
C.R.S. 22-1-122(5)(e) (주법은 언론교사 및 스폰서의 감독하에 일하는 학생이 연방법에 의하여 저촉되지 않는 한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설문조사, 분석 또는 평가를 준비 및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R .S. 22-32-110 (1)(r) (부도덕 및 적합하지 않은 자료의 제거 권리)

관련 조항: JICED, 학생 표현 권리

학교관련 학생의 출판/학교 출판 규정
(학교 출판 규정: JICEA-R)

1. 공식 학교 출판물의 목적

학생의 교육 이수과정 또는 공동 교육 이수과정에 의한 출판물은 대중의 의견을 피력하는 공개된 포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떠한 기사도 그 내용의 민감함이나 논쟁적인 사유로 검열되지 않는다. 교육자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언론을 권장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책임을 빙자하여 학생의 의견을 검열할 수 없다.

2. 공식 학교출판물의 조언자 및 학생 편집자의 책임

a. 조언자 및 행정의 도움을 받는 학교 후원 출판물의 학생 요원은 매년 본 규정과 출판물 규정에 일관하는 편집방침을 마련한다.

b. 학교후원 출판물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출판되는 기사의 내용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을 진다.

c. 학교 출판물 조언자의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출판물 제작의 감독

(2) 자유롭고 책임있는 표현의 교육 및 강조

(3) 언론의 전문 기준에 대한 교육 및 권장

3. 주법에 명시된 언론자유의 제약사항

   a. 미성년자에게 "외설적"인 자료. 외설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선정적인 의미를 자아내는 것이다. 외설적인 자료는 일반적으로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b. 비방성 자료. 비방적인 글은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지역의 개인 또는 특정 비지니스에 대한 명성에 손상을 초래하는 저속한 자료이다. 비방의 대상이 공인일 경우, 비방을 받은 당사자는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이 실질적인 악의로 발행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악의라는 것은 허위임을 알고 또는 정보의 진위확인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발행하는 것이다.

   c. 불범행위의 분명한 위험, 합법적인 학교 규정의 위반, 또는 학교 질서의 방해 또는 자산 및 개인에 대한 위협을 조장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d.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내용.

4. 학군의 각 학교내에서 학교 후원 발행물의배포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출판 조언자, 학생 편집자와 협력하여 교장이 결정한다.

5. 검열에 대한 학생 및 학교 담당자 간의 이견을 해결하는 절차는 JII-학생의 관심사, 불평 및 불만 조항 및

   그 부속조항에 따른 다. 단, "1단계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읽어야 한다. "불만이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서명 응답을 제공한다. 거부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다."

승인자: 교장 Monte C. Moses, 2000년 10월 10일

학생의 비학과 이수과정 자료 배포
(JICEC)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사회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 학생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약사항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있다.

본 규정의 목적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학교내 및 학교 후원행사에서 학생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는 질서정연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에 의한 비학과 이수과정 자료의 학교내 배포는 관련규정 및 주법과 아래에서 명시되는 시간과장소 및 방법에 대한 금지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외설, 비방, 중상모략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는 금지된다. 불법적인 행동 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또는 규정의 위반 등과 같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학교의 질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권장하는 것을 배포할 수 없다.

본 규정 및/또는 재산이나 인명에 심각한 훼손 또는 손상, 또는 학교직원의 판단에 의하여 기물파괴 협박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학생은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학교후원 활동을 위하여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학교 장비 및 공급품을 그와 같은 출판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본 규정 및 관련규정은 모든 학생의 핸드북에 포함되어야 한다.

채택일자: 2000년 10월 20일

법률참고: C.R.S. 22-1-120 (공립학교 학생의 자유 표현 권리)
C.R.S. 22-32-110 (1)(r) (부도덕 및 부적절한 자료의 제거 권)
관련사항 참고: JICEA, 학교관련 학생 출판
JICED, 학생의 표현 권리
JK, 학생의 규율 및 하위규정
KHC, 프로모션 자료의 배포 및 게시

학생의 의사 표현 권리
(JICED)

학생들이 입학 및 학교관련 행사에 참가할 때에 헌법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간의 적절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책임 사항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표현은 본 학군의 교훈과 목적, 교과일정 및 본 규정에 맞아야 한다. 본 규정의 목적상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서의 문어, 구어, 시청각 및 전자미디어, 기타 학교관련 활동, 과제 및 프로젝트 등이 학생의 표현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제출, 제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1. 외설

2. 중상, 모략, 명예훼손 또는 기타 불법적인 것

3. 공인 및 대중의 관심사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허위

4. 불법행위, 합법적인 학교 규정의 위반 또는 학교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5. 저속한 것

6.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

7. 재산 및 사람에 대한 위협적인 것

8. 인종, 피부, 성, 나이, 종교, 국적배경, 장애, 또는 불구의 이유로 공격적인 것

9. 교육절차의 질서를 파괴하고 악의적인 것

10.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행위로 교육환경의 질서운영에 위협이 되는 것.

본 규정의 위반은 학군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는다.

채택일자: 2000년 9월 11일

법률참조: C.R.S. 22-1-120 (공립학교 학생의 자유 표현권)
C.R.S. 22-32-110 (1) (부도덕 및 악성 자료의 제거권)

참고자료: JICDA, 행동 및 징계규정
JICDB, 폭력 및 공격적인 행위
JICEC, 학생에 의한 비교육과정 자료의 배포
JK, 학생 징계

비밀 조직/깡패조직 활동
(JICF)

비밀 조직

학생들은 법에 의하여 구성원의 일부 혹은 전부가 학군 소속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어떠한 비밀 사교클럽, 여성클럽 혹은 이와 유사한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교육 위원회에서 인가된 단체 및 조직 외에 사교클럽 및 조직의 형성, 참여 및 소속 등을 금지한다.

명칭 및 지명방식에 상관 없이 회원들 간의 비밀권리를 갖고 있거나 타인 몰래 일부에게만 알려진 사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직은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갱 그룹

교육 위원회는 마약, 폭력 및 파괴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어떠한 그룹 및 갱들의 해로운 영향이나 위협으로부터 학군의 학교와 학생들이 분리되기를 원한다. 교장 및 피 임명자는 학생들에 대한 갱들의 위협과 각기 다른 갱 그룹의 멤버들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 건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감시를 해야한다.

교장 또는 피 임명자는 이와 같은 노력의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사법기관과 개방된 통신라인을 확보한다.

교장 및 피 임명자는 직원들이 갱들 및 갱들의 심벌과 파괴행위의 조기 상황을 인식하고 갱의 행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직원들은 충돌 관리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개입 방법 및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활용 수단에 대하여 경계 교육을 받는다.

위원회는 색상, 배열, 상표 및 기타 특성을 통하여 약물 남용, 폭력 및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갱 그룹의 멤버임을 나타내는 복장, 보석, 장식, 노트북 또는 몸단장 등의 활용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각 학교의 발생 상황에 따라 교육장 및 피 임명자와 상의를 한 후 교장의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

위원회는 많은 학생들이 갱의 가입에 대한 결과를 이해함이 없이 갱에 관련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갱 구성원의 사이클을 중단하기 위하여서는 조기의 간섭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갱 폭력 예방 교육을 3학년부터 실시한다.

책택: 1966년 8월8일
최신개정: 1979년 9월 10일
개정: 2012년 9월10일
법률자료: C.R.S. 22 1 117
C.R.S. 22 1 118
C.R.S. 22-32-109.1 (2)(a)(I)(F)(학교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책)
관련자료: JJA, 학생단체

학생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JICH)

I. 도입

체리크릭 학군은 알코올, 약물 및 기타 규제 약물과 그 남용에 관한 교육, 지원 및 의사 결정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보호자,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기관 간에 협력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위원회는 불법 약물 및 알코올의 사용, 소지, 배포, 판매, 제공 또는 교환이 불법이며 학생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한다.

위원회는 부모, 학교 및 지역 사회가 약물의 이용 및 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알코올/약물 남용에 개입된 학생들을 위하여 대중 및 개인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에 협력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지역사회의 약물 남용 치료 및 프로그램을 학생 및 부모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학군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기타 단체나 그룹에서 제공되는 약물 및 알코올 평가 또는 치료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알코올, 약물 또는 기타 통제 물질(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정의됨)의 영향을 받거나 학군 영역내에서 마리화나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약품 도구를 사용, 소유, 유통, 판매, 제공 또는 교환하는 학생은 위원회의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및 각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a. 본 정책의 목적상, 금지된 통제 물질에는 마약성 약물, 환각제 또는 정신을 변화시키는 약물 또는 물질, 암페타민, 바르비투르산염, 흥분제, 우울제, 마리화나, 단백 동화성 스테로이드, 주 또는 연방법에 정의된 기타 통제 물질 또는 처방전이 없는 약물, 약물, 비타민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며, 이는 처방 제공자의 명령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의료용 마리화나 투여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복용되지 않는다.

    b. 본 정책은 학생에게 통제된 것으로 판명된 물질 또는 학생이 그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2. 이와 같은 정책은 학교 영내에 있는 학생, 학교에 출석하거나, 학교 차량 또는 학교 지원 또는 승인의 활동에 참가한 학생, 학교 후원 또는 학군에서 승인된 활동 또는 행사 중에 학교 밖 영내에 있는 학생, 또는 학군 교육 과정 또는 비교과 행사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학생, 또는 학생 및 직원의 안전과 복지 운영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학생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3.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정학 및/또는 퇴학 및 기소 회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 <u>치료 및 예방 전략</u>

1. 학생이 약물 남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인의 상담이나 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을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적합할경우, 학부모/보호자가 참여하고 약물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도하는 노력을 기우려야한다.

2. 위원회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법집행 기관, 복지 서비스 또는 다른 기관과 단체 및 청소년의 불법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와 다른 사회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학생이 약물 및 알코올 남용과 관련된 어려운 일을 다룰때 학교 직원은 가능한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그 것에 대한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군은 학생및/또는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약물 남용치료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원을 면책 조항에 의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한 마약, 알코올 평가나 치료 비용에 대하여 첨부된 규정외에 달리 요구하지않는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지역사회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해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동반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약물 또는 알코올 평가 또는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군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면책 조항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군은 자원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이 정책 및 관련 절차의 사본은 학군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6. 학군은 마약과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것의 효과를 측정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구현한다.

원래 채택: 2003년 3월 10일
최종 수정일 : 2017년 2월 13일

현재 수정 사항: 2023년 3월 ___

법률자료: 20 U.S.C. Section 7101 et seq. (1994년 안전 및 마약 없는 학교와 커뮤니티 법)
21 U.S.C. § 812("규제 물질"의 정의 및 규제 물질 목록)
C.R.S. 18-18-102(3), (5)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및 "규제약물"의 정의)
C.R.S. 18-18-407(1)(g)(I) (학교부지 근처 또는 학교 통학 버스에서는 규제약물 소지, 판매 및 배분의 위법 행위)
C.R.S. 22-1-110 (학생을 위한 알코올 및 마약 관련 지침)
C.R.S. § 22-1-119.3 (3)(c), (d) (학생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자가 투여하지 않음)
C.R.S. 22-32-109.1 (2)(a)(I)(G) (학교안전계획에 요구되는 정책)
C.R.S. 22-33-106(1)(d) (마약 및 규제약물의 판매에 대한 정학이나 퇴학 의무)
C.R.S. § 25-1.5-106 (12)(b)(IV) (교내 또는 학교 버스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 금지)
C.R.S. § 25-14-103.5(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에서 마리화나 소매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함)

관련참고자료 IHAMA, 마약, 알코올 및 담배에 대한 교육
JIH, 학생에 대한 서면 질의, 조사 및 체포
JKD-1-E/JKE, 학생의 정학/퇴학
JLCA, 학생의 건강 서비스 및 요건
JLCD - 학생에게 약물 투여
JLCDB - 학군 소유의 유자격 학생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투여

학생들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JICH-R)

JICH 정책의 실시에 있어 다음의 규정은 철저히 준수될 것이다.

I. 소개

JICH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절차가 준수된다. 이러한 절차는 교육 위원회 정책에 의해 권한을 보충하고 완전케하여 다른 기타 권한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교육 위원회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 받게된다.

II. 정의

A. <u>금지된 물질</u>
1. 금지된 물질은 코케인, 헤로인, 알콜, 마리화나, 흡입제 및 모조 약물 등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금지된 물질은1992 (C.R.S. 18-18-101, et seq.) 1992년 시행 콜로라도주 통제 물질령 에 따라 통제된 물지로 한다.

B. <u>학교 구역내 관할권</u>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학생은 학군 관할권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학군의 영내에 있거나 학교가 승인한 활동에 속한 경우, 학군의 차량으로 이동 중인 경우 또는 학교 버스를 타거나 내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경우.

C. <u>약물 장비</u>
약물 장비는Uniform Controlled Substances Act of 1992, 18-18-426 (1992년 시행 통일 통제 물질령 18-18-426)에서 정의된 기계, 장비, 공구 및 장치 등이다.

D. 마리화나 액세서리

마리화나를 심고, 번식하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퇴비화하고, 제조하고, 혼합하고, 변환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저장하고, 기화시키거나 마리화나를 포함하는 장비, 제품 또는 재료 또는 마리화나를 인간의 몸에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입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로 설계된 모든 장비, 제품 또는 재료, 이는 콜로라도 헌법 제18조 제16항 제1조(g)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E. 모조 마약

모조 마약이라 함은 금지 약물로 표시된 어떠한 약물도 이에 속한다고 고려된다.

F. 금지된 물질의 사용

학군 관할권 내에서 학생의 행동, 컨디션, 언어 및 외모가 이전에 사용한 금지된 물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입증되는 경우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G. 소지

금지된 물질 및 약물 장비의 소지를 인정하거나 그와 같은 것이 개인 또는 개인의 소유물, 자동차 및 다른 차량, 로커, 책상 또는 학교 관할 구역의 기타 저장소에서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학생은 금지된 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지라 함은 개인이 조금이라도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를 갖고 있거나, 보관하거나,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갖고 있거나 그와 같은 것이 개인의 즉각적인 통제 영향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H. 배포, 배분, 판매, 제공 또는 교환

금지된 물질 또는 모조 약물이 개인에서 개인에게 전달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III. 기록의 이전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 등에 관련된 위반 행위의 일자, 위반 종류 및 징계 조치 등의 확인된 위반행위의 기록은 각 빌딩 별로 징계 파일에 보관되며 상위 단계 또는 학생의 출석 학교의 징계 행정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징계의 일환이 아니라 학교 당국자가 사건의 내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며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의 징계 기록 정보 유출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해당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V. 징계 조치

금지 물질 또는 약물 장비의 이용, 소지, 배포, 배분, 판매, 제공 또는 교환 행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하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학생의 금지 물질 소지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하여 교장 및 피 임명자는 적절한 사법 당국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정학 및 퇴학에 대하여 학군 정책 JKD-1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특별 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자 학생이 위에 명시됭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일반 학생과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 해당 학생의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IEP)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은 검토된다. 학교 교육위원회 정책, 주 및 연반 법령에 의거 만약 해당 장애학생이 학년 수업일수 중 10일 이상 누적적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정학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학적 유지 결정여부가 행하여 진다.

위에 명시된 모든 위반 행위는 징계 조치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누적되어 집계되는 경우 단일 또는 모든 카테고리의 종합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학생들의 금지 물질 및 약물 장비의 이용, 소지, 배포, 배분, 판매, 제공 또는 교환과 관련된 사법 관계자의 수사에 모든 직원은 전적으로 협력한다.

A. 금지 물질의 사용

어떠한 금지 물질(알코올, 마리화나, 통제된 물질 또는 모조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1. 학군 관할 지역에서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혐의가 있어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들은 이를 빌딩 담당자 또는 학생을 관찰할 피 임명자에게 알린다. 알림은 의혹에 대한 이유를 포함해야한다 (사용관찰, 비상적인 행동등). 교장이나 피 임명자가 의심되는 학생의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작업은 교육

위원회의 심문및 검색에 대한 정책을 준수해야한다.

2. 필요한 경우 각 개별 학교의 비상 절차를 준수한다.
3. 비정상적인 외모 또는 비정상적인 파괴 및 위험한 행위가 해당 학생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결과로 교장 및 피 임명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최대한 조속히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부모는 해당 학생의 외모 및/또는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받는다.
4. 교장 및 피 임명자는 학생에게 직접 요구 또는 학교 위원회 규정 (수색) V항에 명시된 수색 절차에 따라 증거를 입수하도록 한다.
5. 부모 또는 의료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혼자 있으면 않되며 감시될 수 있는 조용한 상황에 있도록 한다.
6. 사법 당국에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부모와 학생에게 알려준다.
7. 위에 명시된 금지 물질을 학생이 사용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학생은 아래의 징계 조항에 해당된다.

<u>1차 위반</u>

a. 해당학생은 5일간의 학교 수업일까지 정학이 될 수 있으며 교장의 요청으로 학교 구역 교육장에게 추가로 5일간의 학교 수업일을 추가하여 총 10일간의 학교 수업일에 이르기까지 그 정학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이 체리크리크 학교 구역 알코올 및/또는 약물교육/저지프로그램을 이수/수료하기를 합의한다는 조건하에 10일간의 학교 수업일에 대한 정학은 3일간의 학교 수업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해당 학생이 약물 저지 프로그램을 시작 및 수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파생되는 어떠한 수수료 및 비용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된다. 학교 구역에서 시행하는 약물 교육/저지 프로그램을 이수/수료했다는 증명은 학교 구역에서 정해 놓은 특별 이수 기간 내에 이수/수료된 것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류를 특정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10일간의 학교 수업일간의 정학을 완전히 채워야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당 학교구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타의 알코올 및 약물 교육/저지 프로그램을 선 택 해당학생으로하여금 이수/수료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채 프로그램은 학교 구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그 내용과 이수기간이 동일하여야 하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채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파생되는 어떠한 수수료 및 비용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대채 프로그램을 이수/수료 했다는 증명은 학교 구역에서 정해 놓은 특별 이수 기간 내에 이수/수료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류를 특정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10일간의 학교 수업일간의 정학을 완전히 채 워야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b. 해당학생이 학교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전에 학부형 회의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학생이 적절히 합의를 본 약물 교육/저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을 표시한다면 해당학생은 10일간의 정학기 간의 제3일 째되는 날부터 조기 재등교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해당학생은 조기 재등 교 자격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그 프로그램에 참가/출석하였다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를 조기 재등교 회의에 제출됨으로써 해당학생은 잔여 7일간의 학교 수업일에 대하여 정학 해제가 되며 징계 기록으로부터 삭제된다. 또한 재등교 회의에서 학교 교직원은 학교와 학부모 및 학생간에 서명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합의서에는 학부모, 해당 학생 및 학교 3자간에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책임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잔여 7일간의 학교 수업일이 해제되는 대신 해당학생이 합의를 특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7일간의 학교 수업의 정학이 복권됨을 명시된다. 재등교 회의에서 해당학생 혹은 학부모/보호자는 건물 관리인 혹은 그의 임명자에게 서면 정보 내용 통보를 허가할 수 있 도록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정보 내용에는 해당학생이 약물 교육/저지 프로그램에 이수/수료하였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정보 내용에 악세스할 수 있음을 제공 받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서면 합의서에는 특별히 2차 위반시에 있어서의 초래되는 결과 가 명시된다.

c. 당 학교 구역은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알코올 및/또는 약물 교육/저지, 카울셀링 및/또는 치료 옵션에 대한 자료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제공자들에 대한 리스트의 제공은 학교 당국이나 당 교육구역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자들에 대한 배경, 프로그램 준비, 훈련 및 서비스에 관한 이서 내지는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이나 체리크리크 학교 구역은 학생 개인간과 치료 제공자간에 체결된 어떠한 합의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u>2차 위반</u>

a. 교장의 요청으로 교육장의 허가를 얻어 심각한 학교 당국의 정책을 위반할 시에 대하여 5일간의 학교 수업일에 추가하여 5일간의 학교 수업일을 더하여 총 10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으로 연장시킬 수 있으며 학교에서 퇴교를 추천할 수 있다.

1. 만약 5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 후에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해당학생이 개인 운영의 알코올 및/또는 약물 평가/사정에 참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학생이 추천된 치료계획에 대한 개요 및 알코올 혹은 약물 교육/저지/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의향 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10일간의 학교수업일 정학이 5일간의 학교수업일 정학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 및 치료 계획을 시작하며 완료하기 위한 책임은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부과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평과/사정 및/또는 치료 계획과 연관한 어떠한 수수료 혹은 비용은 전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 알코올 및 약물 저지, 카운셀링 및/또는 치료 옵션에 대한 출처 리스트는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하면 제공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자 리스트의 제공은 학교 당국이나 혹은 체리 크리크 학교 구역이 그들의 배경, 준비, 훈련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이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교 당국이나 체리 크리크 학교 구역은 개별적으로 학생 및 치료 제공자간에 체결한 어떠한 협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학생이 학교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전에 해당학생이 조기 재등교 프로세스에 참가하기를 선택하든가 않하든간에 학부형 회의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학생이 조기 재등교 및 웨이버 프로세스에 참가하기를 선택한다면 해당학생은 첫 번째의 5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을 완료한 후에 재등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기 재등교 회의에서는 해당학생 및 해당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이수 완료된 개인 알코올 및/또는 약물 평가 사정서 및 해당학생이 알코올 및/또는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며 추천된 알코올 치료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사정, 치료 계획 혹은 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수수료 혹은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부과된다. 조기 재등교 회의에서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해당학생으로하여금 학교 재등교를 허용하며 잔여 5일간의 수업일 정학 기록은 퇴교를 위한 추천에서 웨이버가 된다. 만약 해당학생이 조기 재등교 회의 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생은 정해진 정학 기간의 완료와 동시에 이러한 학교 당국의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며 해당학생에게 어떠한 장래의 위반에 대한 경고를 통보 하기위한 재등교 회의를 개최한다.

c. 학교 교직원, 해당학생 및 학부모 3자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된다. 만약 해당학생이 조기 재 등교 프로세스에 참가하기를 선택한다면 해당학생은 학생 징계 기록에서 삭제되며, 5일간 정학기간을 단출 할 수 있는 협의서를 작성한다. 이 합의서에는 알코올 혹은 약물 위반에 대하여 만약 해당학생이 제의된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재복권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해당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건물 관리인 혹은 그의 지정자에게 알코올 약물 저지/치료 제공자로부터 서면 정보공개를 위한 악세스를 허가하며 이는 해당학생이 실제로 알코올 약물 저지/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d. 여건이 허락된다면 학교 구역내의 전학 및 교육적인 대안 등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학교 구 역 내의 전학은 관련된 두 학교의 행정 담당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학교로의 통학 수송비용은 해당학생 및 학부모가 책임을 진다.

<u>금지 물질의 사용에 대한 3차 및 그 이상 위반</u>

a. 학교 위원회 규정 JKD-1-R에 따라 해당 학생은 정학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퇴학을 받을 수 있다.

b. 퇴학을 권장하는 절차의 준수는 학교 위원회 규정 JKD-1-R에 명시되어 있다.

B. <u>소지</u>

학교 구역 관할 지역 내에서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를 소지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1.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접촉하는 경우 학교 직원은 교장 또는 피 임명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2. 학교 교직원은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고 이성적인 의심을 가진 학생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한 즉시 해당학생을 구류하고 교장 및 피 임명자에게 갈 것을 학생에게 요구한다.

3. 만약 학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직원은 즉시 교장 및 피 임명자에게 알린다. 직원은 교장이나 피 임명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하여야 한다.

4. 교장 및 피 임명자는 학생에게 직접 요구 또는 학교 위원회 규정 (수색) V항에 명시된 수색 절차에 따라 증거 획득을 하도록 기도한다.

5. 학생에게서 금지 물질이나 약물 장비가 발견된 경우 그와 같은 증거를 봉투에 담는다. 이 봉투를 봉하고 날짜를 기록한 다음 최초로 그 물질을 획득한 사람의 이니셜 서명을 하고 교장 또는 피 임명자는 그 봉투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6. 교장 또는 피 임명자는 적절한 사법 기관에 연락을 하고 그 물질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가져가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7. 학생이 어떠한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를 소지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학생 자신이 어떠한 것이든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의 소지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학생은 다음의 징계 절차 대상이 될 수도 있다.

<u>1차 위반</u>

a. 해당학생은 교장이 학교 구역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5일동안 학교 수업일까지 정학되며 추가로 5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을 포함하여 총 10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만약 정보가 권한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이다. 회의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마약/알코올 참여의 결과를 설명하고,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약물 남용에 대한 일반 정보및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1. 해당학생이 체리 크리크 학교 구역 약물 및 알코올 교육/저지 프로그램을 이수/완료할 것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10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을 3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이수/완료는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학교 구역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수수료 혹은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학교 구역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료하였다는 증거서류는 당 학교 구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 제출을 특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총 10일간의 완전 수업일 정학에 복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구역 이외에서 실행하는 알코올 혹은 약물 교육/저지 프로그램을 선택 수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채 프로그램은 학교 구역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내용 및 교육기간 면에서 동등한 것이라야 하며 해당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건물 관리 행정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채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수수료 혹은 비용은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대채 프로 그램을 수료하였다는 증빙서는 학교 교육구에서 특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을 특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총 10일간의 완전 수업일 정학에 복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b. 학부모 회의는 해당학생이 학교에 재등교하기 전에 개최된다. 만약 해당학생이 적절 하게 합의를 본 알코올 및 약물 교육/저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 하면 10일간의 수업일 정학 중 셋 째일 후 해당학생은 조기 재등교 회의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다. 해당학생은 조기 등교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 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 재등교 회의에서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은 해당학생으로하여금 학교에 재등교되며 잔여 7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의 면제 및 징계 기록으로부터 삭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재등교 회의 중에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해당학 생 3자간에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학생, 학부모 및 학교 당국간에 책임한계에 대 한 개요 및 장차 이러한 어떤 위반사건의 재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잔여 7일간의 학교 수업 정학 축소 및 합의사항을 특정 기한 내에 불이행 시에 재차 7일간의 학교 수업 일 정학에 대한 복권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게재한다. 해당학생에 대한

재등교 회의 중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건물 관리인 혹은 지정인에게 서면 정보 공개를 위한 악세스를 알코올 약물 저지 프로그램의 제공자로부터 얻어내어 해당학생이 실제 그러한 프로 그램에 참가, 수료하였는가를 검증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면 합의서에는 2차 위반이 발생할 시에 대한 결과를 특기하여야 한다.

c. 당 학교 구역은 해당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알코올 및/또는 약물 저지, 카운셀링 및/또는 치료 옵션에 대한 출처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제공자들에 대한 리스트 제출은 학교 혹은 학교 교육구가 그들의 배경, 준비, 훈련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이서나 혹은 보증이 아니다. 또한 학교나 혹은 체리 크리크 학교 구역은 개별 학생과 치료 제공자간에 체결된 어떠한 합의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차 위반

a. 해당학생은 교장이 학교 구역장에게 요청함으로서 심각한 학교 정책의 위반으로 추가로 5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에 더하여 퇴교조치 추천에 해당되는 총 10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까지 정학일수를 연장될 수 있다.

   1. 만약 5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 후에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해당학생이 개인적인 알코올 및/또는 약물 평가 사정을 선택하여 참가하였으며 추천된 치료 계획 및 알코올 혹은 약물 육/저지/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할 의향을 표시한 증거에 대한 개요를 제출할 수 있으면 퇴교를 위한 추천이 웨이브되어 5일간의 수업일 정학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시작 및 사정 및 치료계획의 완료 및 치료 프로그램의 참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있다. 이러한 치료계획 혹은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와 관련된 어떠한 수수료 혹은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 알코올 및 약물 저지, 카운셀링 및/또는 치료 옵션에 대한 출처 리스트는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제공자들에 대한 리스트의 제공은 학교 당국 혹은 체리 크리크 학교 구역이 그들의 배경, 준비, 훈련 혹은 서비스에 대해 이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교 당국 혹은 체리 크리크 학교 구역은 해당학생 및 치료 제공자간에 개인적으로 체결된 어떠한 합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해당학생이 조기 재등교 프로세스에 참가하기를 선택하였거나 아닌가에 관계없이 학부모 회 의가 해당학생이 재등교 되기 전에 개최된다. 만약 해당학생이 조기 재등교 프로세스에 참 가하기를 선택한다면 해당학생은 첫 5일간의 학교 수업일 정학 종료 후에 재등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조기 재등교 회의에서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수료된 개인 알코올 및/또는 약물 평가 사정서를 제출하여 해당학생이 알코올 및/또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 이 있음을 표시하며 추천된 치료 증거를 제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평가/사정, 치료 계획 혹은 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수수료 혹은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조기 재등교 회의에서 증빙서류의 제시는 해당학생으로하여금 학교에 재등교하게 하며 잔여 5일간의 수업일 정학에 대하여 해당학생의 퇴교 추천에 대한 웨이버를 받도록 된다. 만약 해당학생이 조기 재등교 회의에 참가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생은 총 정학기간의 완료와 더부러 이러한 학교의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며 해당학생이 장차 어떠한 위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통보를 목적으로 재등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c. 만약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조기 재등교 프로세스에 참가하기를 선택한다면 해당학 생은 5일간 학교 정학기간을 줄이고, 퇴교 권고를 철회하는 서식에 기입 완료함으로서 학교 교직원, 해당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3자간의 서면 합의를 작성한다. 이 합의서는 알코올 혹은 약물 위반에 대한 5일간 정학과 퇴학을 권고할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해당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건물 관리인 혹은 지정인에게 서면 정보 공개를 위한 악세스를 알코올 약물 저지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얻어내어 해당학생이 실제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 수료하였는가를 검증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d. 여건이 허락되면 학교 구역 내의 전학 및 교육적인 대안 등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학교 구역 내의 전학은 관련된 두 학교의 행정 담당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학교로의 수송은 학생 및 부모의 책임이다.

3차 및 그 이상의 위반

a. 학교 위원회 규정 JKD-1-R에 따라 해당 학생은 퇴학 검토가 실시될 때까지정학 될 수 도 있다.
b. 퇴학을 요청하는 절차의 준수는 학교 위원회 규정 JKD-1-R에 명시되어 있다.

C. 배포, 배분, 판매, 제공 혹은 교환

학군 관할 내에서 어떠한 것이든 금지 물질 또는 약물 장비의 배포, 배분, 판매, 제공 또는 교환 행위에 가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 절차를 준수한다.

1.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 장비의 배포, 배분, 판매, 제공 혹은 교환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직원이 목격했을 경우 이를 발견한 직원은 즉시 해당 학생을 구류하고 학생에게 교장 및 피 임명자에게 갈 것을 학생에게 요구한다. 학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직원은 즉시 교장 및 피 임명자에게 알린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은 교장이나 피 임명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교장 및 피 임명자는 학생에게 직접 요구 또는 학교 위원회 규정 (수색) V항에 명시된 수색 절차에 따라 증거 획득을 하도록 한다.
3. 학생에게서 금지 물질이나 약물 장비가 발견된 경우 그와 같은 증거를 봉투에 담는다. 이 봉투를 봉하고 날짜를 기록한 다음 교장 또는 피 임명자이 서명하고 그 봉투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4. 교장 또는 피 임명자는 적절한 사법 기관에 연락을 하고 그 물질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가져가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5. 해당 학생은 5일 동안 정학 받고 퇴학을 권장받게 된다. 교장이나 피 임명자는 학생이 규정된 약물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각 사례에 적절한 법 집행 공무원을 호출 할 수 있다.
6. 필요할 경우, 학생이 다시 학교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교장 또는 피 임명자와 학생 및 부모가 회의를 실시한다.

V. <u>수색</u>

수색은 학교 위원회 방침 (School Board Policy) JIH: Student Interrogations, Searches and Arrests 에 따라 실시한다.

VI. <u>감독 의무</u>

이제까지 명시된 위 규정의 어느 사항도 학군 관할 지역 내의 학생 또는 지역을 감독 및 컨트롤하는 학교 구역의 의무를 위의 규정이 승인되기 이전에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항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연장 및 확장 해석될 수 없다.

2007년 5월 14일 교육장 몬티 씨 모세스에 의해 승인
2012년 8월 13일 개정

학생에 의한 담배 사용
(JICHA)

체리크리크 학교 구역은 높은 수준의 개인 및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한다. 학생과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및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영내 또는 학교 시간 중의 학교 관할 하에 있거나 학교가 지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의 담배 제품을 피우거나 씹거나 다른 형태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1. "학교 기물"은 학교가 소유, 임대, 대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교육, 행정, 지원 서비스, 보수, 저장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모든 내부 또는 기타 구조.
   b) 학교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건물 주변, 학교 영내, 놀이터, 휴식 공간 및 주차 공간 등의 모든 공간.
   c) 학생, 직원, 방문객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학군 사용의 모든 차량.
2. "담배"란 씨가렛, 씨가, 파이프 담배, 스너프, 씹는 담배 및 씹거나 피우기에 적합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타 모든 종류 또는 형태의 담배를 의미한다. 담배는 피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제품도 포함된다.
3. "사용"이라는 것은 불을 피우는 것, 씹는 것, 흡입하는 것 또는 어떠한 것이든 담배 제품을 피우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주 정부의 법에 따라, 어떤 학생도 단순한 흡연에 따라 퇴학을 받지는 않는다.

채택일자: 2001년 6월 11일

관련법률 자료 20 U.S.C. Section 6083 (연방법은 어린이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실내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C.R.S. 18-13-121 C.R.S. 22-32-109(1)(bb) C.R.S. 25-14-103.5 6 CCR 1010-6, Rule 5-306
관련참고자료	ADC, 약물 및 담배 없는 학교 IHAMA, 약물, 알콜 및 담배 교육 JKE/JKE, 학생의 정학 및 퇴학

학교 내의 무기소지
(JICI)

본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무기 소지 및/또는 이용은 학군내 학생들 및 학교 직원들의 안전과 복리에 해로운 것으로 결정한다. 소지라 함은 위험한 무기 및/ 총기 복제품을 실질적으로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위험한 무기/및/ 총기 복제품이 자동차, 사물함, 백팩 또는 기타 장소 등 어디에 있든간에 학군내에 있는 학생에 의하여 소유 또는 컨트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정책 JICI를 위반하여 무기, 위험한 무기 및/또는 총기 복제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은 정학, 퇴학 및 기타 징계 개입에 관한 위원회 정책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구 관리자는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정학, 퇴학 또는 기타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례별로 본 정책 조항의 위반을 고려해야 한다.

I. <u>위험한 무기의 정의</u>

이 정책에서 사용된 "무기"는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잠재적 사용 또는 의도적이거나 위협적인 사용의 결과로 이 정책에 따라 무기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야구 방망이는 일반적으로 무기로 간주되지 않으나 싸움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 정책에 따라 무기로 간주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물체의 예로는 조명탄 총, 바위, 병 및 캔, 사슬, 신발, 특히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군용 부츠, 배트, 줄, 메이스 또는 유사한 유해 화학 물질이 있다.

II. <u>위험한 무기</u>

교육구의 승인 없이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이나 행사 중에, 교육구가 파견한 차량으로 운송될 때, 또는 교육구 부지에서 위험한 무기를 휴대, 반입, 소지,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교육구 부지 외부에서 교육구 커리큘럼 또는 비 커리큘럼 행사와 합당한 관련이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교에서 승인한 특별활동 혹은 무기를 활용하는 팀에 참가하는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규정에서의 “위험한 무기”는 다음과 같다.

a. 총기 (실탄의 장진여부는 상관없음) C.R.S. § 18-1-901(3)(h)에서 정의된 것 같이
b. BB건 및 기타 장치와 같은 펠릿 (작동여부는 상관없음)으로 스프링이나 공기압으로 물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또는 블랭크 및/또는 연기를 방출하는 플레어 총.
c. 길이 3인치 이상의 칼날이 고정된 칼, 스프링이 장치된 칼, 길이 3.5인치 이상의 주머니 칼.
d. 투석기, 쌍절곤, 용수철 총, 던지는 별모양 무기, 곤봉, 쇳조각 혹은 인공 너클등 및 기타 제반적인 것으로 인체의 사망이나 신체적인 상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용되어지는 모든 형태의 물건, 장치, 장비, 물질 또는 물체

연방법에 따르면 본 규정을 위반하고 학군부지에 총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한 것이 결정되는 학생은 무조건 최소한 1년 이상의 퇴학조치를 받는다. 교육감은 케이스 별로 연방부의 요구 사항의 길이를 수정 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II. 모방 총기

더하여 학교 소유지에서나, 학교로 파견된 차량에서 이송되는 동안이나, 학교나 학군이 후원하는 활동 및 이밴트에서나, 학교 외의 소유지에서 학교 및 학군과 관련된 교육적이나 무교육적 활동에서 학군의 승인 없이 모방 총기를 들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내 보인다거나, 그것을 사용한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적 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음으로 절대 금지된다. 이 정책의 조항을 위반하는 학생은 징계조치 대상으로 정학 또는 퇴학 처벌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 부지에서 학교와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실제 총기로 착각 될수 있는 모방 총을 들고 있거나 가지고 오거나, 사용하거나, 소유하려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이러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정책 조항을 위반했음으로 정학 및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지만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이 학교 부지에서 실제 총기로 착각 될수 있는 모방 총을 들고 있거나 가지고 오거나,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허가하는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이 한다.

IV. 정학 혹은 퇴학 조치를 초래하는 칼에 대한 임의

교육위원회는 특히 클레어 데이비스 학교 안전법의 의무를 고려할 때 학생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예방 조치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학교가 후원하거나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이나 행사 동안 교육구가 파견한 차량으로 운송될 때 칼날의 길이에 관계없이 교육구 부지에서 칼을 가져오거나, 휴대하거나, 사용 또는 소지하고, 그리고 학군 밖에서 그러한 행위가 명시적 허가 없이 교육구 교과 과정 또는 비 교과 과정과 합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학생,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유해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적절한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V. 기록 유지

본 학군은 무기소지와 관련된 퇴학조치 상황에 대하여 학교 이름, 퇴학생 수, 무기형태 등 법으로 요구되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VI. 법 집행 기간에 의뢰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구 직원은 교육구의 승인 없이 학교 후원 또는 교육구 후원 활동이나 교육구 부지에 총기나 무기를 가져오는 모든 학생을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한다.

최초 채택일: 2003년 12월 8일
최종 개정일: 2012년 8월 13일
현재 수정일: 2023년 4월 10일

법률참고자료: 18 U.S.C. 부분 921 (a)(3) (총기의 연방 정부 정의)
20 U.S.C. 7151 (무 총기 학교 법령)
20 U.S.C. 7151 (h)(학교로 하여금 법집행 기관에 의뢰를 필요로하는 정책을 요구)
C.R.S. § 18-1-901(3)(h)("화기"의 주법 정의)
C.R.S. § 22-32-109.1 (2)(a)(I)(G) (안전한 학교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책)
C.R.S. 22-33-102(4) (위험한 무기의 정의)
C.R.S. 22-33-106(1) (정학, 퇴학 및 입학 거부의 근거)
C.R.S. 22-33-106(1)(d),(f)(총기 팩시밀리에 관한 정책을 채택해야함)
C.R.S. § 24-10-106.3(클레어 데이비스 학교 안전법)
People v. Saleh, 45 P.3d 1272 (Colo. 2002)

관련참고자료: JKD, 학생의 정학/퇴학
JKD-2, 장애 학생의 징계
KFA, 학교 영내에서의 품행 규정

학생들의 전자 통신기 사용
(JICJ)

교육 위원회는 전자 통신 장치 (ECD)가 긴급 상황 및 교육 환경의 기술체계로 모두 중요한 통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교내에서 개인이 전자 통신 장치를 사용하면 교육 과정에 혼란 또는 방해를 미칠 수 있음으로 적절한 사용 지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정책, "전자 통신 장치" 는 휴대폰, 호출기, 무전기 및 가청 신호를 방출하고, 진동하거나,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또는 소유자에게 통신을 제공하는 기타 통신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아이패드, 또는 다른 태블랫 장치, 스마트폰 등).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전자 란 용어는 전자 게임 및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같은 엔터테인먼크 기기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학교 후원 행사/활동에서 전자 통신 장비를 소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나 학교 후원 행사/활동 또는 학교 차량에서 휴대 전화나 다른 ECD 사용에 대한 교직원의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학교장에 의해 정의된대로 학생들은 휴대 전화 및 기타 ECD 사용을 허용한다. 학교장은 각 건물의 특정 정의된 위치에서 ECD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학생이 휴대 전화 또는 기타 ECD 장치를 소유하는 것은 특권으로 간주됨으로 전자 통신기를 오용하고 교육 위원회의 정책 규정 또는 학교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학생은 전자 통신기 소유하는 것을 상실 할 수도 있다.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휴대 전화 또는 ECD의 부적절한 사용에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1.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보는것.
2.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겁을주며 협박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
3. 학교나 학교가 후원하는 이벤트에서 카메라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원치않는 사진을 찍거나 위협되고 괴롭힘이 되는 부끄러운 사진, 음성이나 문자를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하여 전송하는 것.
4. 이러한 장치를 학업적 부정 행위에 사용하는 것.
5.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학군 소유인 컴퓨터에 개인 또는 비 학교 관련 파일을 저장하는 것.
6.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 왕따"를 하거나 원치않는 전자 통신이나 학습 환경에 혼란을 일으킬 통신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전자 통신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자 통신기 사용이 허락 되지 않은 시간에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이 정책 및 또는 전자 통신기 사용의 다른 학군의 정책을 위반하면 징계 조치에 처하며 전자 통신기를 압수 할 수 있다. 압수된 전자 통신기는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학교 교직원과의 회의 후 학생에게 반환한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법 집행에 문제를 참조 할 수 있다.

휴대 전화 또는 ECD 사용을 통해 학교 규칙, 학군 정책이나 법을 위반 한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의심되는 불법 행위의 증거에 대한 검색은 학군 정책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다. 학생이 휴대전화나 ECD 기기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면 징계조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에 넘겨지지 않은 압수된 휴대전화 또는 ECD는 더 이상 조사나 징계 절차에 필요하지 않으면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주어진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대 전화 또는 ECD는 학생에게 직접 반환 될 수 있다.

학군은 전자 통신기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위반하여 교직원이 압수한 전자 통신 기기의 보안, 보관, 도난, 파괴 및 손실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자 통신기의 모든 손실은 각 개인의 책임이다.

채택일자: 2012년 1월 9일
수정: 2014년 8월 11일
관련 자료.: JIC, 학생 행위 하위코드
JIH, 학생 심문, 검색, 체포
JK, 학생 징계 및 하위코드

학생에 대한 심문, 수색 및 체포
(JIH)

교육 위원회는 직원과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업 분위기를 조장하는 학교의 풍토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직원이 학생 및 학생의 소지물을 수색하여 학생과 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위험이 되거나 해로운 것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

학교 관리자에 의한 학생의 인터뷰 또는 심문

교육 위원회 정책이나 학교 규칙의 위반이 발생하면 교장이나 피 임명자가 가능성 있는 학생 피해자와 증인에게 학생의 부모/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질문 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아동 학대 보고를 조사하는 경우 의심가는 가해자가 학생의 가족의 일원이면, 학생의 가족과 어떤 접촉도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 교육위원회 정책이나 학교 규칙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위반이 발생했음을 의심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교장이나 피임명자가 학생을 심문 할 수 있다. 질문의 성격과 범위는 합리적으로 질문의 목적과 관련되어야한다. 학생이 참여나 과실이 있음을 거부하면 학생은 구두나 서면으로 자신의 측면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학교 직원에 의해 검색 실시

수색은 학생이 위원회의 방침이나 법을 위반한 증거가 수색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학교의 임원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다. 수색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학교의 직원은 학생 및 학생의 소지물이 학교의 영내에 있거나, 본 정책의 규정에 따른 환경의 학교 활동 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불법 또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금제품 등을 압수할 수 있다.

학교 임원에 의한 수색은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 성별 및 위반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가능한 한 해당 학생에게 수색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수색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학교 임원에 의한 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학생은 징계 조치의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수색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수색 이유, 결과 및 증인의 이름 등을 포함하는 행정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색 결과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위 보고서는 학생의 징계 파일에 접수되어야 한다.

정의

1. "합리적인 의심"은 학교의 기물 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 가운데서 관계자에 의하여 수색이 실시되는 기준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관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특정인이나 특정의 장소 또는 특정의 물건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위원회의 방침 또는 주 정부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 또는 개인적인 관찰을 통하여 제공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단순한 예감 이상을 요구한다.
2. "금수품"은 교육 위원회 정책 또는 주 정부의 법으로 금지된 요소 또는 물질로 구성되며 JICI 정책에 규정된 마약, 알코올 음료 .위험한 무기/총기., .무기. 또는 .복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기물에 대한 수색

학교의 로커, 책상 및 기타 저장 공간은 학교의 기물로써 항상 학교의 통제하에 유지된다. 모든 사물함, 책상 및 기타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그의 내용물은 예고 있거나 없이 수색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교 기물은 검열, 청소 및 보수와 본 정책에 따른 수색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은 각자의 로커 및/또는 기타 저장 공간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서 인정해준 방법에 따라 안전의 책임을 진다. 학생들에게 부여된 책상 및 로커에 있는 내용물과 그에 관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서는 각 학생이 책임진다.

학생은 로커나 저장공간이 제공된 학교의 교장에 의하여 제공 및 승인된 열쇠를 제외한 어떤 것으로도 로커나 기타 저장공간을 잠그거나 방해할 수 없다. 승인되지 않은 열쇠는 철거된다.

수색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교장 또는 그 피 임명자는 책상, 로커 및 기타 저장 공간과 그 내용물에 대하여 수색을 할 수 있다. 언제나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동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증인이 되도록 한다.

주차장/ 차량 수색

학생이 운전하는 차량이 학교 영내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은 수색을 통하여 금제품에 대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색을 허용한다는 동의 조건하게 주어진다.

학교 영내에서의 차량 수색 요구에 대한 학생, 부모/보호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 의한 거부는 학교 영내로 차를 끌고 올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절차 없이 해당 차량의 교내 진입 특권 중단을 초래한다. 수색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또한 징계 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게된다.

학생 차량 주차장의 정기적인 순찰과 학생 자동차의 외부를 검사는 항상 허용된다.

학생의 신체와 소지품 수색

교장 및 그 피 임명자는 학생의 신체나 학생의 가방, 백팩, 책가방과 서류 가방 같은 소지품에 다음 이유를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색할 수 있다.

a. 교육 위원회 또는 학군 정책, 학교 규칙, 또는 연방, 주, 지역 법의 위반 증거.
b. 어느것이든 그 것의 존재로 인해 아무 사람에게 즉각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질병의 위험을 제시하는 것.

학생의 신체 수색은 학생의 주머니, 지갑, 가방 또는 백팩 등과 같은 학생의 소지물 및/또는 복장의 바깥 쪽에서 손으로 두드려 내려가는 수색에 제한된다.

학생의 개인이나 개인 소지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의 범위의 목적은 의심되는 위반에 관하여 합리적이야 한다.

학생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신체 수색은 다른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은 곳에서 최대한 사적으로 실시한다. 수색 대상 학생과 같은 성별의 최소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증인들은 수색을 하지 않는다.

학생의 개인 및 / 또는 개인 소지품의 검색은 학생의 부모 /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실시 할 수 있다. 수색을 실시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코트, 외투 또는 신발 이외의 복장을 제거해야하는 신체의 수색은 사법 경관에게 의뢰한다. 이러한 수색은 학교 직원에 의하여 실시될 수 없다.

사법 경관의 개입

교장 또는 그 임명자는 학교 영내의 수색을 사법 경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색에 사법 경관이 개입되면 수색은 본 정책의 규정이 아닌 형사법에 준하여 실시된다.

사법 경관의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하는 경우, 학교의 직원은 사법 경관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수색에 협조 또는 참여할 수 없다.

교장 또는 그 임명자는 다음을 위하여 사법 경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 로커, 책상 및 기타 저장 공간을 포함한 학교 기물의 수색 실시;
2. 학생이 학교 관계자의 수색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학생의 지갑, 가방 또는 백팩 등 개인 소지품 또는 차량 등에 대한 수색 실시;

위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 임명자는 사법 경관의 개입에 앞서 학생의 부모에게 우선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는

3.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된 수색의 과정에서 발견된 금지된 항목의 명시 또는 수거.

사법 경관이 학생, 학생의 소지품 또는 학교 기물에 대하여 범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게 유효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생이 강요없이 동이하는 경우;
2. 수색 영장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 수색의 목적이 좌절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인 및 환경이 있는 경우. 또는
3. 체포에 따른 수색으로 개인 및 당사자의 주변만 해당되는 경우.

심문

학생의 학교 내 또는 학교 활동 중에 있을 때 사법 경관이 학생에 대한 심문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교장 및 피 임명자가 참석한다. 모든 적용 절차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증인을 인터뷰

하거나 학생 용의자 심문의 책임은 법 집행 임원에게 있다. 교장이나 피지 명자는 법 집행 임원이 적절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영장 또는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비상 상태 또는 기타 위급 상황이 존재할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수업 시간동안 심문과 인터뷰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학생이 18세 미만일 경우 주 정부의 법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도 함께 참석한다.

그러나 교직원이 학생의 범법 행위가 있거나 발생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 교직원은 적절한 사법 기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의심스런 행동을 신고한다. 이와 같은 신고를 접하는 사법 기관의 담당자들은 그에 대한 결과로 모든 합리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학생의 가족중 누가 아동 학대의 조사를 받는 경우나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있거나 또는 기타 긴급 위기 상황의 존재를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증인을 인터뷰하거나 학생 용의자를 심문할 때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이 상황을 알리도록 한다.

학생이 18세 이하의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법 집행관이 학생을 심문하거나 인터뷰 할 때 그곳에 있어야한다. 다음은 제외: (1) 주 법에 정의 된데로 청소년이 독립한 경우; (2) 학생의 부모 / 보호자가 이 정책에 따라 통보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3) 심문이나 인터뷰 할때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동의했을 경우.

사적인 심문의 실시 및 학생의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심문을 받는 학생에게 타인의 주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압수 수색

교장이나 피 임명자는 법집행 임원에 의해 학교 구내의 검색 실시를 요청 할 수 있다. 법 집행 임원이 그러한 요청에 응답 할 때 학교 직원은 검색하는 것을 돕거나 참여해서는 않된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검색은 관련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실시된다.

보호감찰 및/혹은 체포

학생이 체포됐을 경우,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나 학생이 원할 경우, 법 집행 임원에게 학생을 내어준다. 학생이 어떤 이유로 법 집행 임원에 의해 학교에서 제거되면 학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우려 이 사실을 부모 /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경찰에 의한 보호감찰 및/또는 체포가 발생되는 경우, 교장은 법에 명시된 모든 절차의 안전 조치를 경찰이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적절한 체포 영장이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반 절차를 포함한다. 법 집행 임원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체포 할 때 학교 직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지품의 압수

법, 위원회의 정책 또는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는 증거 또는 즉각적인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 학교 관계자에 의한 수색에서 발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1. 압수 당시에 꼬리표를 붙여서 명시된 것일 경우 압수, 시험 및/또는 정학이나 퇴학의 절차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물건은 심의가 열릴 때까지 안전한 곳에 교장이 보관할 수 있다. 테스트를 통하여 통제되거나 모조된 물질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하여 문서로 명시한 후 보관하며, 정학이나 퇴학의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또는

2. 본 정책에 따라 사법 기관의 경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압수된 물건과 관련한 사법 기록, 테스트 및 보고는 정학이나 퇴학의 절차에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u>항소</u>

학생은 수색 후 10일의 수업일자 이내에 수색 결정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수색의 이유 및 환경을 조사한다. 교육장은 항소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교육장의 결정은 학군의 최종 결정이 된다.

채택일자: 1999년 5월 10일
개정일자: 2012년 9월 10일

법률자료: C.R.S. 19-2-511 et seq
C.R.S. 22-32-109.1 (2)(a)(I)(II)(학교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책).
관련자료: JK, 학생 처벌 및 서브 코드
JICI, 학교내의 무기

학교 대항 운동 경기
(JJI)

개요
학교 대항 운동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격려하고 학교를 대표하기 위해 존재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만 대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 교사들 및 후원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학교 대항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임으로 규칙,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체리크릭 학군의 대항 운동 프로그램은 과외 학교 프로그램으로 남녀 학생 모두가 학교 대항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나 필수적인 프로램이 아니다.

위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우원회는 남학생 스포츠와 동등한 기준으로 여학생 스포츠에도 자금을 제공한다. 특정 스포츠가 남녀 공학 활동으로 적합한 판정이된 경우 남녀 공학 팀을 격려한다. 교육 위원회는 학생, 교사 및 지역 사회가 운동의 가치를 전체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격은 콜로라도 고등학교 활동 협회 (CHSAA) 의 헌법과 세칙 및 학군의 규칙과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징계 절차 및 체육 제재
이 정책 및 첨부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첨부 규제 및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설명된 대로 적절한 징계 제재를 따라야 한다.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는 제재의 부과 조치는 학생의 학교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의 적용
학생은 그가 참여하는 스포츠 시즌 동안 이 정책이 학생에게 적용된다. 시즌은 연습 첫날에 시작되어 시즌이 끝난 후 갖는 경기까지 계속된다. 또한 제재는 학기중 언제든지 발생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반으로 학교 캠퍼스에서나 밖에서나 학교 세션이 없는 동안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 될 수 있다.

기타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코치나 후원자로부터 활동, 통금시간, 팀이나 그룹 기능에 관한 다른 문제에 적용되는 추가 규칙 설정을 금지하는 것을 간주 할 수 없다. 사소한 위반으로 예상되는 것은 운동 지도자 및/또는 해당 지역부 관리자와 의논한 후 코치가 직접 처리한다. 이 정책의 어떠한 것도 교육 위원회 정책에 관련된 1967년 학교 출석법에 따라 학생을 징계 할 수 있는 학군의 권한을 제한 할 수 없다.
교직원이나 학생에 의해 다른 출석 지역의 학생 선수 모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집에 관련된 학생/교직원에게는 징계를 구성한다. 학부모 및 지역 사회 회원은 운동 목적으로만 모집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채택일자: 2004년 8월 16일
관련자료: JJ, Student Activities (Co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JICDA, Conduct and Discipline Code
JKD-1-E, Grounds for Suspension, Expulsion and Denial of Admission
JICH, Alcohol and Other Drug Use by Students

대항 운동 경기 (운동 코드)
(JJI-R)

자격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격은 콜로라도 고등학교 활동 협회 (CHSAA) 의 헌법과 정관 및 학군에 의해 설립된 규칙과 구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대항 운동 코드
조항 제 III 헌법 및 CHASS 의 정관은 다음을 제공한다:
3. 학생이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학교 활동에서 학교를 대표 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학생은 자신의 고등학교의 진실한 학부 구성원이다.
b 주체의 판단에 의해 학생은 행위, 시민성과 스포츠맨싶에 있어서 학교의 이념의 대표이다.
c 학생은 운동에 참여 하는 기간 동안 한 학기 수업 과정에 등록되어야 하고 카네기 단위의 2.5 학점을 획득해야 하며 분기 학점을 학기말에 결합하여 다음 학기의 운동 자격을 결정하여 학군에 의해 설립된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d 학생은 위의 "C" 단락에 따라 출석의 마지막 학기까지 운동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학업 자격은 학기 시작부터 끝까지 평균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 학생이 등록후 학교에 15일 출석하고 중퇴하면 다음 학기에 운동할 자격을 상실한다. 학생이 한 학기동안 5일 출석하면 그 학기에 요구되는 학점을 다 완료해야 다음 학기에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f 학생은 법으로 금지된 어떠한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학군은 다음의 추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했다.
1 고등 학교 운동 참가자는 신체 검사를 통과햐야 하고 신체 검사는 참가자의 부모/보호자가 동의해야 한다. 중학교 학생들도 대항 운동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통과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고등학교 수준의 대항경기 참가자는 학군에서 요구하는 학교 체육 보험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인증하는 가족의료보험에 가입 되어야 한다.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대항 운동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학교 체육 보험이나 가족 의료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추천한다.
3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군내/외에서 다음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a 술, 담배, 대마초, 도는 다른 불법 마약, 위조약물의 사용, 소지, 판매, 배포 하는 것이나 마약과 관련된 도구를 교환하는 것.
b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불순종 또는 반항.
c 고의적인 학교 재산 파괴.
d 교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도덕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
e 사소한 교통위반 외의 시, 카운티 또는 지방 법원의 형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
f 참가자들은 적절한 학업 성적 수준과 출석을 유지해야 한다.
g 참가자는 학교와 사회의 일반 원칙의 좋은 스포츠맨싶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징계절차 및 체육 제재
아래의 어떤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들은 적절한 징계 제재를 받아야 한다.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과 부과 될 제재의 성질은 교장이나 그의 지명인이 결정한다.

다음 절차는 체리크릭 학군내 고등학교가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추정된 체육 위반을 처리 할 때 고등학교 대항 참가자 카드의 제안과 유사한 절차를 사용한다. 이 절차는 체육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각 학교에게 유연성을 허용하되 대항 운동 경기의 정신및 실제 규칙은 철저히 적용 해야된다. 이러한 절차는 JJI 정책에서 채택되었고 절차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 운동 코드에 정의된 규정과 규칙이 적용된다.

위반 사항 조사
대항 체육 코드의 규칙에 관한 부정 행위 주장은 코치와 체육관리 행정직원이 불만을 수시신시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조사해야 한다.

공고

a 대항 체육 코드의 규칙에 관한 부정 행위에 참여한 학생 운동선수에게는 가능한 즉시 부정 행위의 주장에 대하여 알린다. 주장의 수신시, 또는 그 후 가능한 즉시 체육관리 행정직원과 코치에 의해 실시된다.

b 조사의 일환으로, 학생 운동선수는 본인측 이야기를 제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것은 변호인을 확보 한다거나 증인을 반대 심문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증인을 호출하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이 부정 행위를 거부할 경우, 교장이나 그의 지명인이 받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제공된다.

c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그들이 이일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d 체육 지도자 및 관리자는 조사 기간동안 문제의 학생 운동 선수의 경기 참여에 제한을 부과 할 것이다.

e 조사 결론에 따라, 징계 제재의 부과하기에 앞서 교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조사의 결과와 그에 대한 제재 부과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교장이나 그의 지명인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결과에 대하여 질문 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장이나 그의 지명인은 학교 및 체육 활동부에게 적절하고 최선 이익이 된다고 생각 할 때 부모님과의 토론 없이 제재 조치를 부과 할 수 있다.

체육 제재

부과 되는 제재는 다음중 하나 이상이나 그 것에 제한되지 않았다:

1 징계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코치에게 추천.
2 고등학교 대항 참가자 카드에 규정된 보호관찰 지침을 고려해 조건에 따라 보호관찰에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기간 동안 배치.
3 고등학교 대항 참가자 카드에 명시된 이벤트 참여 금지를 고려해 특정수의 체육 행사 참여 금지.
4 남은 시즌 동안 운동팀 특권 정지.
5 학생이 참여하던 운동에서 규칙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운동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 (운동상은 시즌에 참요 하는것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시즌을 완성해야 상이 주어진다).
6 나머지 학기년뿐만 아니라 새학기 체육 대회에서 정지.

처분

교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위반 발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어떤 제재 조치를 부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이 지명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그녀는 반드시 그 처분에 대한 것을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제재 초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기 적절하게 전화, 전자우편 또는 사람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지 할 것이다. 교장이나 그의 지명인의 체육제재 부과에 관한 결정을 학군 체육 이사에게 항소 할 수 있으며 체육 이사는 체육제재 부과 결정에 대하여 제 검토 할 수 있다. 학군의 체육 이사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학이나 퇴학 기간의 기간 동안 모든 운동 참여에 정지된다.

참고 자료: 추가 정보는 체리 크릭 학군 운동 / 활동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체리 크릭 학군 # 5 고등학교 대항 참여 카드

학생에 대한 징계
(JK)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실질적인 교육과 우수한 학습효과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믿는다. 징계의 목적은 반드시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를 수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육성하고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품성을 길러 나가는 것을 돕는데 있다.

교육위원회는 주 법(法)에 따라, 학군 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주요한 징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동 교육위원회의 기본 목적을 위해 설계된 징계 방침과 절차를 도입한다. 무질서하고 난폭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학과 이수에 대한 불필요한 단절을 지양하고 학과 이수의 올바른 전도성과 안정성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모든 과정과 방침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방침은 또한 부 적절한 행동 및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받아드릴 수 없으며 징계 조치 될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방침은 학생들이 균형잡힌 징계 개입과 결과 및 학습 종사 유지를 강조해야 한다.

규율 규정의 시행에 대한 내성

모든 징계 방침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에 따라야 한다. 징계 방침과 절차에는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해석에 모순되지 않는, 온당하고 적절한 신체적 제제 혹은 그에 준하는 완력행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교사 혹은 그 밖의 학교 관계자들의 신체적 제제 혹은 그에 준하는 완력행사가 선의의 목적으로, 징계에 대한 방침과 절차조항을 준수한 것이라면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의의 목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징계에 대한 방침과 절차조항을 준수한 교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 결과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 조항은 선의의 목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징계에 대한 방침과 절차조항에 따라 행동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사소송의 경우라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확정적인 변호조항이다.

학생 징계에 대한 관리자 및 직원의 책임

학교관리부서는 학생의 징계와 통제의 절차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난폭하거나 완강한 행실을 가진 학생들을 이동(혹은 격리)시키는데 모든 학교 고용인들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징계문제를 다루고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교사나 혹은 다른 고용인들에게 그에 따른 조언과 자문을 비롯한 일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징계행위가 학교관리부서의 지원과 주의가 필요할 경우 그것을 요청한 해당자는 관리부서에 의해 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문서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관리부서는 보고자의 학생 행동에 관한 언급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해당 보고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학급 내에서 규율이 유지되는 동안의 가장 큰 책임자는 그 학급의 담임교사이거나 학급을 돕기 위해 있는 다른 지원자이며, 교사는 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청은 교사개인의 능력에 대한 관리자의 견해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징계 교정 계획

교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교실, 학교부지, 차량, 또는 학교 활동이나 행사에서 상당한 물질을 파괴하는 학생을 위한 서면 징계 교정 계획을 개발 할 수 있다. 징계 교정 계획의 목표는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의 파괴적인 행동 및 교육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는 것이다.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및 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과 함께 회의를 준비한다.

회의의 목적은 학생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고 그런 행동을 수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있다. 서면 계획은 학생의 파괴적인 행동과 교육 요구및 어떠한 필요한 단계를 거처 아이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은 좋은 행동에 대한 격려의 보상을 포함하지만 계획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이 있을 것이다. 계획은 계약 형태로 작성되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하고 날 짜를 기입한다.

학부모에게 징계 교정 계획의 사본을 제공한다.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의 징계

한 학년도에 교실, 학교부지, 차량, 또는 학교 활동이나 행사에서 상당한 물질을 세번 파괴한 학생은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으로 선언한다. 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으로 선언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으로 선언되면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리가 될 수 있다.

학생이 두번째 상당한 물질 파괴를 했을 때 교장은 교육감에게나 그의 대리인에게 그에 대한 것을 알린다.

학생과 학부모는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으로 선언 될 수 있는 각 파괴적인 행위를 서면상으로 통보 받을 것이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서면상으로나 다른식으로 통보를 받는다. 예를 들면, 구두로나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정의를 전자식으로 통보 받는다. 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으로 선언된 학생은 교육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수 있다.

행위 및 징계 규정 배포
교육감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각 학생에게 행위 및 징계 규정을 한번 제공하고 학군의 신입생에게도 한번 제공한다. 학군의 각 학교에 사본이 준비되어 있어야한다. 교육감은 각 학생이 규정에 익숙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규정의 어떤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각 학교에 공고하거나 학군이나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판에 공고 되어야 한다.

교육 위원회는 학교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의하여 행위 및 징계 규정을 계발한다.

1966 년 8 월 8 일 채택
2012 년 8 월 13 일 최신 수정
수정: 편람 채택 일자

법적 참고자료: C.R.S. 18-6-401(1)(아동학대의 정의)
C.R.S. 22-33-106(1)(f)(정학, 퇴학, 입학 거부에 대한 근거)
C.R.S. 22-32-109.1(2), (a)(행위 및 징계 규정의 채택 및 집행)
C.R.S. 22-32-109.1(2),(a),(I)(학군은 각 학생이 행동및 징계 규정에 익숙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R.S. 22-32-109.1(2)(a)(I)(c)(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의 징계는 학교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
C.R.S. 22-32-109.1(9)(안전한 학교 법률에 내성 조항)
C.R.S. 22-32-106(1)(정학, 퇴학, 입학 거부에 대한 근거)
C.R.S. 22-33-106(1)(c)(5)(습관적으로 파괴적인 학생)

기타 참고자료: JIC, 학생품행과 그에 관한 부칙
JK 부칙 (모두 학생징계에 관련)

학급으로부터 징계에 따른 퇴실
(JKBA)

교육위원회의 방침은 교사의 효과적인 교육과 학생들이 교실의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교실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본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행동규정과 건물의 교장 및/또는 담임교사가 질서를 유지하고 유익한 학습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규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행동규정 및 기타 교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퇴실 및/또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퇴실은 심한 수단으로서 임의, 우발 또는 일관성 없이 시행되어서는 않된다. 학생들의 행동은 최대한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다 건설적이며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퇴실조치를 정당화하는 모든 상활을 규정한 다는 것은 불가능 및 불필요하다. 특정의 상황에서 학생의 퇴실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은 각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모든 퇴실조치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사는 즉각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다.

1. 교육위원회가 규정한 행동규정의 위반;

2. 위험, 규정 위반 또는 훼방 행위;

3. 교사의 교육능력 또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심하게 저해하는 행위.

장애학생은 주 및 연방법과 규정에 따라 퇴실하여 대체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 있다.

퇴실조치를 취하므로 퇴실사유가 된 행위에 대하여 구류,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은 추가적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장은 학군의 일관성 있는 퇴실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한다. 부모/보호자에게는 시행절차에 따라 퇴실조치에 대하여 통보된다.

제안일자: 2000년 8월 14일
채택일자: 2000년 9월 11일
개정일자: 2012년 9월 10일

참고 법률: C.R.S., 22-32-109.1(2)(a)(I)(B) (학교안전 계획의 일부 정책)

참고문헌: JIC, (학생 행동 관련)
JK, (학생에 대한 징계 및 관련규정)

학급으로부터 징계에 따른 퇴실
(JKBA-R)

행정관 및 교사 등을 포함하는 직원은 각자의 교육, 경험 및 권한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각 학생들은 불필요 및 합당하지 않은 방해 또는 제약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학교와 수업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실 내에서의 금지된 행동이나 품행을 위반하는 학생은 수업에서 제외되어 해당절차 및 주나 연방법률에 따라 대체환경에 임시로 배치될 수 있다.

본 규정의 편의상 수업이라 함은 정규, 특수, 학습자료실 세션, 실험, 학습관, 도서관 시간, 학교의 집회 및 기타 교사가 감독 및 지도하는 모든 학습환경을 포함한다. "교사"라 함은 주정부가 인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지도 또는 감독하도록 고용된 자를 말한다.

교장실에서의 비공식적인 근신

비공식적인 근신처리는 학생이 수업중 또는 학교에 있는 동안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교사는 승인된 징계관리 절차 또는 학생을 교장실, 학과장실 또는 기타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 당분간 보내는 조치를 통하여 학생이 교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같은 날 나중에 다시 교실로 돌아가도록 승락을 받는다. 다음의 절차는 비공식적인 근신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퇴실 조치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행위에 대하여 교사는 학생에게 1시간 미만의 퇴실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학생이 행동규정을 위반하는 행동. 학생의 정학과 관련된 결정은 빌딩의 행정관이 내리며 학생의 퇴학에 대한 결정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따라서 학생이 학군의 정학 및 퇴학에 관련된 조항을 위반하여 교사가 근신조치를 내리는 경우 해당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방해, 위험 또는 무법행위. 다음의 행위는 방해, 위험 및 무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a. 때리기, 물기, 밀기, 밀치기, 찌르기, 꼬집기 또는 잡기 등과 같이 타인을 해치거나 방해 및 괴롭히기 위한 의도 또는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신체적 행위;
   b. 욕하기, 놀리기 또는 괴롭히기 등과 같이 타인을 당황시키거나 방해 또는 괴롭히는 의도 또는 가능성의 부적절한 언행;
   c. 성적 및 기타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
   d. 타인의 대화중 (교사의 수업, 학생의 대답, 방문객의 참석) 및 조용한 학습 시간 등과 같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반복적이거나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
   e. 책, 연필, 가위 등과 같이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f. 타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교사 또는 학교나 수업의 규정 위반, 수업중 퇴장 등과 같이 부적절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

g. 학교, 교사 및 기타 학생의 사물을 파괴 및 손상을 입히는 행위;

h. 시끄럽고, 혐의스럽거나 난폭한 행위.

3. 교사가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이러한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교사에 대한 공개적 반항행위로 언어, 제스쳐 및 기타 행위에 분명히 나태나는 행위;
   b. 교사에 대한 공개적 불손행위로 언어, 제스쳐 및 기타 행위에 분명히 나태나는 행위;
   c. 교실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기타 의도적인 파괴 및 저해 행위.

퇴실 절차

극도의 행위가 아니면 교사는 학생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퇴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퇴실 조치가 필요하고 기타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1. 교무실, 학장실 또는 기타 직원의 도움을 청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착하면 교사 또는 기타 직원이 학생을 적절한 장소까지 동행한다. 교장 또는 피임명자는 학생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듣는다.
2. 수업 담당자를 구한 다음 학생을 교무실 또는 학장실로 데리고 간다. 담당 교사는 교장 또는 피임명자에게 학생의 근신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학생에게 교무실 또는 학장실로 가도록 시킨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교사는 학생에게 근신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교장실로 가져가도록 하고 전화를 하여야 한다.

학생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이내에 교사는 빌딩의 교장 또는 지정인에게 간략한 문서로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교장/지정인은 교사와 함께 사건과 절차 및 근신의 사유를 점검한다.

학부모/보호자에게의 통보

담당 교사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당 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이 퇴실조치를 받았음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내용은 퇴실 해당 교실, 기간 및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통보내용은 학부모/보호자가 그와 같은 처리에 대하여 교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근신이 징계조치(정학 또는 퇴학 등)를 요구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관련법 및 규정의 요구조건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격리배치 절차

각 빌딩의 교장은 학교의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단기간 동안의 격리공간으로 지정한다.

학생이 교무실 또는 교장실에 도착하면 교장 또는 지정인은 학생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이 도착하였을 때 교장 또는 지정인이 없을 경우 학생을 지정된 단기간 격리 공간으로 보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장이나 지정인이 학생과 대화를 갖도록 한다.

빌딩의 교장 또는 지정인은 재량에 따라 학생을 다른 적절한 수업에, 프로그램 또는 교육 환경으로 보내고 이와 같은 대체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단기간 격리공간에 배치된 학생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배치되어 있는 동안 학생은 학교의 수업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해야한다. 가능하다면 학생이 출입금지된 수업에 대한 공부 또는 학생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일을 하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도 학생이 격리된 시간을 오락 또는 자유시간으로 보낼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퇴실 학생은 퇴실한 수업이 끝날때까지 단기간 격리공간에 남아있어야 한다. 학생이 수업에 복귀하기 전에 교장 및 지정인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 학생이 퇴실당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업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일정에 복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장 및

지정인은 다른 배치 선택을 할 수 있다.

행동 계획

교장/지정인 및 교사는 학생이 처음으로 퇴실되었을 때에 학생의 행동 계획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행동 계획은 JK 규정과 관련하여 방해학생들에 대한 치료 징계 계획과 유사하게 한다. 교사가 학생을 2번째로 정식 퇴실시키는 경우에는 행동 계획을 개발하여야 하여 수행해야하고 학생이 수업에서 제거되기전에 개발되고 수행되야 한다.

잔여기간의 퇴실

동일한 수업에서 3회 정식 퇴실조치를 받으면 교장/지정인의 상황 검토를 거쳐 해당학생은 남은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장은 해당학생을 적절한 교육환경에 배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일한 수업의 다른 세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장의 감독자는 학생의 배치에 대한 교장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학생이 공식적으로 수업에서 퇴실되고 학생을 다른 수업에 등록하는 것이 지나친 방해가 되는 것으로 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학점을 잃을 수도 있다.

교장의 검토

학생의 수업 퇴실은 담당교사가 본 규정 및 관련 주/연방법의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따른 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교사의 조치는 평가 정책을 포함한 본 학군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교사의 감독자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교장은 매년 수업에서 퇴실되는 학생의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때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특정의 교사에 의한 공식적인 퇴실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각별한 고려를 요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교장은 이와 같은 자료를 교사들과 최소한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승인자: 교장 Monte C. Moses 2000년 9월 11일 개정일자: 2012년 9월 10일

학생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및 기타 징계 개입) (JKD-1)

I. **일반적인 고려 사항**

학생의 정학, 퇴학 및 입학거부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주정부의 문서처리에 과련된 적법절차에 따라 학생, 부모 및 교직원에게 법적인 관련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의 부정행위를 해결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적인 징계적 개입 및 결과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장이 현재의 관련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여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권한다.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위원회 및 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 할 수 있다.

1. 학생의 나이;
2. 학생의 징계 이력;
3.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학생의 자격;
4. 학생이 저지른 위반의 심각성;
5.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위협을 제기하거나;
6. 강도가 낮은 개입이 위반을 제대로 해결할 가능성.

학군이 대체적 구제책이 적절한지, 학생을 학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학습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한 학생은 퇴학되거나 입학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학군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학생과 그 가족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I. **프리수쿨 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한 퇴학/정학**

프리수쿨 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학군은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기 전에 사용하는 모든 대체 행동 및 징계 개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프리수쿨, 킨더가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 외 정학 또는 퇴학은 다음의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학교 구내, 학교 차량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a. 학군의 승인 없이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또는
   b. C.R.S. § 18-18-102(5)에 정의된 약물 또는 통제 물질의 사용, 소지 또는 판매를 포함 또는
   c.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학생을 학교 건물에서 빼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전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C.R.S § 22-33-106(1.2) 및 위 섹션 I에 명시된 각 요소는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기 전에 각 사례에 대해 고려됩니다.

III. 모든 학생을 위한 기타 징계적 개입

1. 학교 밖 정학 또는 퇴학 대신 해당 법률에 따라 교장 또는 교장의 지명자는 학생의 부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의 사용은 개별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개입은 교장 또는 교장의 지명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구금, 학교 내 정학, 상담, 회복적 개입 또는 학교 밖 정학 또는 퇴학을 수반하지 않는 학생의 부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기타 접근 방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정학에 대한 대안으로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은 학생의 교사와 학부모/보호자의 동의하에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지정된 시간동안 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학부모/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학생은 정학을 받을 것이다.

   a. 만약 퇴학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또는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학생과 같이 학교에 동반하더라도 학생의 행동이 파괴적이라고 생각하여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정의를 내리면 이러한 정학 대안은 사용할 수 없다.

IV. **권한의 위임**

1.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교육 위원회는 교장 또는 교장의 지명자에게 C.R.S. § 22-33-106.1(2)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유치원, 유치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을 최대 3(3) 학교일 동안 정학시킬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교장 또는 교장의 지명자가 안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 정학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C.R.S. § 22-33-105(2)(c)에 따라 학생을 퇴학시킬 것을 권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3학년 이상 학생의 경우: 이사회는 교장 또는 교장이 지명한 자에게 C.R.S. §22 33 106(1)(a), (1)(b), (1)(c) 또는 1(e)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최대 5(5) 학교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C.R.S. §22-33-106(1)(d)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최대 10(10) 학교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C.R.S. §22-33-105(2)(c)에 따라 학생을 퇴학시킬 것을 권고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3. 교육 위원회는 C.R.S. § 22 33 105 및 C.R.S. § 22-33-106.1(3)에 따라 학생을 추가로 10(10) 학교일 동안

정학시키고, 필요한 경우 C.R.S. § 22-33-105(b)의 조항에 따라 추가로 10(10)일 동안 정학시킬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정학의 총 기간은 (25)학교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른 학생과 학교 환경의 복지와 안전에 해로운 징계 및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은 새로 얻은 정보나 증거가 발견되면 정학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재개는 절차적 적정 절차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5. 교육위원회는 C.R.S. § 22 33 105에 따라 교육감에게 C.R.S. § 22-33-101 - 22-33-110 및 교육위원회 정책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 학구 내 학교에 입학하거나 계속 다닐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학생에 대한 입학을 거부하거나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V. 불법 성행위 또는 폭력범의 퇴학

12-18세 사이의 학생이 18-3-411 C.R.S.에 정의된 불법 성행위에 해당되는 범법 혐의로 청소년 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청원이 접수되거나 16-11-309 C.R.S.에 정의된 폭력행위가 성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 또는 범법사항의 자세한 내용과 주정부 법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해당 학생이 등록된 학교에 즉시 보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교육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피지명자가 해당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의 안전, 복지 및 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경우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선례가 되거나 학생, 교사 및 기타 학교직원에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데 이용된다. 위원회는 학생의 품행규정 및 관계 정책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도 있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교육 위원회는 법원의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학군은 특정의 주정부 법에 따라 대체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VI. 연례 보고

교육 위원회는 매년 주교육 위원회에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군의 학교에서 퇴학된 학생의 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퇴학된 학생들은 각 학교 및 학군의 자퇴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에서 퇴학 및 위원회 입학 거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VII.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

퇴학조치의 경우 학군의 담당자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퇴학기간동안에 학교 구역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퇴학기간 동안에 가능한 학생의 대체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가 학생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선택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학군의 담당 직원에게 학생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정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이 남은 학년 기간 동안의 퇴학을 받고 학군을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군은 다음해의 학교가 시작될 때까지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를 최소한 60일에 한 번씩 연락하여 해당 자녀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최초 채택: 2004년 11월 8일
최종 개정: 2012년 8월 13일
현재 개정: 2023년 12월 11일

법률 참고문헌: C.R.S. § 16-22-102(9) (불법적 성적 행위)
C.R.S. § 18-1.3-406 (폭력 범죄)
C.R.S. § 22-32-109.1(2) (안전한 학교 계획)
C.R.S. § 22-32-109.1(2)(a) (행동 및 징계 규정 - 정책 요구 사항)
C.R.S. § 22-32-109.1(3)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 기관과의 협정)
C.R.S. § 22-32-144(학교에서의 회복적 정의 관행)
C.R.S. § 22-33-105(정학, 퇴학 및 입학 거부)

C.R.S. § 22-33-106(정학, 퇴학 및 입학 거부의 근거)
C.R.S. § 22-33-106.1(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한 정학 및 퇴학)
C.R.S. § 22-33-106.5(법원은 학생이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해 학군에 통지해야 함)
C.R.S. § 24-10-106.3(클레어 데이비스 학교 안전법)

학생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JKD-1-R)

A. 10일 및 그 이하의 정학처분 절차

성문화된 정책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의 교장에게 5일 미만의 정학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교육장에게는 추가적인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첨부된 정책서 참조)

학교의 관계자는 학생의 정학이 포함되는 모든 징계조치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관계자라 함은 교장 또는 피임명인, 교육장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의 교육위원회를 의미한다.

1. **통보**. 교장 또는 해당 피임명자는 학생에게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통보내용**. 통보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학생의 위반행위 내용 설명
   b. 위반행위의 근거 설명. 증인을 가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의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생에 대한 예정조치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3. **비공식적인 히어링**

   a. 해당 학생은 교실에서의 질서위반이나 징계 대상의 행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b. 학생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c. 대조적인 사실이 대두되는 경우 학교 관계자는 징계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하도록 한다.

4. **시간**. 학생에 대한 통보 및 비공식적인 히어링은 학생을 학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보가 제공된 후 히어링을 위하여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다.

5.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학생의 존재가 사람이나 학교재물 또는 학습분위기를 혼동시킬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전에 통보나 비공식적인 히어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비공식 청문회는 실행 가능한 학생의 제거 후 즉시 따른다.

6. **정학조치에 따른 통보**. 학생이 정학을 받는 경우 정학 관계자는 즉시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정학조치의 사실과 정학의 근거 및 기간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내용은 부모나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이 정학 관계자와 함께 정학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7. **등교금지**. 정학을 받은 학생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과 정학 관계자가 해당 학생을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신변을 인도하는 방법이 결정되는 즉시 학교 영내를 떠나야 한다.

8. **등교의 재허용**.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과의 회의를 하기 전 또는 정학 관계자,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의 견해에 따라 정학관계자의 정학내용을 검토하기로 동의하기 전에는 어떠한 학생도 등교 재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막기위한 구제안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정학관계자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에 대한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이 예정된 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정학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등교를 재허용할 수 있다.

정학관계자는 다음을 준수한다.

a. 정학 기간 동안에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후견인을 만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b.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후견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로 정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c. 정학기간 동안에 해당 학생이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항의 의도는 정학기간이 끝난 후 학생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보충학습에 대한 학점의 정도에 대해서는 학군이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완료하면 일부 또는 전체 학점을 받는다.

B. 퇴학 또는 입학 거부 절차

학교 구역의 교육감이 특정 학생 또는 예비 입학생에 대한 입학거부권이나 퇴학조치를시행하려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통보**.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날에 앞서 적어도 5 일에서 10 일전에, 교육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학군 행정관리 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미국 우편행정상 학교가 파악한 학생이나 학부모 및 보호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된다.

2. **비상 통보**. 통보기간 단축이 요구되는 비상통보 상황으로 정의될때, 학생이나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심사(히어링) 날짜 이전에 통지서가 전달된다는 보장의 전제하에 통보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3. **통고내용**.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a. 입학거부 및 퇴학 조치를 유발시킨 기본 사유.
   b. 통지일로부터 5 일에서 10 일 이내로 학생이나 학부모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학 및 입학거부 사항에 대한 심의(히어링) 개최 내용.
   c. 심의가 요청될 경우의 심의 날짜, 시각, 장소.
   d. 학생 스스로 심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불리한 내용을 경청하고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부모나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동반하거나 혹은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내용.
   e. 심의에 불참 하는 것은 이같은 입학거부, 퇴학조치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4. **리뷰 실시**. 심의(히어링)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퇴학/입학거부 히어링은 학군의 히어링 담당자에 의하여 진행된다. 히어링은 학교 담당자, 해당 학생과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 또는 해당 학생과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이 참석을 요청하는 변호사 등의 참석으로 제한된다. 위반사항에 관련된 정보는 해당 학교측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선서를 통해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학생은 입학거부 및 퇴학조치에 관한 심사에 대한 개인 소견과 관련 정보를 진술해야 한다. 증거규정의 기술적인 원칙은 적용하지 않으며 심의 담당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와 같은 정보 및 증거에 대하여 적절한 비중을 두고 고려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학생의 자필 진술서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 될수 있다. 학생이나 학생의 대리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진행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보관하여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문서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기록에 대한 비용은 요청 당사자가 부담한다.

   심의 담당자는 구체적인 사실적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은 판단 내용과 퇴학에 관한 권고안을 교육감에게 제시한다. 교육감은 심의 담당자의 사실적인 판단과 건의안을 검토하고 히어링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결정을 내린다.

5. **이의 제기**. 해당 학생은 교육감의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를 교육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고 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이의제기가 적법하게 신청된 경우 심의 위원회는 퇴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다. 이 기록은 통지서 및 그외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서류들, 증언사본이나 심의 증거물들, 조사 결과와 심리위원회의 권고, 심리위원의 재결 또는 퇴학에 관한 그외 서류들을 포함한다. 학생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학군의 대리인과 학생의

대리인은 교육위원회에 각자의 입장을 간단히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히어링 당시 합리적으로 발견될 수 없었던 증거를 제외한 기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교육위원회의 멤버들은 기록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퇴학이나 입학 거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서 학생과 부모/보호자에게 법적인 검토의 권리를 알려준다.

6. **부모에게 정보제공**. 학생의 퇴학조치 후 학군의 담당자는 학생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퇴학기간동안에 학군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를 포함하여 퇴학기간 동안에 가능한 학생의 대체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가 학생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선택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학군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학생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정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이 남은 학년 기간 동안의 퇴학을 받고 학군을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 구역은 다음 해의 학교가 시작될 때까지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를 최소한 60일에 한 번씩 연락하여 해당 자녀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단, 학생이 타 학군에 등록, 독학결정 및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하였거나 휴먼서비스 부서에 연계되거나 청소년 또는 성인 구치소 조치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학군관계자는 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등교 허용**. 다음의 경우 주정부의 법에 따라 퇴학을 당한 학생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이 등록 또는 근무하고 있는 동일학교에 등록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다.

   a. 퇴학당한 학생이 퇴학 사유가 된 위반행위로 인하여 유죄확정, 청소년 범죄, 선고유예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형을 받은 경우.

   b. 퇴학당한 학생의 위반으로 인하여 분명한 희생자가 있는 경우.

   c. 퇴학사유의 위반행위가 대물에 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d. 학군이 피해자의 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본 조항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은 퇴학의 사유가 대물 위반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폭력 범죄나 불법 성적 품행에 대한 퇴학절차

주정부의 법에 의거 학생이 폭력행위나 불법 성적행위로 청소년 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입건된 내용에 대하여 학군이 통보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교육위원회 또는 피임명인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퇴학 조치 히어링의 진행여부에 대한 1차적인 결정을 내린다.

   a.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학교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저해요소가 되는 품행을 보이거나

   b. 해당학생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 학습환경을 어지럽히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선례를 제공하고 학생,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에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할 경우

2.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학군이 제공하지 말 것과 퇴학의 사유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학군은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 시킬수도 있다.

3. 대안의 방법으로 정학이나 퇴학조치는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정학이나 퇴학조치가 연기되는 경우 학생은 연기조치 기간동안 등교할 수 없다. 법의 결과에 따르기 위한 연기 기간동안에 학생에게 주정부의 법이 인가한 온라인 프로그램 가정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적절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 학생이 대체교육 프로그램에 보내는 시간은 정학이나 퇴학기간의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학생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로 확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피임명자는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퇴학조치를 진행한다.

5.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는 교육위원회 또는 피임명자가 본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한 비밀로 유지한다.

2004년 11월 8일 학교장 Monte C. Moses 승인
개정 일자: 2012년 8월13

정학, 퇴학 혹은 입학 거부에 대한 근거
(JKD-1-E)

콜로라도 개정법22-33-106 (C.R.S.) (1) (a-g) 및 3 (c, e, and f) 및 22-33-106.1 과 22-12-105(3)에 의거 다음의 사항은 정학, 퇴학 및 공립학교의 입학 거부의 근거가 된다.

1.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의적 반항 또는 공개적이고 집요한 저항. (C.R.S. § 22 33 106(1)(a))
2. 학교 기물의 고의 파기 및 손상. (C.R.S. § 22 33 106(1)(b))
3. 학교 건물 안팎에서 학생및 교직원에게 신체적인 위해의 협박을 포함한 안전 및 복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보이는 학생(C.R.S. § 22 33 106(1)(c)).
4. 타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군 기능의 반복적인 방해. (C.R.S. § 22 33 106(1)(e))
5. 학군의 직원을 주정부 또는 학군의 사법기관에 허위로 형사고발하는 행위(C.R.S. § 22-12-105 (3))
6. 이전 12개월 이내에 여타 학군의 학교에서 퇴학 당한 경우. (C.R.S. § 22 33 106(3)(c))
7. 이전 12개월 이내에 타 학군에서 타 학생 및 직원의 안전 및 복지에 해를 끼친 행위. (C.R.S. § 22 33 106(3)(f))
8. 학교 운동장, 통학차량, 및 학교 후원 활동에서 C.R.S § 18-18-102 (5)에 정의된 통제된 물질 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C.R.S § 22 33 106(1)(d)(II))
9. 학교 운동장, 통학차량, 및 학교 후원 활동에서 성인이 이 행위에 해당될 경우 C.R.S. § 18-4-301 등 에 의거 강도 행위로 성립됨. 또는 § C.R.S. 18-3-202에 따라 성인의 경우 3급 폭행으로 간주되는 위법 사항 외에 C.R.S. § 18-3-204 에 따른 폭력행위. (C.R.S. § 22 33 106(1)(d)(III))
10. 학교 또는 학군의 허가 없이, 학교 운동장, 통학 차량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참고: 연방법에 따라 학교에 총기를 가져 오거나 소지한 학생은 최소한 1년 동안 퇴학이 결정된다. 교육감이 경우에 따라 연방 정부의 요구에 의한 퇴학 기간을 수정 할 수 있다. 이런한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C.R.S. § 22 33 106(1)(d)(I))

"위험한 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C.R.S. § 18-1-901(3)(h) 에 정의된 총탄 장전 여부와 관계 없는 총기.
b. 스프링 기능 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발사물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동 여부와 상관없는 펠릿 또는 비비 건이나 기타 장비, 또는 플레어, 블랭크 및/또는 연기를 방출하는 플레어 건;
c. 날의 길이가 3인치 이상으로 날이 고정된 칼, 용수철로 작동하는 칼 또는 날의 길이가 3.5인치 이상 의 포켓 나이프. 칼날의 길이는 손잡이에 쇠 부분이 닿는 곳부터 측정한다.
d. 생명체의 유무과 상관 없이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의사로 이용된 모든 물건, 장비, 장치, 물질, 요소 등, 새총, 쌍절곤, 스프링 건, 표창, 몽둥이, 황동 너클 또는 모든 종류의 인조 너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1. 학교내에서나 학교외에서 진짜 총기로 오해 받을수 있는 가짜 총기를 들고 있거나, 보이거나, 사용한다고 위협하는 것. (C.R.S. § 22 33 106(1)(f))
12. C.R.S.§ 25-4-901 조항 준수 위반 (예방주사 요구조건). 이 조항의 준수 위반으로 인한 정학, 퇴학 또는 입학의

거부는 징계 조치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의 면역 기록에 적절한 설명과 더불어 기록될 수 있다. (C.R.S. § 22 33 106(3)(e))

13. 상습적인 방해학생의 대한 선언

a. 본 문단의 목적상 "상습적 방해학생"은 교실, 학교 영역, 학교 차량 또는 학교 활동이나 행사에서 고의로 해당 학년도에 3번 이상 심각한 방해을 일으킨 행동을 의미한다.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누구든지 상습적인 방해학생으로 판정될 수 있다.

b. 해당 학생,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적 후견인에게 상습적 방해학생의 기준에 적용되는 각각의 정학상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문서 및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가정,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직장으로 "상습적 방해학생"의 정의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C.R.S. § 22 33 106 (2)에 따르면 해당 제목(특수 아동 교육법, C.R.S. § 22-20-101 이하 참조)의 20조에 따른 교육구의 책임 및 해당 연방법(정책 JKD-2, 장애학생징계법 참조)에 따라, 다음은 공립학교에서 퇴학 또는 입학 거부 또는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의 근거가 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가용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어린이로 다른 학생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경우.

최초 채택일: 2009년 11월 9일
최종 개정일: 2012년 8월 13일

법률참고: C.R.S § 18-1-901(3)(e) 와 (h) ("치명적인 무기" 및 "화기"에 대한 주법 정의
C.R.S § 18-3-202 이하 참조.(폭행에 대한 콜로라도 형법 조항)
C.R.S § 18-4-301 이하 참조. (강도에 관한 콜로라도 형법 조항)
C.R.S § 22-12-105(3) (허위 보고)
C.R.S. § 22-20-101 이하 참조. (특수아동교육법)
C.R.S. § 22-33-102(4)("위험한 무기"에 대한 주법 정의)
C.R.S § 22-33-106(1)(a-g) (정학, 제적, 불합격 사유)
C.R.S § 22-33-106(2) (정학, 제적, 입학불가 사유, 아동특수교육법에 의거)
C.R.S § 22-33-106(3)(c,d, and f) (입학불가 사유)
C.R.S. § 22-33-106.1 (정학, 퇴학,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C.R.S § 25-3-901(입학 전 예방접종)

장애 학생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JKD-2)

장애 학생일지라도 학군의 징계 절차에서 면제되거나 장애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해 활동 및/또는 자신 및 타인들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에 가담하는 장애 학생들은 IEP 및 행동 중재 계획에 따라 징계한다.

IEP 팀이 해당 학생의 IEP 일부로서 방해 및 수용될 수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정책 또는 규정에는 없다. 이러한 계획은 IEP 절차에 따라 확립된 모든 보호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u>정학, 퇴학 및 서비스의 공급</u>
장애 학생은 학생의 품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어진 학년도에 10일까지 정학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10일의 정학은 반드시 연속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학 기간에 해당 학생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배치의 징계 변화는 학생이 연속 10일 이상 정학을 받게 될때 발생하거나 준거법에 따라 제거의 패턴을 구성할때이다.

정학의 열한번째 날 징계로 배치 변경이 없을때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IEP 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교사중 적어도 한명과 정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한다.

정학이나 퇴학으로 인한 징계로 배치 변경이 있을 때 학생의 IEP 팀에 의해 다른 환경에서 일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학생의 IEP 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퇴학 또는 다른 징계의 배치 변경이 있기전 학생의 부모에게 징계를 취할 결정과 안전 보호 절차를 알려야한다. 이에 대한 통보는 결정을 내린 그날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의 발현

징계로 배치 변경을 결정한 후 10일 이내 학교 관리자, 학부모 및 IEP 팀이 교사는 학생의 파일에 이와 관련된 학생의 IEP 교사 관찰 및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학생의 행도이 장애와 관련됐는지 확인한다.

팀은 결정한다: (1) 해당 학생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장애로 인해 발생했나의 여부 및 (2) 해당 학생의 행동이 학교측이 IEP 를 이행하는데 실패하여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본다. 이 두 질문중 하나에 "예" 라고 답하였다면 학생의 행동이 장애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징계조치 및/또는 행동의 발현에 대한 대체 배치

만약 팀이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결정하면 퇴학 절차 또는 배치 변경의 징계를 중단한다. 그러나 학생은 IEP 팀의 결정 아래 또는 법에의해 교육상의 이유로 45학교일 동안 다른 환경으로 배치 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결정되면 학생의 IEP 팀은: (1) FBA를 미리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FBA (학생의 기능 행동 평가)를 실시한다. (2) BIP (학생 행동 개입 계획)을 이행한다. BIP 가 이미 개발되었을 경우 IEP 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학생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45 학교일 동안 대체 배치

교직원은 발현의 결정에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45 학교일 동안 임시 대체 배치를 하되 그 이상은 않된다 만약:

1. 학생이 학교나 학교 행사장에 무기를 가지고 왔을때;
2. 학생이 학교나 학교 행사장에 무기를 소유했을때;
3. 학생이 학교나 학교 행사장에서 불법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유했을 때;
4. 학생이 학교나 학교 행사장에서 통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을 유혹했을 때;
5. 학생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사해을 입혔을 때;
6. 해당 관할 청문회 임원이나 법원의 지시가 있을 때.

위의 행동들은 학생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행동일 지라도 다른 환경에 배치되는 것이 허영된다. 학생의 IEP 팀은 다른 환경에 배치된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것을 결정한다.

장애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

징계 조치를 받을만한 행동을 학생이 행하기 전에 학군이 학생의 장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장애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라도 장애 학생헤게 적용되는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게된다.

다음의 경우에 학군은 학생의 장애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게된다:

1. 학생의 부모가 학군의 감독, 학교 관리인, 또는 학생의 교사에게 학생이특수 교육및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글로 표현하여 알렸다.

2. 학생의 부모가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또는
3. 학생의 교사 또는 기타 학군 직원이 학군의 특수교육 감독에게 직접 학생의 행동 패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우려를 표현했을때이다.

평가에 대한 요청이 징계 조치 기간동안 이루어지길 원하면 평가를 신속히 처리한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은 정학과 퇴학을 포함한 학군의 교육배치 결정을 유지한다.

학부모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와 또는 학생이 평가를 받은후 장애가 없는 학생이라고 결정됐을 때와 학생이 특수교육및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지만 부모가 서비스를 거부했을 때 학군은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일: 2011년 5월 9일
채택일: 2005년 11월 14일
법률참고: C.R.S. 22-33-106 (1) (c)
C.R.S. 22-20-101 et seq. (탁월한 자녀 교육법)
20 U.S.C. 색션 1401 et seq. (2004년 장애인 개별 교육 개선 법)
34 C.F.R. 300.530-300.537 (IDEA 규제)
관련참고: JIC, 학생 행동 및 하위 코드
JK, 학생 규율 및 하위 코드
JRC, 학생 기록 / 학생에 대한 정보 공개

퇴학 학생에 대한 교육 대안
JKD-4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군에서 퇴학한 학생에게 학군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서비스는 퇴학된 학생이 퇴학전 등록된 학교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또는 성공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룰수 있거나 비 공립학교 또는 비 학군 학교에 등록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교육 서비스는 주법에 승인된 수학, 과학, 사회학, 독해력 및 작문력 학문 분야를 제공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투터링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부모/보호자는 주 정부 기관 및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학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 서비스는 주법에 따라 체결된 학군 또는 주 정부 기관 및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직접 제공 될 수 있다. 서비스는 학군에서 제공 될 필요는 없다. 학군은 학생에게 제공된 교육 서비스에서 졸업에 해당되는 학점을 결정한다.
학군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학생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두번째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 되어야한다.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학군의 행위 및 규율 규정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연방 정부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 외에 교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정책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을 받은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학생이나 직원을 위협하거나 위협을 포함한 행위를 행사하여 퇴학된 학생들은 학군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행위 또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 퇴학된 학생들은 학군의 등록 학생수에 포함되며 10월 학생수 계수 전에 퇴학된 학생들도 등록 학생수에 포함된다. 학생이 남은 학기 기간 동안 퇴학을 당했을 경우, 그리고 학군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으로을 제공 받지 않으면 학생이 학군에 재등록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군은 퇴학 당한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합법적 보호자에게 60일에 한번씩 연락하여 학생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만 학생이 다른 학군이나 독립 교구 학교에 등록 되었거나, 인간 서비스 부서에 연결되었거나 또는 소년 사법 시스템을 통해 선고를 받았을 경우 학군은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합법적 보호자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

제안일: 2000년 10월 10일
채택일: 2012년 8월 13일 수정
법률 참고: C.R.S. 22-33-201.5 (교육 서비스의 정의)
C.R.S. 22-33-203 (퇴학 학생을 위한 교육 대안)
C.R.S. 22-33-204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C.R.S. 22-33-205 (퇴학 학생들 부여 프로그램)

관련 참고: JIC, 학생 행동및 하위 코드
JK, 학생 규율 및 하위 코드

교내 정학
(JKG)

방해적인 행동양상의 학생은 정규 교실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을 받을 경우 학생들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내 정학의 개념을 인정한다.
교내 정학의 목적은 근신이나 교외 정학보다 더욱 효과적인 징계의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내 정학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은 학교의 과제물을 미룰 수 없게된다. 그러나 교외 정학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교내 정학 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음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들에게 특정의 교실을 지정하여 항상 적절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교내정학 담장 교사는 각 학생이 정규 수업 교사의 교재와 과제물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확인한다.
2. 교장은 교내정학을 받은 학생의 부 모에게 그 상황을 전화로 알리고 곧 문서통보 조치를 취한다. 교내정학 처분의 이유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정규 수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와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3. 교내정학 기간 중에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학기간 중에 완성한 학업에 대해서는 성적을 인정하도록 한다.

채택: 편람 채택 일자

학생 건강 서비스 및 요구 사항
(JLCA)

학교 건강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기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노력과 지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학교 건강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생에게 좋은 건강 습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의학적, 심리적, 신체적 필요에 대해 적절한 의료 제공자에게 식별 및 추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 기록
예방 접종의 공식 증명서를 포함한 건강 기록은 학교에서 유지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한 환경에 보관해야한다.

학생의 건강 기록 파일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거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육 환경을 유지하며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교육에 사용하는 교직원만 접근 할 수 있다. HIV/AIDS 학생의 해당 의료 정보는 정책 JLCCA 및 JLCCA-R HIV/AIDS 학생에 따라 취급 및 유지된다.

법률 및 학군 정책JRC, JRC-R 및 JRCA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간호 직원은 학생의 의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 정보를 가 발생한 시간 및 특정 기록 접근 권한이 부여된 대상을 보여주는 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연간 검사 프로그램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7학년 및 9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또는 검사를 위해 의뢰된 연령 학생의 시력 및 청력은 학교 간호사, 교사, 교장 또는 기타 자격을 가추고 학군에서 승인한 사람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년도 동안 검사해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부모나 보호자가 종교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반대하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염병

전염병,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학교 간호사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전염병에 걸린 학생의 이름을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장은 추가 적절한 조치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지역 보건 서비스 사무실에 연락해야 한다.

학생에게 의약품 투여

약은 공인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해당 약을 제공하는 작업을 위임한 교직원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학교 피지명인이 학교에서 처방 또는 비처방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1. 약은 원래의 제대로 라벨이 붙은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한다. 처방약인 경우 학생의 이름, 약의 이름, 복용량, 투여 시간 및 빈도수,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또는 처방 면허를 받은 의료 종사자의 이름과 현재 날짜가 용기에 인쇄되어야 한다.
2. 학교는 콜로라도 법에 따라 처방 권한이 있고 면허가 있는 의료 종사자로부터 학생에게 약물 투여에 대한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학생의 부모/보호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모/보호자가 그러한 요청을 한 경우, 학생의 약물의 부작용 또는 기타 의학적 결과와 관련된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제도 제시해야 한다.
4. 학부모는 처방 면허가 있는 의료 종사자가 학군의 지정된 간호 직원과 약물 투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5.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에게 투여할 모든 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학생의 신체검사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리고 4, 7, 10학년이 되기 전에 자녀의 신체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치과 검진도 권장한다.

교사는 학생의 일반적인 복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교장 또는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들은 체육 활동과 체육 활동과 관련된 교과 과정 요구 사항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교과 과정 요구 사항에서 그러한 참여가 건강에 해롭다는 면허를 가진 의료 종사자의 진술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학부모의 동의

위에 언급된 모든 검사는 학교의 후원 하에 학교 보건의료인이 실시하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신, 성병,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학생을 공중 보건 또는 기타 의사에게 의뢰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학군은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권장한다.

법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부모/보호자 및 적격 학생(18세 학생)은 통지를 받게 되며 학생이 비응급 침습적 신체 검사 또는 정기 검사(예: 정기적인 청력, 시력 및 치과 검진) 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즉:

1. 일반적으로 출석 조건으로 요구됨;
2. 학교에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사전에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3.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음.

채택일: 2003년 10월 13일
최종 수정일: 2018년 6월 11일
법률 참조: C.R.S. § 25-4-409 (미성년자의 성병 치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C.R.S. § 25-1.5-109 (CDPHE, 학교에서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표준 양식 유지)
C.R.S. § 24-10-101 (콜로라도 주 정부 면책법)
C.R.S. § 22-32-139 (학생들의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관리에 대한 요구 정책)
C.R.S. § 13-22-102, 103 (미성년자는 치료에 동의할 수 있다)
1 CCR 301-68 (천식, 음식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에 관한 규칙)
C.R.S. § 12-38-132 (간호 업무 위임)
C.R.S. §22-1-119 (부모의 서면 지침에 따라 배포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없음)
C.R.S. §22-1-119.5 (콜로라도 학교 어린이 천식,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건강 관리법)
C.R.S. §22-32-109 (i)(ee) (직원이 학생에게 특정 약물을 권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부모의 허락 없이 행동 테스트를 주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의무)

C.R.S. §22-1-116 (시력 및 청력 검사)
C.R.S. §22-2-135 (콜로라도 학교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관리법)
C.R.S. §22-33-105 (정학, 퇴학, 입학 거부)
C.R.S. §22-33-106 (2) (정학, 퇴학, 입학 거부 사유)
C.R.S. § 25-4-901 (입학 예방 접종)
C.R.S. §25-6-102 (피임 정보의 보급)
20 U.S.C. §7906 (학교에서 피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Title I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CCR 1010-6.13 (학교의 의료 서비스 요구 사항)
상호 참조.: IMBB -필수 교육 면제 JF - 입학 및 입학 거부
JLCD -응급 처치 및 응급 의료 JLCCA-R - HIV/AIDS 학생
JLCCA - HIV/AIDS에 걸린 학생
JLCC -전염병
JLCB -학생 예방접종
JLCDB -학군내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관리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JLCB)

일반적으로 학생은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이 지역의 학교에 다니거나 계속 다닐 수 없다. 학생이 법률에 따라 건강, 종교, 개인적 또는 기타 이유로 유효한 면제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다.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유효한 면제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그와 같은 증서를 학교에 제출할 때까지 정학 및/또는 퇴학조치 된다.

예방 접종이 필요한 전염병으로 인한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 면제 또는 예외가예외가 허용될 수 없다. 주 및 지방 보건부의 권장 사항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제외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최고 보건 책임자 또는 지명자에게 등록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표준 예방 접종에 대한 문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및 권장 예방 접종 목록과 각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연령, 이전 학년도에 등록된 학생 인구에 대한 홍역, 이하선염 및 풍진 백신에 대한 학구의 특정 예방 접종 및 면제율과 예방 접종 아동 표준과 비교한 학구의 특정 예방 접종 및 면제율, 학교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지만 학구가 학구의 특정 예방 접종율을 통제하거나 예방 접종 아동 표준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학구 웹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제공되거나 학교 간호사에게 인쇄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군에서 부모와 보호자에게 배포하는 모든 정보는 주법에 따라 예방 접종 요구 사항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준다.

최초 채택: 1996년 8월 12일
현재 개정: 2023년 11월 13일

참고 법률: C.R.S. § 22-32-140(표준화된 예방접종 정보의 연간 배포 요구)
C.R.S. 22 33 106 (정학, 퇴학 및 입학 거부의 근거)
C.R.S. 25 4 901 이하 참조. (입학을 위한 예방접종)
C.R.S. § 25-4-903(예방접종 면제)
6 CCR 1009-2

관련 참고자료: JKD-1,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JRC, 학생의 기록

학생 예방 접종
(JLCB-R)

1. 일반적으로, 학생이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면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구 내의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다음의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면허가 있는 의사, 자격 있는 의사 보조사, 또는 고급 실무 간호사가 작성한 의료 면제 증명서로, 학생의 신체 상태가 예방 접종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기타 다른 의학적 이유로 예방 접종이 금기되는 경우.

   b. 부모 또는 보호자, 혹은 독립한 학생이 서명한 비의료적 면제 증명서로, 학생이 주 법에서 요구하는 일부 또는 모든 예방 접종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경우.

   c. 부모/보호자 또는 독립한 학생이 서명한 비의료적 면제 증명서로, 학생이 주에서 요구하는 일부 또는 모든 예방 접종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경우.

   d. 주 법령에 따라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 기준을 완료한 증명서.

   e. 학군은 요청 시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요구하는 콜로라도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공한다. 각 학교의 간호사 및/또는 학군의 학생 건강 사무소는 요구된 정보가 해당 양식에 포함되도록 책임을 진다.

   예방 접종이 요구되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예방 접종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물 관리인 및/또는 학교 간호사가 부모, 보호자, 또는 독립 학생에게 직접 알린다. 이러한 통지는 전화,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예방 접종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건물 교장이 최대 5일 동안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정학 통보는 주 또는 지역 보건 당국에 발송된다.

   부모, 보호자 또는 독립 학생은 다음 사항을 통보받게 다:

   a. 주 법에 따라 최신 예방 접종이 요구된다는 점.

   b. 통보 후 14일 이내에 부모 또는 보호자, 혹은 독립 학생이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i. 완성된 의료 면제 증명서;
      ii. 완성된 비의료적 면제 증명서;
      iii.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 모듈의 완료 증명서; 또는
      iv. 다음 예방 접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모든 필요한 예방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서.

   c . 요구된 서류가 통보 후 14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학생이 서류 제출을 시작했으나 계획을 계속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제외되거나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4. 정학 기간 동안 예방 접종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퇴학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5. 이 정책에 따른 모든 제외,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은 예방 접종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6. 모든 정학 또는 퇴학 기록은 학생의 전자 건강 기록에 적절한 설명과 함께 포함된다.

7. 예방 접종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된 학생은 중도 탈락률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에는 포함된다.

8.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들

학군이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 경우, 학군은 학생의 예방 접종 기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생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을 등록한 후, 학군은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예방 접종 증명서나 예방 접종 실행에 대한 서면 허가서를 학생 등록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 학군이 학생을 제외 또는 정학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초래 2008년 8월 11일, Monte C. Moses 교육감 승인
현재 개정: 2023년 11월 13일

법률 참고: C.R.S. § 22-32-138(집 밖 배치 학생)
C.R.S. § 25-4-902(등교 전 예방 접종)
C.R.S. § 25-4-903(예방 접종 면제)
C.R.S. § 25-4-906(예방 접종 양식 증명서)

약물 투여 응급, 및 긴급 치료
(JLCD)

I. 약물 투여

투약은 공인 간호사에게 훈련을 받고 공인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위임한 교직원만 투약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이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 의해 투여될 때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약품은 제조업체 또는 약국에서 제공한 원래 제대로된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처방약인 경우, 학생의 이름, 약품의 이름, 복용량, 투여 경로, 투여 시간, 면허를 받은 의료 제공자의 이름, 그리고 현재 날짜가 용기 및/또는 약국/제조업체 라벨에 인쇄되어야 한다.

2. 학교는 콜로라도 법에 따라 처방 권한을 학생의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학생이 18세이거나 독립하지 않은 한, 학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로부터 약물 투여에 대한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18세이거나 독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투여할 모든 약물을 학교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II. 학생들에게 응급 처치, 응급 의료 및 개입의 시행

응급 치료를 제외한 부상의 치료는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응급 치료란 사고 또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임자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도움이다. 교육구는 각 학교 건물에 최소한 1명의 응급처치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응급처치 물품은 각 학교에 비치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학생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이고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직원은 911에 전화하여 응급 지원을 받을 것이다. 심폐소생술/AED 및 응급 처치 훈련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경우 응급 처치자가 도착할 때까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직원은 의료 응급 상황과 학생의 현재 위치에 대해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알리려고 시도한다.

응급 대응자가 도착하면 그가 학생에 대한 개입 및 치료 결정을 한다.

긴급 사태 또는 사고 현장에서 선의로 보상을 받지 않고 응급 치료나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선의의 행동이나

부작위로 인한 민사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주법은 또한 운동 경기 중에 부상 당한 사람에게 선의로 보상을 받지 않고 긴급 도움을 제공한 의료 제공자의 민사 책임을 면제한다.

아프거나 다친 초등학생은 혼자 집에 보내서는 안 되며, 질병이 사소하다고 평가되고 학부모/보호자가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 의사 소통을 통해 동의하지 않는 한 중등 학생도 혼자 집에 보내서는 안된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교육구 차량에 있지 않거나 교육구에서 후원하지 않는 행사 중에 입은 부상의 치료에 대하여 교직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III. 응급 상황에서 스톡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사용

학군은 학군내 또는 학군 후원 행사 중발생하는 비상 아나필락시스 상황 사용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가춰놔야 한다. 교직원에 의해 학생에게 가춰논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사용할 때는 주법 및 교육 위원회 규칙에 따라야 사용해야 한다.

학군의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제공은 각학부형이 제공한 학생의 복용약을 대처하여 학생의 천식, 알레르기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IV. 응급 상황에서 아편 길항제 사용

주정부의 자금과 공급품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역은 아편 관련 약물 과다 복용 사건을 잠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아편 길항제의 재고 공급을 보유해야 한다. 아편 길항제는 규제 약물이 아니며 약물 과다복용 치료를 위해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날록손 염산염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을 의미한다.

교직원이 개인에게 아편 길항제를 투여할 때 해당 주법에 따라야 한다.

V. 기타

학생이 본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약물을 소지, 사용, 배포, 판매 또는 복용하는 것은 학생의 약물 및 알코올 관련 위원회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당 위원회 정책에 따라 학생은 정학 및/또는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채택: 2007년 10월 15일
최종 개정: 2023년 4월 10일
현재 개정: 2023년 10월 9일

법률 참고문헌:

C.R.S. § 12-255-131(간호 업무 위임)
C.R.S. § 12-255-132(학교 간호사 - 일반 의약품)
C.R.S. § 13 21 108(응급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민사 면책)
C.R.S. § 24 10 106.5(공적 보호 의무)
C.R.S. § 22-1-119(부작용/부작용에 대한 책임 없음)
C.R.S. § 22-1-119.1(아편 길항제 소지 및 투여 허가)
C.R.S. § 22-1-119.3(학생의 처방약 소지 및 투여)
C.R.S. § 22-1-119.5(콜로라도 학교 아동 천식,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건강 관리법)
C.R.S. § 25-53-102(학교의 자동 외부 제세동기에 관한 요구 사항)
C.R.S. § 22-2-135(콜로라도 학교 아동 천식,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건강 관리법)
C.R.S. § 13-21-108.1(자동 외부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응급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적 면책)
C.R.S. § 13-21-108.2(스포츠 부상을 돕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민사 면책)
C.R.S. § 13-21-108.7(아편 길항제 투여를 통해 응급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적 면책)

C.R.S. § 24-10-101 et seq.(콜로라도 정부 면책법)
1 CCR 301-68(콜로라도 교육 위원회 약물 투여 규칙)
6 CCR 1010-6, 규칙 6.13(학교의 건강 서비스 요구 사항)

교차 참조: JICH, 학생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JLCDA,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
JLCDB, 학군 부지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투여
JLIB, 학생 퇴학 예방 조치
JLCA, 학생 건강 서비스 및 요구 사항
JLCM,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위한 학군 부지 접근
KDE, 위기 관리

학생에 대한 요금, 벌금 및 부과금
(JQ)

필수과목에 대하여 수업 및 학습지도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교재가 필요한 경우 교재의 활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업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도서에 대한 대여 요금도 부과할 수 없다. 주요과목에서 연습교재가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분실, 훼손, 표지가 분실된 자료 및 장비 (도서관 대여 책자 포함)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계산은 책의 구입비용에서 사용 기간에 대하여 매년 15%씩 가격을 깍는다.

선택과목에 대하여 전체적인 비용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과목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하여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학생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재료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합창단복 또는 음악대 유니폼 등과 같은 항목의 세탁비용을 부과될 수 있으며 학교 소유의 악기 대여에 대하여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필수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비용에는 입장료, 식비, 현장 학습 시 교통비, 교내 활동을 위한 활동 패스 요금, 체육 활동 참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학생도 그와 같은 비용문제로 인하여 현장답사 및 기타 과외활동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담당 교사 및 교장의 의무이다.

모든 수업료, 벌금 및 요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면제된다. 본 정책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는 경제적 곤경에 처한 학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McKinney-Vento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연방 빈곤 소득 지침에 따라 무료 또는 감액 급식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격을 갖춘 가정의 학생, 그리고 가정 외 배치된 학생. 운동 및 활동을 위한 유니폼, 장비 및 기타 유사 비용은 이 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McKinney-Vento 보조금과 같은 대체 재원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면제 요청은 학교 건물 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장은 면제 자격 및 대체 재원에 대해 학군 내 다른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최초 채택일: 2003년 6월 9일
최종 개정일: 2024년 12월 9일

법률 참고자료: 42 U.S.C. §11431 et seq.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C.R.S. §22-32-109(1)(u) (경제적 곤경 학생에게 무료 교과서 제공)
C.R.S. §22-32-110(1)(o) (무료 또는 합리적 대여료로 교과서 제공)
C.R.S. §22-32-110(1)(jj) (교과서, 도서관 자료, 기타 학교 재산 반환 또는 교체를 위한 벌금 또는 수수료 부과 권한)
C.R.S. §22-32-113(5) (학생 교통 및 초과 교통비에 대한 수수료 부과)
C.R.S. §22-32-117 (기타 수수료)
C.R.S. §22-32-118 (여름 학교, 보충, 야간 및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관련 수수료)
C.R.S. §22-32-138(7) (가정 외 배치 학생에 대한 수수료 면제)
C.R.S. §22-45-104 (수수료 – 벌금 – 처리)

관련 규정 (Cross References)
EEA – 학생 교통
EFC – 무료 및 감액 급식 서비스

학생에 관한 기록/정보제공 허용
(JRC)

정의

이 정책에서는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1. 학생. Cherry Creek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

2. 해당 자격 학생. 학생이거나 예전 학생으로 18세 이상 또는 고등교육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부모. 법원 명령에 의하여 부모의 권한이 취소되지 않은 친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의 부모나 18세 미만 학생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4. 교육 기록 학생 교육 기록은 수기, 인쇄물, 사진 및 전자를 포함한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교육구에서 관리하고 학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신원 자료; 학업 이수; 성취 수준(성적, 표준 성취도 시험 점수); 출결 자료; 표준 지능 검사 점수, 적성 및 심리 검사 점수; 취미 조사 결과; 건강 자료, 정신 건강 및 기타 의료 정보 가족 배경 정보; 교사 또는 상담 교사의 평가 및 관찰 내요, 모든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심각하거나 재발적인 행동 양상에 대한 보고서 및 학생과 관련된 징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다.

5. 다음은 교육 기록으로 간주될 수 없다.

   a. 교직원이 개인적인 기억을 돕기 위하여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으로 작성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작성자의 임시 대리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개되거나 이용되지 않았던 정보를 담고 있는 것.

   b. 채용 기록으로 오로지 교육구에 의한 학생의 채용과 관련되어 이용된 기록. 여기서의 채용에는 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등급이나 학점을 받기 위한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신원 정보. 학생의 이름, 부모 또는 다른 가족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학생 번호, 개인의 특징 목록 또는 학생의 신원을 알리는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기록 대상자를 밝히는 자료나 정보.

VII. 권리 진술 및 통보

매학년도 초에 교육구는 부모 및 해당 자격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이 학기 중에 등록하는 때에도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통보한다.

통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 및 해당 자격 학생으로서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2. 부모나 해당 자격 학생이 사전에 서면 동의한 예외의 상황이 아닌 경우, 인명록 정보 또는 연방법에 의하여 허용된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생의 교육 기록에 담긴 정보의 공개를 아래 명시된 대로 제한하려는 교육구의 의도.

3. 학생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 오류 또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으로서 기록의 일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에는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요청을 교육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록의 변경을 정당화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청문의 권리가 포함된다.

4. 가족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부모 및 해당 자격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 침해에 관하여 미 교육부 지역 시민권 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

5.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이 정책 책자를 구할 수 있는 절차 및 위치.

법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구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모국어로 이 통지의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VIII. 기록 사본의 수수료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다음 발행 수수료 때문에 기록 사본의 권리를 거부당할 수 없다. 기록 담당자는 생활 환경이 어려울 경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구는 취업 또는 입학을 위해 미래의 고용주나 대학에 성적표 등의 사본을 발송하는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기밀 정보의 편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기록에 대한 요청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광범위한 디지털 또는 전자 데이터 또는 대량의 문서와 관련된 요청에 대한 연구 및 검색 수수료 또는 동일한 것에 대한 중복 요청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교육구는 다음 경우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실질적으로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본 제공을 거부할 때.
2.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사전 동의에 따라 교육구가 제3자에게 제공한 기록을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3.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육구가 기록을 보냈을 때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해당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 정책과 관련한 사본의 수수료는 콜로라도 공개 기록법(C.R.S.) 따라 제공되는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허용되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 24-72-201 이하 참조.

IX. 비교육 기록/기록 보관

교육구의 법 집행 부서에서 관련 업무 목적으로 관리하는 기록은 교육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책의 어떤 조항도 행정관, 교사 또는 직원이 개인적인 지식이나 관찰에 의하고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유래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학생의 교육 기록 조사 및 검토 요청, 기록 사본 요청,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개인 신상 정보 공개는 각 학생 기록의 일부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장은 관할 건물에 배속된 학생 기록의 공식적인 보관인이 된다. 교육구 등록청 및 학생 기록부는 졸업생 및 이전 학생의 기록에 대한 학생 기록의 공식 관리이다.

X. 교육 기록 열람

부모/보호자(“부모”)는 자녀의 교육 파일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학생("해당 자격 학생")은 학생의 기록을 조사하거나 검토하고 그 기록 및 거기 담긴 개인 신상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자격 학생이 연방 소득세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또한 해당 자격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을 학생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학생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모든 경우에 이 정책에 따른 예외 상황이 아니면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파일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교장은 서면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조사 및 검토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교장 및/또는 교장이 지명한 다른 사람(들)의 참석 하에 학생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기록의 학교 건물 외부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청 시 사본은 요청일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학생에 대한 기록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련된 기록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XI. 교육 기록 수정 요청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부정확, 오류 또는 학생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기록의 수정을 교육구에 요청할 수 있는데, 학교장이나 담당 학교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원하는 기록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부정확, 오류 또는 학생의 사생활권 침해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교장에 대한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기록을 처음 조사한 시점으로부터 합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교장은 관련 정보를 가진 다른 사람과 상의한 후에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요청대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고 수정 요청에 관한 청문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청문 권리가 통보될 때에 청문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가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식 청문 요청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교육구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에 대한 회신은 10 수업일 이내에 우송해야 한다. 청문은 다음에 따라 열린다.

a. 청문회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 요청 접수 후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최된다. 청문회 날짜, 장소, 시간 및 기간에 대한 통지는 우편 및/또는 이메일로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제공된다.

b. 청문은 교장, 또는 교육감이 서면으로 지명한 상급 행정 공무원이 실시한다. 청문을 실시하는 공무원은최초 결정을 내린 교장이나 청문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교장의 학교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청문회는 녹음되어야 한다.

c.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는 제기한 문제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변호사를 포함하여 자비로 선택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d. 지명된 공무원은 청문의 결론 후 10 수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그 결정을 배달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e. 공무원의 결정은 청문에서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해야 하며 증거 및 결정 이유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f. 결정에는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학생 기록에 관한 권리를 알리는 진술, 기록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고/언급하거나 의견 불일치 이유를 밝히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에 담긴 설명은 교육구가 관리해야 한다. 학생 기록이 학교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설명 또한 그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XII. <u>타 교육구에 기록 요청</u>

학생이 타 교육구에서 본 교육구로 전학 온 경우 전입 학교로 기록이 이미 송달되지 않았을 때 전입 학교는 전출 교육구에 학생 기록을 요청한다.

XIII. <u>주정부 기관에 정보와 기록 요청 및 입수</u>

주의 법규 내에서 교육구 직원은 공공 안전 및 학생의 안전 보호를 포함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한다. 그러한 정보는 Colorado 아동 법전에 따라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주정부 기관의 사법부에서 입수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교육구 직원은 오로지 법적 의무와 책임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상황에서는 입수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XIV. <u>타 교육구로 기록 송부</u>

징계 기록을 포함한 학생 기록은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록을 요청하는 다른 교육구나 고등교육 기관 관계자에게 동의 없이 송부될 수 있다. 교육구는 그러한 요청 시 해당 자격 학생 또는 학생 부모에게 기록 사본을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가 학생이 전학하고자 하는 타 학교나 교육구와 공유되는 경우 1974년 연방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을 포함한 연방법의 요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XV. <u>서면 동의 없는 공개</u>

교육구는 오로지 다음 대상자에게만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학생 기록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1. 학생의 학업 성취를 증대하거나 안전하고 규율 있는 학습 환경의 유지를 위한 정보에 정당한 교육적 관심을 갖고 학교 제도권에서 일하는 다른 학교 관계자. 이 경우 공개에는 학생 또는 타인의 안전이나 복지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와 관련된 징계 정보의 공개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정책에서 "학교 관계자"는 교육구가 행정관, 감독관, 교사 또는 지원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교육구가 특수 업무를 위해 계약한 개인이나 회사(변호사, 감사역, 상담역, 의료 제공자 등) 또는 공식 위원회 일을 하거나 다른 학교 관계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자원 봉사자를 말한다. 이 정책에서 학교 관계자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교육 위원회 위원
   b. 주정부가 공인하고 위원회가 행정, 감독 또는 지도직에 임명한 사람
   c. 주정부가 공인하고 위원회가 행정, 감독 또는 지도 직원의 임시 대리인으로 채용한 사람
   d. 비서, 행정 비서, 변호사, 감사인, 버스 운전사, 운동 트레이너, 의료 컨설턴트, 치료사 및 교육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특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고용한 사람.
   e. 학생의 학업 성취를 증대하거나 안전하고 규율 있는 학습 환경의 유지를 위한 정보에 정당한 교육적 관심을 갖고 학생이 등록한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직원

"정당한 교육적 관심"이란 학교 관계자가 다음 경우에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으로 정의한다.
   a. 직위 규정에 명시되었거나 계약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b. 정보가 공식적인 교육구 업무 맥락 내에서 사용되며 관계자의 책임 영역과 관계없는 목적이 아닌 경우
   c. 정보가 업무 수행이나 학생에 관한 결정과 관계있는 경우
   d. 정보 사용이 자료가 관리되는 목적과 부합하는 경우
2.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타 학교, 교육구 또는 고등교육 기관의 관계자. 이 경우 징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부모 및 해당 자격 학생은 이 조항에 따라 송부된 사본이나 기록의 입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및 관련 연방 규정에 명시된 기관.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국 감사관, 미국 교육부 장관, 주 및 지역 교육 당국, 학생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응급 서비스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당국. 건강 또는 안전 긴급 상황에서는 오직 다음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한다.
   a. 학생이나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임이 명백한 경우
   b.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c.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긴급 상황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d. 긴급 상황 관리에서 시간이 중요하고 제약적인 요소인 경우
4.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학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구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학생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재판 기관. 이 경우 정보에는 징계 및 출결 정보만 포함되며, 형사 재판 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하여 특별히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상황 외에는 학생 부모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고 공유한다.
5. 학생의 재정 보조 신청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6.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 기관.
7. 비밀을 유지하고 더는 필요가 없게 되면 기록을 파기하도록 교육구와 서면 동의 또는 계약을 체결한 시험 및 연구 기관.
8.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람. 학교는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응하기 전에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연방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그 밖의 법률 집행 목적으로 법원이 소환장 또는 제공되는 정보의 존재와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명령한 경우 교육구는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
9. 오직 모병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 대리인. 고교생의 이름, 주소 및 집 전화번호를 군 모병관이 요청하였을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그러한 정보의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병관에게 공개한다.

10. 자신을 연방 소득세법상 피부양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18세 초과 학생의 부모.

11.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주 또는 부족법에 따라 학생의 돌봄 및 보호에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학생의 사례 계획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 기관 사례 근로자 또는 주 및 지역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부족 단체의 기타 대표자.

교육구는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집단 학업 성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XVI. 서면 동의에 따른 공개

법률 또는 정책에 의하여 교육구가 학생의 신원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해당 자격 학생에게 제공되는 통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개될 특정 기록
2. 공개가 필요한 특정 이유
3. 정보를 요청한 사람, 기관 또는 조직의 명시와 정보 사용 의도
4. 기록을 공개할 방법이나 수단
5. 공개될 기록 사본을 검토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동의는 주어진 특정 경우에만 유효하다. 학과목, 학교 활동, 특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학교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동의는 여기서 요구되는 특정 서면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서명된 모든 동의서는 교육구가 보관한다.

VII. 교직원에게 징계 정보 공개

주법에 따라 교장 또는 지명된 사람은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 관한 징계 정보를 교실에서 학생과 직접 접하는 교사 또는 학생과 직접 접하는 상담 교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타인의 안전 및 복지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교직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징계 정보"는 학생이 교육구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학생이 이전의 잘못된 행동에 따라 다른 학생 및 학교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개별 학생에 대해 교육구에서 관리하는 기밀 학생 기록을 의미함.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학교장이나 지정자에게 징계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징계 정보를 받은 교사 또는 교직원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 정책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VIII. 군 모병관에게 공개

고교생의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인명록 정보를 군 모병관이 요청하였을 경우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그러한 정보의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병관에게 공개한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육구가 지출한 합당하고 통상적인 실제 경비는 요청한 기관이 지불한다.

XIX. Medicaid에 공개

학생이 Colorado Medicaid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 교육구는 학생의 Medicaid 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로 구성된 인명록 정보를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Colorado의 Medicaid 기관)에 공개한다. 교육구는 청구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인명록 정보의 공개 전에 부모로부터 매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XX. 형사 재판 기관에 공개

법에 따라 교육감 또는 지명된 사람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학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구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학생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재판 기관과 징계 및 출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는 형사 재판 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하여 특별히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상황 외에는 학생 부모/보호자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을 받고 공유한다.

XXI. Colorado 고등교육 위원회(CCHE)에 공개

매학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구는 8학년에 등록된 학생들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CCHE에 공개하여 주법에서 정한 대로 고등교육 기회 및 고등교육 기관 입학지침에 관한 안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XVII.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

이 정책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기록은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서면 요청과 허락 없이 다른 개인 및 당사자에게 공개될 수 없다.

개인 정보는 비밀 유지가 보장될 경우에만 제3자에게 공개한다.

XVIII. 인명록 정보의 공개

교육구는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인명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명록 정보"는 공개되었을 때 보통 유해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학생의 교육 자료에 담긴 정보를 말한다.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일부 또는 모든 정보 범주의 수록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려면 학년도 초 2번째 주말 전까지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실에서 서면으로 거절을 요청해야 한다. 공개될 수 있는 인명록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학생의 이름, 전공 분야, 학년 수준, 배정된 학급, 학급 목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운동 팀 구성원의 체중 및 신장, 입학 날짜, 학위 및 상, 학생이 가장 최근 및 이전에 참여한 교육 기관, 학교 앨범, 연극 제작에서 학생의 역할을 보여주는 연극 프로그램, 졸업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이름 및 기타 유사한 정보다. 재학생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학생 전화 번호와 주소는 콜로라도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XIX 권리 포기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은 이 정책으로 보호되는 일부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권리 포기는 부모 또는 해당 자격 학생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교육구는 권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나 요청할 수는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권리 포기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다.

XX. 준거법

학군은 학생 교육 기록의 비밀을 규정하는 주법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과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군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법의 조항을 다루지 않거나,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 해당 주 또는 연방법의 조항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수정: 2007년 12월 10일
현재 개정판: 2022년 9월 __일

법률 참조:
20 U.S.C. §1232g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34 C.F.R. §99.1 이하 (FERPA 규정)
20 U.S.C. 7908 (학생에 대한 군 모병관의 접근)
34 C.F.R. § 300.610 esq. (학생 기밀에 관한 IDEIA 규정)
C.R.S. 19-1-303 및 304 (Colorado 아동 법전에 따른 기록 및 정보 공유)
C.R.S. 22-1-123 (교육구는 FERPA를 준수해야 한다)
C.R.S. 22-32-109 (1)(ff) (8학년생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Colorado 고등교육 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
C.R.S. 22-32-109.1(6) (학교의 안전 유지 관점에서 주 및 연방법에 부합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
C.R.S. 22-32-109.3(2) (형사 재판 기관과 징계 및 출결 정보를 공유할 의무)

C.R.S. § 22-32-126(5) (교장의 규율 정보 전달 의무)
C.R.S. 22-33-106.5 (법원은 폭행죄 및 불법 성적 행동의 유죄 판결을 통보한다)
C.R.S. 22-33-107.5 (교육구는 학교 결석을 통보한다)
C.R.S. § 24-10-106.3 (클레어 데이비스 학교 안전법)
C.R.S. § 24-72-204(2)(e) (Safe2Tell 프로그램에 의해 수령, 제작 또는 보관된 자료에 대한 검사 거부)
C.R.S. 24-72-204 (3)(a)(VI) (학교는 동의 없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
C.R.S. 24-72-204(3)(d) (군 모병관에게 공개하는 정보)
C.R.S. 24-72-204 (3)(e)(I) (Colorado 법률로 제정된 일부 FERPA 조항)
C.R.S. 24-72-204 (3)(e)(II) (직원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의 공개)
C.R.S. 24-72-205(5) (공공 기록 복사 수수료)
C.R.S. § 25.5-1-116 (HCPF 기록의 기밀성)

상호 참조: JK, 학생의 규율 및 예하 규정
JLCA, 학생의 건강 서비스 및 요구조건
JRCA, 교육구와 주정부 기관의 학생 기록/정보 공유

차별 금지 /기회의 평등/개인 간 인간 관계 (AC)

위원회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품위와 존중으로서 대우 받는 안전한 학습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학군 내 학교들은 인종, 피부색, 혈통, 신념,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성적 취향, 종교, 출신 국가, 기혼 여부, 장애 또는 특수 교육의 필요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연방 및 주 법률과 헌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달리 자격을 갖춘 학생, 교직원, 고용 지원자 또는 기타 사회 구성원은, 인종이나 피부색, 혈통, 신념,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성적 취향, 종교, 출신 국가, 기혼 여부, 장애 또는 특수 교육의 필요 여부를 이유로 학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령에 근거한 교직원 및 고용 지원자의 차별 역시 주 및 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된다. 본 학군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1. 주 및 연방 헌법, 관련 법률 및 기타 해당되는 사법적 판결에 명시된 모든 개인의 권리 및 책임을 증진시킨다.
2. 개인 및 가족적 특징이 서로 다르거나 다양한 사회경제, 인종 및 민족 집단 출신의 아동 및 성인이 인간의 가치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장려한다.
3.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러한 결정이 모든 사회 부문의 인간 관계적 측면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나 악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4. 교육 경험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의 직업 포부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5.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의 모든 관행과 정책을 검토한다.
6. 학군의 정책을 위반하는 불법적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해결한다.
7. 위원회 정책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교직원과 학생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징계한다.

<u>연례 통지</u>

학군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학군에서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동 및 고용 기회가 인종, 피부색, 혈통, 신념,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종교, 출신 국가, 기혼 여부, 장애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의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제공된다. 고용 관행과 관련하여 학군은 또한 연령, 유전자 정보 또는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조건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발행한다. 발표문에는 Title IX(공고육 남녀차별금지), 504조(장애인교육차별금지) 및 ADA 준수 활동을 총괄하도록 임명된 자의 이름/직책, 주소 및 전화 번호도 수록되어야 한다.

통지는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모국어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지는 모집 자료, 지원 양식, 공석 공고, 학생 핸드북, 학교 간행물, 학군 웹사이트, 학군 뉴스레터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위한 연례 통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정보를 교육구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II. 담당 직원의 임명

교육위원회는 학군이 복귀령 (Rehabilitation Act) 504 및 그 행정규정과 제목 IX 및 그 행정 규정, 그리고 AD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총괄할 책임자(들)을 임명해야 한다. 학군 규정 준수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는 교육위원회 별첨 AC-E-1, Cherry Creek 학군 No. 5 비차별/평등 기회 통지 및 학군 웹사이트 cherrycreekschools.org에 있다.

III. 괴롭힘 금지

개인의 인종, 피부색, 혈통, 신념,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출신 국가, 기혼 여부, 장애, 또는 특수교육의 필요 여부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주 및 연방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학교에서 이와 같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학생이 학습하고, 교직원이 일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군에서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학군의 교직원, 학생 및 기타 제 3 자에 의한 모든 괴롭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학군 내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학군에서 관할하는 학교 또는 기타 시설이나, 학군이나 학교가 허가한 활동이나 행사, 또는 학군에서 주관하는 학업 또는 과외 활동 또는 행사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분담한다.

본 정책에서, 괴롭힘 행위란 개인의 인종, 피부색, 혈통, 신념, 성,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출신 국가, 기혼 여부, 장애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이유로 하거나 이를 공격하는 모든 적대적이고 불쾌한 원치 않는 구두, 서명 또는 신체적 행위로서, (1) 신체, 감정 또는 정신적 피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하거나, (2) 위압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되어 있거나, (3) 학교의 올바른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IV. 괴롭힘 행위의 신고

본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학생은 즉시 행정관이나 상담 전문가, 교사 또는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사실을 신고하고 본 정책에 따라 불만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교직원은 이사회 정책 JLF에 따라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대 또는 기타 범죄 행위를 당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절한 법 집행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직원 또는 일반 대중은 이 정책에 따라 선의의 괴롭힘 보고에 대한 보복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괴롭힘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V. 임시 학군의 조치

적절한 경우, 학군은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는 동안 괴롭힘의 혐의 대상을 추가 괴롭힘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VI. 학군 조사/조치

학군은 괴롭힘 행위 신고를 조사하여, 존재하는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를 종식시키고,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의 재발을 막으며, 신고자 및 신고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잃어버린 교육 또는 고용 기회를 되돌려주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밖에, 타 학생 또는 교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모든 학생 또는 교직원은 학군의 해당 정책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 및 증인을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나아가, 고의로 괴롭힘 행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사 중에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정학/퇴학 또는 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잠재적인 범죄 행위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본 정책에 따라 선의에 입각하여,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일반인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괴롭힘 행위에 관한 모든 신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목격한 모든 학군 직원은 목격한 행동을 관리자나 인사부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한다.

VII. 학군 개선 조치

차별이나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교육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VIII. 통지 및 교육

괴롭힘 행위를 억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부는 학군 내 모든 학교 및 기관에 본 정책에 대해 통지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본 정책과 고충 처리 절차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및 사회 구성원에게 전자 파일 또는 인쇄물 배포를 통해 알려야 한다.

본 정책과 차별 금지에 관한 통지(AC-E-1)는 학생 및 교직원용 안내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단체와, 괴롭힘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의 인식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그룹 및/또는 대상 그룹에 대한 인식;
- 괴롭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 입증된 괴롭힘 방지 전략

IX. 구매 차별 금지

위원회는 모든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자가 학군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정책 DJ에 요약된 대로 학군의 구매 과정이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연령, 성적 취향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학군이 콜로라도 법 13C.F.R. 121에 정의된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소기업으로부터 구매를 늘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전념하기를 바란다. 주식 또는 기타 공평 증권의 50% 이상이 재향 군인 및/또는 장애인 소유이다. 이 목표는 해당 기업의 입찰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채택일: 2009년 1월 12일
최종 수정일: 2018년 11월 12일
현재 개정: 2021년 3월 8일

법률 참조: 미국 장애인법 Title II - 42 U.S.C. § 12101 et seq.
1964년 민권법 Title VI (1972년 개정) - 42 U.S.C. §
2000(d) 1964년 민권법 Title VII - 42 U.S.C. § 2000(e)
Title VII, 1972년 의 교육법 수정안- 20 U.S.C. § 1681
29 U.S.C. § 621 et seq.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29 U.S.C. § 701 et seq. (재활법 제504조)
20 U.S.C. § 1701-1758(1972년 고용기회평등법)
34 C.F.R. 100부 ~ 110부(민권 규정)
C.R.S. § 2-4-401(성적 취향의 정의)
C.R.S. § 18-9-121(편향 범죄)
C.R.S. § 22-32-109(1)(II) (차별을 금지하는 서면 정책 채택에 대한 이사회 의무)
C.R.S. § 24-34-301 이하 참조. (콜로라도 민권과)
C.R.S. § 24-34-401 이하 참조.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고용 관행)
C.R.S. § 24-34-402.3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조건에 따른 차별)
C.R.S. § 24-34-601(공공시설에서의 불법적인 차별)
C.R.S. § 24-34-602 (불법 차별에 대한 처벌 및 민사 책임)
C.R.S. § 24-49.5-105(4)(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사업 정의) 13 C.F.R. 121

상호 참조: AC-E-1 - 비차별/평등 기회 통지
AC-R - 차별 금지/평등 기회(고충 및 준수 절차)
AC-R-1 -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Title IX 준수)
AC-R-2 - 성적 차별 및 괴롭힘
AC-R-3 - 성희롱(고충 처리 절차 - 직원)
AC-R-4 - 학생 성희롱
AC-R-5 - 학생 성희롱(탄원 절차)
AC-R-6 - 민족 및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AC-R-7 - 장애/장애인에 따른 차별 금지(섹션 504 준수)
ACB - 인종 및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인종 위협/괴롭힘) DJ, 구매/구매 당국
JB - 평등한 교육 기회

비차별 주의 사항 / 기회균등
(AC-E-1)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및 타이틀 VII (2 U.S.C. § 2000d et seq. and 42 U.S.C. § 2000e-2); 타이틀 IX 1972 년 교육 개정 (20 U.S.C. § 1681); 1973년 재활법 504 (9 U.S.C. § 701 et seq.); 1967년 고용 연령 차별법 (29 U.S.C. § 621 et seq.); 미국 장애인법 (42 U.S.C. § 1211 et seq.); 콜로라도 주법을 준수해서 체리크릭 학군 5번은 인종, 피부색, 조상, 신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취향, 종교, 국적, 연령, 결혼 상태, 유전 정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상태,장애, 특수교육 서비스 필요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입학, 치료 이용, 또는 고용하는데 차별하지 않는다.

체리크릭 학군 504 가이드 책, 챕터 IX, 학군 504 불만 절차에 설명된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일반인을 위해 설립된 타이틀 IX 및 504 에 대한 불만 절차 과정이다. 다음 사람(들)이 지정된 직원이다.

Stephanie Davies Megan Lonergan

District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Legal Resources
4700 S. Yosemite St.
Greenwood Village, CO 80111
720-554-4471
equitycompliance@cherrycreekschools.org

District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Legal Resources
4700 S. Yosemite St.
Greenwood Village, CO 80111
720-554-4415
equitycompliance@cherrycreekschools.org

다음 사람(들)은 학생들이 섹션 504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Stephen White
Student Achievement Resource Center
14188 E. Briarwood Ave.
Centennial, CO 80112
720-554-4404
swhite7@cherrycreekschools.org

다음 사람은 CCSD 직원을 위한 ADA 편의 요청을 지원합니다.

Jennifer Squir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Educational Services Center
4700 S. Yosemite St.
Greenwood, CO 80111
720-554-4282
benefits@cherrycreekschools.org

타이틀 VI (인종과 국적), 타이틀 XI (성/성별), 504/ADA (장애) 위반에 대한 불만은 시민권리 사무실 국방 교육부, 지역 VII, 연방 오피스 빌딩 1244 North Speer Boulevard, Suite 310, Denver, CO 80204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은 ocr.denver@ed.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에서 OCR의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질문은 전화: 303-844-5695로 OCR에 문의할 수 있다. 타이틀 VII (고용 차별), 미국 장애인 법 (장애인 고용) 및 ADA (연령 차별 금지 고용) 위반에 대한 불만은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303 E. 17th Ave., Suite 510, Denver, CO 80202 으로 또는 콜로라도 국민 권익위원회 1560 Broadway, Suite 1050, Denver, CO 80202 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최초 승인: 교육감 메리 에프 체슬리 (Mary F. Chesley) 2009년 6월 25일
교육감 Dr. Scott A. Siegfried의 수정 및 승인, 2021년 1월 11일
2022년 11월 14일자 Christopher Smith 교육감의 현재 개정 및 승인.

학생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
(AC-R-4)

성적인 괴롭힘은 성차별의 한 형태로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위반이다.

성적인 괴롭힘이 없는 학습 분위기를 유지한다. 직원이나 학생이 타 학생을 성적인 내용의 언행으로 괴롭히는 것은 위반 행위이다.

성적인 괴롭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환영하지 않는 성적인 진행, 선호하는 성별의 요청 또는 성적인 내용의 신체행위 등은 다음의 경우 성적인 괴롭힘이 된다.

1. 그와 같은 행위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명료하게 혹은 은연중에 한 학생의 교육발전의 요소 또는 조건이 되는 경우

2. 그와 같은 행위의 수용 또는 거부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적 결정의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

3. 그와 같은 행동이 개인의 교육적 능력에 적절치 못한 간섭이 되거나 위협, 적대감 또는 공격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성적인 괴롭힘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성과 관련된 언어적인 놀림, 남용 또는 괴롭힘
2. 성적인 행위에 대한 압력
3. 특정인의 성적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인상의 반복적인 표현
4. 두들김, 꼬집음 또는 계속적으로 타인의 몸에 대고 자신의 몸을 비비는 것과 같은 환영하지 않는 접촉 행위
5. 학생의 성적 및 유사한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암시 또는 명료한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인 관계를 제의 또는 요구하는 행위

성적인 괴롭힘의 모든 사건은 각 빌딩 담당자, 빌딩 단위의 불평 담당자 또는 기타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동반하는 불평신고 절차에 따라 성적인 괴롭힘에 대한 불평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약 괴롭힘의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불평접수 담당자인 교장인 경우에는, 교장의 수퍼바이저에게 접수할 수 있다.

성적인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신고는 최대한 기밀로 유지된다.
불평의 접수 또는 성적인 괴롭힘의 신고는 신고 당사자 개인의 상황 및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학군의 모든 학교 및 부서에 배포되고 학생의 수첩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1999년 2월 8일 채택

학생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 탄원절차
(AC-R-5)

1. 용어 정의
   a. 항소인.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하며 Title IX 성희롱으로 여겨지는 행위의 피해자로 호소하는 학생.
   b. 결정권자. 당사자 및 증인의 신빙성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평가하고 증거 기준의 우위를 적용하여 피고소인이 성희롱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
   c. 긴급철수. 학교는 긴급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안전 및 위험 분석(자살 위험 평가 또는 위협 평가 중재 계획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또한 학생 및 기타 개인의 신체적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Title IX 성희롱 혐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결정하면 피고소인을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긴급 이동 일수는 장애인 교육법(IDEA) 및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에 따라 배치 변경을 계산하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공식 불만. 고소인이 물리적 또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제출하고 서명한 문서 또는 전자 제출물, 또는 피항소인에 대한 Title IX 성희롱을 주장하고 학교에 성희롱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서명한 문서.
   e. 조사자. 당사자와 증인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무죄 및 무죄 증거를 포함한 모든 사용 가능한 증거를 종합하도록 훈련받은 개인.
   f. 관계자. 불만 제기인(들)과 피항소인(들)를 전체.
   g. 피항소인. Title IX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로 보고된 개인.
   h. 학군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학군이 피항소인과 Title IX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위치, 이벤트 또는 상황.
   i. 지원 조치. 정식 불만 제기 전후 또는 정식 불만 제기가 없는 경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수수료나 비용 없이 청구인 또는 피항소인에게 제공되는 비징벌적, 개별화된 서비스. 이러한 조치는 모든

당사자 또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거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상담, 마감일 연장 또는 기타 코스 관련 조정, 작업 또는 수업 일정 수정, 에스코트 서비스, 당사자 간의 상호 접촉 제한, 휴학, 캠퍼스 지역의 보안 또는 감독 강화 및 기타 유사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j.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지원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 지정한 개인.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만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모든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다.

k. 타이틀 IX 성희롱.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을 근거로 한 행위

i.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개인의 참여에 대해 학교의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구 직원

ii. 합리적인 사람이 너무 가혹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하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사실상 거부하는 원치 않는 행위 또는

iii. 20 U.S.C. § 1092(f)(6)(A)(v)의 "성폭력"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34 U.S.C. § 12291(a)(10)의 데이트 폭력"으로 정의된 대로, 34 U.S.C. § 12221(a)(8)의 "가정 폭력"에 정의된 대로, 34 U.S.C. § 12291(a)(30)에 정의된 "스토킹".

2. 보고

a. 누구든지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자가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위의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이든 아니든).

b. 보고는 건물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에게 직접 방문으로, 우편, 전화 또는 전자 메일로 할 수 있다.

c. 교육구 직원에게 보고된 성희롱 행위는 각 학교나 시설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각 학교나 시설 Title IX 코디네이터 목록은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성희롱 혐의자가 학교나 시설 Title IX 코디네이터인 경우, 보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학군 수준 관리자가 대체 관리자를 지정한다.

3. Title IX 코디네이터 응답

a.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교육구 직원은 건물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해당 주장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으면

i.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지원 조치의 가용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즉시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한다.

ii. 지원 조치와 관련하여 불만 제기자의 희망 사항을 고려한다.

iii. 공식 불만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조치의 가용성을 불만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iv. 공식 불만 제기 절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v.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학교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지원 조치는 기밀로 유지될 것임을 불만 제기자에게 알린다.

4. 불만 제기

a. 항소인이 또는 항소인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권리가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불만 제기자가 서명해야 한다. 작성된 불만 사항은 학교나 시설의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한다.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아닌 다른 학군 직원에게 서면 불만 사항이 제출되면 해당 학군 직원은 즉시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불만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을 야기한 사건으로부터 또는 항소인이 그러한 발생을 합리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인은 불만 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5. 고충 처리 절차

i. 정식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제기자 서명한 후 또는 정식 불만에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서명한 후 학교는 고충 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1. 비공식 해결 절차를 포함한 CCSD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공지:
2. 잠재적으로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Title IX 성희롱 혐의에 대한 통지를 포함한:
   a. 당시에 알려진 충분한 세부 사항과 초기 인터뷰 전에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i. 충분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 알고 있는 경우.
         2. Title IX 성희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3. 사건의 날짜와 장소. 알고 있는 경우.

3. 피항소인은 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책임에 대한 결정은 고충 처리 과정이 끝날 때 이루어진다.
4. 책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의 표준은 증거 표준의 우위이다.
5.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임 할 필요는 없으며 증거를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고문을 선택할 수 있다.
6. CCSD 위원회 정책 JICDA에 따라 학교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CCSD 행동 규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조사자가 조사하기로 선택한 혐의 통지서의 원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 통지서.

b. 공식 불만사항 통합
   i. 혐의에 여러 피고소인 또는 여러 항소인이 관련되고 동일한 사실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공식 불만이 통합될 수 있다.

7. 공식 불만의 기각
   i.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 불만 사항을 기각해야 한다.
      1. 정식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입증되더라도 Title IX 성희롱을 구성하지 않는다.
      2. 주장된 행위가 하군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3. 의심되는 행위는 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 발생하지 않았다.
   ii.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 불만 사항을 기각해야 한다.
      1. 조사 중 언제든지 고소인이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공식 고소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주장을 철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2. 피항소인은 더 이상 해당 학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3. 특정 상황으로 인해 학군이- 공식 불만 또는 그 안에 있는 주장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iii. 공식 불만의 기각은 CCSD 학생 행동 및 징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iv. 공식 불만의 기각은 지원 조치의 옵션 및 제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v. 정식 고소가 기각되면, 교육구는 기각에 대한 서면 통지와 기각 사유를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8. 공식 불만 사항의 비공식적 해결
   i. 비공식 해결을 진행하기 전에 공식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ii. 비공식 해결 절차는 교육구 직원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과 관련된 혐의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iii. 책임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학교는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
   iv. 양 당사자는 비공식 해결 절차에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v. 비공식적 해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를 공개하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
      2. 동일한 혐의으로 인해 당사자가 공식 불만 사항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 공식 해결 절차의 요구 사항.
      3. 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공식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비공식 해결 절차를 철회하고 고충 처리를 재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정보 그리고
      4. 기록이 유지 또는 공유된다는 정보를 포함하여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가 공유된다는 정보.
   vi.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8.~~9. 공식 불만 사항 조사
   i. 학교의 Title IX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 조사관은 공식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다.
   ii. 조사자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또는 개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해 이해 상충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된다.
   iii.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증거 수집 책임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아닌 조사자에게 있다.
   iv. 조사자는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의 자격으로 행동하거나 그 자격을 보조하는 기타 공인된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가 작성하거나 유지하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대한 치료 기록을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액세스하거나, 공개하거나 또는 달리 사용할 수 없다.
   v. 양 당사자는 증인 및 기타 무죄 증거를 제시할 동등한 기회가 제공된다.
   vi. 어느 당사자도 조사 중인 혐의를 논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및 제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vii. 양 당사자는 관련 회의 또는 절차에 고문을 비롯한 다른 개인을 동반할 수 있다. 학군은 고문(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고문에 대한 모든 제한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viii. 각 당사자는 날짜, 시간, 장소, 참가자, 조사 인터뷰 목적 및 인터뷰 참여가 초대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ix. 각 당사자는 학군이 결정을 내리는 데 의존하지 않으려는 증거를 포함하여 공식 고소에서 제기된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사의 일부로 얻은 증거를 조사하고 검토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책임 및 무죄 또는 무죄 증거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증거에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x. 조사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조사관은 조사 및 검토 대상인 증거를 전자 형식 또는 출력된 자료로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1. 당사자는 10 수업일 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이를 고려할 것이다.

xi. 당사자의 조사 및 응답 후 조사관은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관은 검토 및 서면 응답을 위해 조사 보고서를 각 당사자와 의사결정자에게 전자 형식 또는 출력된 자료로 보낸다.

~~9.~~10. 결정

i. 조사관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될 수 없는 결정권자는 공식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다.

ii. 의사 결정자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또는 개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해 이해 상충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된다.

iii. 조사관이 당사자와 의사결정자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공한 후,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사결정자는 각 당사자에게 해당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기회및 후속 질문에 대한 기회를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1. 의사결정자는 당사자가 제안한 질문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iv. 책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사 결정자는 고충 처리의 종료를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간, 비공식 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 제한된 연장 기간의 고충 처리를 일시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절차와 조사자 또는 결정권자가 식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간과 지연 또는 연장, 그 이유 및 조치를 서면으로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통지한다.

~~10.~~11. 결정권자는 책임에 관한 서면 결정을 당사자에게 동시에 발행합니다. 책임에 관한 결정은 결정권자가 항소 결과에 대한 서면 결정을 당사자에게 제공한 날짜, 항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항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가 무효가 되는 날짜에 확정되고 더 이상 시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Title IX 성희롱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혐의 식별

ii. 당사자에 대한 통지, 당사자 및 증인과의 인터뷰, 현장 방문, 기타 증거 수집에 사용된 방법 및 개최된 청문회를 포함하여 공식 불만 접수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절차적 단계에 대한 설명

iv. 적용할 증거의 기준

v. 학군의 학생 행동 강령 및 징계를 사실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결론;

vi. 책임에 관한 결정, 학교가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징계 제재,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구제책이 학교에서 고소인에게 제공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각 혐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진술 및 근거; 그리고

vii.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항소에 대한 학군의 절차 및 허용 가능한 근거.

viii. 당사자들이 최종 결정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권자 또는 Title IX 조정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ix. 결정권자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식별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항소 제출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거나 시간 프레임을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지연 또는 연장에 대한 서면 통지와 함께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통지한다.

~~11.~~12. 항소

i. 당사자는 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학교의 공식 불만 사항 또는 모든 혐의에 대한 기각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음을 기반으로 항소할 수 있다.

1.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의 변칙;
2. 책임 또는 기각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고 문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및/또는
3. Title IX 조정자, 조사자 또는 의사 결정자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문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만 사항이나 이해 상충 또는 편견이 있었다.

i. 항소 절차는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징계 결과에만 근거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만 활용될 수 없으며 위에 나열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ii. 당사자는 결정에 항소하려면 수업일 기준 십(10) 일 이내에 결정권자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iii. 항소가 제기된 경우:

1. 항소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항소 절차는 당사자 간에 동등하게 시행된다.
2. 항소에 대한 결정권자는 학교에 의해 항소 담당관으로 지정되며 책임 또는 기각에 관한 결정을한 결정권자, 조사관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될 수없다.
3. 항소 통지를 받은 후, 양 당사자에게는 10 수업일과 결과를 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동등한 기회가 제공된다.
4. 항소에 대한 항소 담당관은 항소 결과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당사자에게 동시에 발행한다.

6. 기록 보관

a. 학군은 칠(7) 년 동안 다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i. 책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각 성희롱 조사 및

1. 피고소인에게 부과된 징계조치
2.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어 고소인에게 제공된 모든 구제책.
3. 항소 신청 및 그 결과
4. 비공식결의 및 그 결과

ii.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권자 및 비공식적 해결 과정을 이끄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 그리고,

1. 학군은 이러한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iii. 성희롱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식 불만 사항에 대응하여 취한 지원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의 기록.

1. 학교는 응답이 고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를 취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2. 학교가 고소인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알려진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대응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3. 특정 근거 또는 조치에 대한 문서화는 미래에 학군이 추가 설명을 제공하거나 취한 추가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7. 보복

a. 학교나 다른 사람은 불만을 제기, 증언 또는 이사회 정책에 따라 조사 또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돕거나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개인을 Title IX 또는 이 부분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또는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겁주거나, 위협하거나, 강합해서는 않된다.

b.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성차별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제기와 동일한 사실 또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 또는 Title IX 또는 이 정책이 보장하는 권리나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보복에 해당한다.

c. 보복을 주장하는 불만은 34 CFR§ 106.8(c) 에 따른 성차별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d.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는 금지된 보복을 구성하지 않는다.

e. 학생들은 학교에서 악의적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학생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단, 책임에 관한 결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하지 않다.

f. 기밀성

i. 학교는 성적 괴롭힘, 불만 사항, 성차별의 가해자, 피고인 및 증인의 신고를 받은 개인을 포함하여FERPA 20 USC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1232g 시행 규정, 34 CFR part 99,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차별에 대해 보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개인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1999년 2월 8일 교육감 Robert D. Tschirki에 의해 원래 승인됨.
2020년 8월 14일 수정됨

참고 자료 : 34 C.F.R. § 106.8 (코디네이터 지정, 정책확산, 고충처리절차 도입) 20 U.S.C. § 1681 et. seq. (1972년 교육 수정안 Title IX)
34 CFR § 106.30 (정의)
34 CFR §106.44 (성희롱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34 CFR §106.45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34 CFR §106.71 (보복))

민족 및 인종에 근거한 차별금지
(AC-R-6)

모든 직원 및 학생에게 인종, 피부색, 혈통, 종교,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인종 및 민족 괴롭힘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어느 교직원이나 학생이 타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은 위원회 정책 AC와 연방 및 주 법률의 위반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학교군내,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 중이거나 학교에서 파견된 차량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정책 AC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서면 또는 구두 포함), 모욕, 비방, 욕설, 인종적 농담 등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2.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해를 가하는 행위.

3.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폄하하기 위해 서면 또는 시각 자료를 게시하거나 학교 재산 또는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4.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타인의 개인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5. 타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콜로라도 형법에 위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a.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

   b.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한 행위나 발언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행위.

인종 또는 민족을 이유로 위협, 괴롭힘 또는 차별을 당했다고 믿는 학생이나 직원은 즉시 행정관 또는 행정관의 지명자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직원은 또한 인사과에 해당 사건을 보고할 수 있다. 모든 보고는 가능한 한 기밀로 처리된다. 인종 또는 민족에 따른 위협, 괴롭힘 또는 차별에 관한 보고는 행정관 또는 행정관의 지명자, 인사과, 또는 외부 지명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사해야 한다. 추가 조치로 해당 사건을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행위를 함으로써 정책 AC를 위반한 학생은 부모/보호자와 함께 행정관 또는 지명자와 회의를 통해 학교에서 기대하는 학생의 행동을 명확히 해야한다. 학생은 적절한 징계 조치, 경우에 따라 퇴학에 처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된 행위를 함으로써 정책 AC를 위반한 직원이나 그러한 행위를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초기 승인: 수퍼인텐던트 몬테 C. 모세스, 1999년 11월 8일

현재 개정: 2024년 5월 13일

법적 참고:

1964년 민권법 제6조(1972년 개정) – 42 U.S.C. § 2000(d)
1964년 민권법 제6조 – 42 U.S.C. § 2000(e)
C.R.S. § 18-9-121 (편견에 기반한 범죄)
C.R.S. § 22-32-109(1)(ll)(I) (차별 금지에 관한 서면 정책 채택 의무)
C.R.S. § 24-34-401 등 (차별적 및 불공정한 고용 관행)

장애(신체적·정신적)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 제504조 준수 (AC-R-7)

교육위원회는 1973년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와 미국 장애인법("ADA") 제2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준수합니다. Section 504와 ADA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학생 또는 예비 학생이 학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학군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접근, 입학, 대우, 또는 고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법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I. 지정 직원: 교육위원회는 제504조 및 ADA 불이행/평등기회 불만 및 준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지구 형평성 준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AC-E-1을 참조하십시오.

a. 이 정책에 따른 불만은 전무 이사, 건물 관리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도 제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건물 차원에서 조사 및 해결될 수 있습니다.

b. 직원의 행위와 관련된 학생 차별 혐의는 교육구 인사국에 보고되며, 인사국은 또한 제504조 및 ADA, 그리고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책임집니다. 교육구 형평성 준수 담당자는 제504조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AC-E-1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구 절차와 규정을 개발합니다.

II. 교육구는 매년 학생, 직원,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교육구의 정책과 불만 처리 절차, 그리고 교육구 형평성 준수 담당자의 성명 또는 직책,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고지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V. 장애

a. 제504조 및 ADA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i.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어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람
ii. 그러한 손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iii.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개인은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서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V.혜택을 누릴 기회: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적격 학생에게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혜택을 누릴 기회에는 학생이 동일한 결과를 얻고,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동일한 수준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학생의 필요에 적합한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적격 학생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특정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ii. 주 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인 모든 연령대의 학생, 또는

iii. IDEA에 따라 주가 무상적절공교육(FAPE)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

b. 적격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선발 또는 경쟁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학생은 선발 또는 경쟁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술이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 보고: 본 정책을 위반하여 교육구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기회나 혜택을 거부한 경우,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교육구 직원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즉시 전무 이사, 건물 관리자 또는 지정인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는 교육구 형평성 준수 담당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d. 조사: 보고가 접수되면, 교육구는 해당 혐의를 검토하고 조사 및 개입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을 결정합니다.

i. 학생은 언제든지 지원 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치에는 조사 기간 동안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이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개입이 포함됩니다.

ii. 조사 담당자는 접근 거부 조사에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을 적용합니다.

e.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구는 혜택의 거부나 불평등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혜택 거부나 불평등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지원 조치를 계속 제공하는 것과, 향후 혜택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제책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 학생의 FAPE(무상적절공교육) 접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 거부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이나 수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IEP 또는 제504조 팀을 소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VI. 괴롭힘: 주 및 연방법은 장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a. 이 정책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에는 학생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기반으로 한 원치 않는 행위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언어적 학대, 시각적 또는 서면 표현, 신체적 폭행, 또는 위협적이거나 해롭거나 모욕적인 기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는 반드시 해를 끼칠 의도가 있거나 특정 대상을 향하거나 반복적인 사건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Bullying)은 본 정책에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b. 괴롭힘은 괴롭히는 행위가 충분히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어서 학생이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기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릴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i. 적대적인 환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에는 괴롭힘의 맥락, 성격, 범위, 빈도, 지속 기간, 그리고 괴롭힘의 영향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보고: 본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교육구 직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즉시 전무 이사, 건물 관리자 또는 지정인에게 조사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는 교육구 형평성 준수 담당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보고는 필요에 따라 건물 관리자 또는 인사부(HR)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d. 조사: 보고가 접수되면, 교육구는 해당 혐의를 검토하고 조사 및 개입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을 결정합니다.

i. 모든 학생은 괴롭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조사 기간 동안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이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포함됩니다.

ii. 조사 담당자는 괴롭힘 조사에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을 적용합니다.

e.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여기에는 괴롭힘을 종결하고, 적대적 환경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며, 향후 괴롭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지원 조치의 지속 또는 추가적인 구제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 괴롭힘으로 인해 학생의 FAPE(무상적절공교육) 접근 능력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학교는 괴롭힘의 영향을 해결하고 이를 시정하며 학생이 FAPE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IEP 또는 제504조 팀을 소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VII. 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 및 CCSD 교육위원회 정책 JRC에 따라, 교육구 및/또는 학교는 다른 학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계 사항이나 해당 학생이 이용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학생에 관한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II. 징계: 다른 학생을 괴롭힌 학생은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X. 보복: 본 정책에 따라 보고를 하였거나, 혐의나 불만의 대상이 되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보복에 대한 보고는 즉시 건물 관리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제출되어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29 U.S.C. § 701 et seq. (재활법 제504조)
42 U.S.C. § 12101 et seq. (미국 장애인법)
34 C.F.R. § 104 et seq.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의 장애 기반 차별 금지)
C.R.S. § 22-1-143 (괴롭힘 또는 차별)

관련 참조
AC - 차별금지/형평성 기회 대인/인간관계
AC-E-1 - 차별금지/평등기회 고지
AC-R - 차별금지/평등기회 (불만 및 준수 절차)
JRC - 학생 기록/학생 정보 공개
JICDA - 행동 및 징계 규정

인권 및 인종협박 탄원 절차

1964년 인권령의 제 6조 및 6조, 1972년의 교육 개정안 9조, 1981년의 성적 괴롭힘 정책, 1973년도의 갱생 령 504조, 1990년의 미국 장애인 령, 1988년의 콜로라도 인종 협박 령, 1994년 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연방 인종 사건 및 학대 방침 등에 따라 체리 크릭 학군은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가입 승인, 활용, 대우,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가문, 신념,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출신국, 기혼 여부, 장애 및 불구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학생, 학부형 및 직원들을 위하여 위에 언급된 인권 조항, 법령, 정책 및 콜로라도 인종 협박 령 등의 위반에 대한 탄원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탄원은 학생, 학부형 또는 직원이나 집단으로 행동하는 단체 또는 학생들을 대신하는 학부형들에 의하여 발의될 수 있다. 본 학군은 그와 같은 탄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짐하며 제반 불평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것을 권장한다.

단계 1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 경우 해당 빌딩 및 학군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 (Equity Compliance Contact) 또는 학군의 직원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 불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인권 법 또는 콜로라도주의 인종 협박 령에 대한 위반 사항을 해당 빌딩 및 학군의평등권 준수 담당자 담당자 또는 해당 학군에 고용된 성인 직원을 만나서 불평 사항의 내용을 이야기 함으로 탄원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단계 1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단계 2에 따라 공식적인 탄원을 접수할 수 있다.
>
> 빌딩 관리자는 그들에 대한 모든 타이틀 IX 불만을 학군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타이틀 IX 의 권리를 제공 할 것이다.

단계 2

공식적인 탄원 접수

학교 구역에 대한 공식적인 탄원은 위반 사항이 발생한 직후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문서를 통하여 해당 빌딩 또는 학교 구역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 Stephanie Davies (스테페니 데이비스) 학생 성공 및 법률 자료 사무실 4700 S. Yosemite Street, Greenwodd Village, CO 80111 720-554-4471 으로 접수하는 것이다. 제기된 위반 사항이 교내 빌딩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탄원서는 해당 빌딩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에 접수하며, 제기된 위반 사항이 학군의 영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군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에 접수한다.

불평은 적시에 접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인권 관계법은 제기된 위반 사항이 발생된 후 180일 이내에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기관 가운데서 해당 기관에 접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리 크릭 학군은 모든 불평 사항은 신속히 적시에 신고될 것을 권장한다.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전체적이고 정확한 조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불평 사항 신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연방 인권 법, 법령 또는 정책이나 콜로라도 주 인종 협박 령 또는 본 학군의 비차별 정책이나 규정 및/또는 특정의 학교 절차 조항 등의 적용이 가능한 위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탄원서는 제기된 위반 사항에 대한 사람의 이름, 날짜, 장소 및 상세한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혹은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연방 인권 법, 법령 또는 정책이나 콜로라도 주 인종 협박 령 또는 본 학군의 비차별 정책이나 규정 및/또는 특정의 학교 절차 조항 등의 적용이 가능한 위반 사항에 의한 희생자이거나 이미 수립된 특정 절차 또는 평등 정책, 규정 또는 관례 등에 상반하는 이유로 학생 및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탄원서는 제기된 위반 사항에 대한 사람의 이름, 날짜, 장소 및 상세한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 3

해당 빌딩 또는 학교 구역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빌딩 관리자 및/또는 학군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는 제기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희생자, 위반자 혹은 증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으며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빌딩 관리자 혹은 학군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은 탄원이 접수되면 45일 이내에 문서를 통하여 탄원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학군은 탄원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명시된 위반 사항 및 시정 조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단계 4

탄원자의 항소권리

탄원자 또는 제기된 위반자는 해당 빌딩 또는 학교 구역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에 의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학교 구역의 평등권 준수 담당자 및 감독자 또는 감독 지명자에게 각각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항소 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을 문서로 제공한다.

인권 단체 탄원 절차

체리 크릭 학교 구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장하지만 반드시 위의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 및 학생의 부모 및 불평등한 대우 및 인종 협박 또는 성적인 괴롭힘을 주장하는 직원들은 연방 및 주정부의 인권 기관이나 지역의 경찰서에 인종 협박 사항(아래 참조)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6조 (인종, 출신국), 9조 (성/성별), 504조 ADA (장애 및 신체 부자유), 인종 차별 및 교육 기관의 학생에 대한 학대 정책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 등에 대한 불평 사항은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gion VIII, Federal Office Building, 1244 North Speer Blvd. Suite 310 Denver, CO 80204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7조 (고용)에 관련된 위반 사항은 Federal Office of Equal Employment Oportunity Commission, 303 E. 17th Avenue, Suite 510, Denver, CO 80203 또는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1560 Broadway, Suite 1050, Denver, CO 80202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콜로라도 인종 협박령 위반에 대한 사항 (인종, 피부색, 가문, 출신국, 종교 및 연령)은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정일자 1996년 8월

학군 평등권 준수 담당자
Stephanie Davies
Educational Services Center
4700 South Yosemite Street
Greenwood Village, CO 80111
720-554-4471

전자통신망 정보 자원
(EHC)

위원회는 정보통신과 인터넷(월드와이드웹이라고 하는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을 포함한 기타 신기술로 인해 사회 구성원이 정보를 이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전자 정보의 이용은 수업 방법을 바꾸고 학생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정보 통신 시대에는 전자 정보 검색 능력이 시민과 향후의 교직원들이 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능력으로 간주되며,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고 알리기 위한 학습 자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전자식 정보 출처,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는 교실을 전세계의 광범위한 최신 정보 자원과 연결해 줌으로써 학습 환경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이 이처럼 풍부한 정보 자원을 이용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도구들이 제시하는 교육적 기회가 사용자가 학군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터넷 및 전자 통신은 사용자가 여러 출처에서 자료 및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동적인 환경이다. 교직원, 학생 및 기타 자원봉사자나 공급업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허가 사용자는 학군의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학군의 정책에 위배되는 자료나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직원이 이와 같은 정보를 전체 교육 과정에 걸쳐 사려 깊게 사용하고 학생에게 해당 자료의 적절한 사용에 관해 지도하고 가르칠 것을 기대한다. 교직원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점의 교육에 관해 규정한 위원회 정책 IMB/IMB R과, 위원회 정책 IJ/IJK에 포함된 교재 선택 지침을 참고하고 해당 정책의 목표를 존중해야 한다.

전자 자료를 학군에서 승인한 교과 과정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직원들은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 및 평가함으로써 위원회 정책 IJ 및 IJK에 열거되어 있는 위원회의 교재 선택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자료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군의 네트워크 전자 정보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학생이 사용 전에 검토 및 평가가 완료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될 것이다. 학생은 이러한 자료 출처를 벗어나 교직원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접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정보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교직원은 이런 방법으로 학군의 교과 과정과 관련된 조사 및 기타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 및 전자식 정보 자원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은 체리크리크 학군 네트워크 자료의 적합한 사용에 관한 계약에 서명을 해야만 학군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계약에는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인 학생이 네트워크 전자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행동 및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규정한 적합한 사용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학생은 부모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교직원의 감독 없이 전자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학생 및 교직원, 기타 허가 사용자는 학군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전자 정보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이용하는 자료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도록 권장한다. 여기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교육과 네트워크 전자 자료의 윤리적인 사용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학군의 컴퓨터와 CCSD Net은 체리크리크 학군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래의 지침은 학군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전자 정보 자료(CCSD Net)의 모든 사용에 적용된다.

음란, 외설 및 유해 정보의 차단 또는 필터링

위원회가,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기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규정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전자 통신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학군 관할 컴퓨터에는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차단하거나 걸러내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 중 완벽한 것은 없으며, 사용자가 부적절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체리크리크 학군은 사람에 따라 불쾌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인터넷 컨텐츠나 그 이용을 통제하지 않으며,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군은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이용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주는 피해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군 관할 컴퓨터나 CCSD Net를 통해 획득한 모든 정보의 사용에 따른 위험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

체리크리크 학군은 학군 관할 컴퓨터나 CCSD Net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인하며, 시스템에 상주하거나 시스템을 통과하는 정보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용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을 제품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학군 관할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전자 메일, 그리고 학군 관할 컴퓨터 및 CCSD Net의 사용은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으며, 검사 및/또는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 불가

학군 관할 컴퓨터와 CCSD Net은 학군의 소유로서, 항시 교육 목적과 학군의 업무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교직원 및 학생, 기타 허가 사용자는 인터넷이나 전자 통신을 사용할 때 사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학군은 모든 인터넷 및 전자 통신의 이용과 자료 및 정보의 송수신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군 관할 컴퓨터와 CCSD Net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항시 사전 통지 없이) 감시, 검사, 복사, 검토 및 저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학군 관할 컴퓨터와 CSSD Net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액세스/수신한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재산권은 계속하여 학군에게 귀속된다. 사용자는 학군 관할 서버나 컴퓨터에 연결된 기기에 저장한 파일이나 기타 전자메일을 포함한 CCSD Net을 통해 이용하는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공공 기록

학군의 교직원들이 송수신하는 전자 통신은 콜로라도 주 공개기록법에 따라 공개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든 교직원의 전자 통신은 관련 주 및 연방 법률과 해당 학교위원회 정책에 따라 감시하여 모든 공공 전자 통신 기록이 해당 법규 및 정책 요건에 따라 저장, 공개, 보관 및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무허가 및 불량 사용자

교직원 및 학생, 기타 허가 사용자는 학군 관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을 책임 있고, 효율적이며,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술과 기술의 사용 방법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학군 관할 컴퓨터와 CCSD Net의 모든 허용되는 용도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다. 아래에는 허용되지 않는 용도에 대해 나열되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학군의 교직원, 학생 또는 기타 허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나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 및 작성, 전송, 재전송, 또는 전달해서는 안 된다.

- 파괴용 장치나 무기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폭력을 장려하거나 재산 파괴를 주창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학군의 교육 목표와 관련이 없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성욕을 자극하거나 나체, 성 또는 배설에 대한 호색적인 관심에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또는 글로 된 음란, 외설 또는 기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연령, 기혼 여부, 장애 또는 불구에 관하여 타인이나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개인의 이익, 금전적인 이득, 광고, 상업 거래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명시적인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이나 저작물을 표절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학교 커뮤니티에 소속된 타인에게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완전히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저작권 자료 및 산업 기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법률을 위반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기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교직원이 행정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합법적인 직무나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타인을 사칭하거나 익명 메일 재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 CCSD Net에서 포트 스캔, 네트워크 스캔, 네트워크 모니터를 실행하거나 CCSD Net 상에 있는 스캔 도구를 사용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단, 시스템 관리자의 사건 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직무나 교육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키보드 로거, 비밀번호 크랙 프로그램, 해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파일 공유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단, 파일 공유가 합법적인 직무 관련 업무나 교육 목적의 일부로 허가되었을 경우는 제외.) 본 정책에서, "해킹"이란 "컴퓨터, 컴퓨터 파일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불법적으로나 허가 없이 획득하거나 허가 없이 컴퓨터 데이터를 보거나, 수정하거나, 훔치거나, 파괴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 시스템 관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유료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자료/정보/소프트웨어.

학군 관할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교직원, 학생 또는 기타 허가 사용자는 인터넷, CCSD Net 또는 기타 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동안 보안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건물의 시스템 관리자나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직원 및 학생은 다른 사용자에게 문제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 관리자 ID로 인터넷이나 전자 통신에 로그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직원 및 학생은,

- 학군이 정한 적절하고 명시적인 허가 없이 타인의 비밀번호나 기타 식별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 학군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또는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가 없이 획득하거나 획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 명시적인 허가 없이, 또는 학군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타 시스템 사용자의 전자 통신을 읽거나, 수정, 삭제 또는 복사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로 분류되었거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교직원, 학생 또는 기타 허가 사용자는 인터넷 및 전자통신 이용이 거부될 수 있다.

<u>일반인을 상대로 한 전자 통신</u>

학군의 전자 리소스는 교육 및 학교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이나 학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블로그, 위키, 로드캐스트 또는 기타 전자 통신이나 온라인 토론은 학군이 관할하는 전자 리소스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통신과 블로그, 위키, 게시판, 포드캐스트, 채팅방, 리스트서브, 또는 기타 학군의 업무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메일 발송 목록은 교실 및/또는 학군 업무의 확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학교 위원회의 모든 적용되는 정책 및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전사 통신 형식을 교실에서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각 학생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전자 통신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허가서에 부모/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2. 학생들에게 이러한 전자 통신 유형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도한다.
3. 이러한 통신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 및 검토하여 적용되는 학군의 정책이 준수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감독

학군은 교직원 및 학생에 의한 모든 인터넷 이용을 감독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체리크리크 학군에서 학군 관할 컴퓨터나 CCSD Net의 부적절한 사용을 구성하거나 타인이 학군 관할 컴퓨터나 CCSD Net을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사용 권한의 박탈이나 기타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기존의 징계 정책에 따르며, 정학 및/또는 퇴학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해당 사법 기관에 신고될 것이다. 사용자는 학군 관할 컴퓨터나 CCSD Net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타인을 매도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성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타 인종을 모욕하거나, 불법적인 자료를 이용 및 제출, 게시 또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는 학군 관할 컴퓨터 및/또는 CCSD Net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저작권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저작권 자료를 복사, 저장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모든 자료에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기밀보장

학군 컴퓨터와 CCSD Net의 사용자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군의 교직원에 대한 비밀정보를 이용, 수신, 전송 또는 재전송할 때 해당 주 및 연방 정부의 기밀보호법과 학교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으나 그 민감한 성격으로 인해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하는" 자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포함한 학생의 비밀 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FERPA(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학생 기록이나 기타 기밀 정보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사전 서명 허가 없이 학군 밖의 개인이나 기관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학교위원회 정책 JRC(학생 기록/학생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그 동반 규정인 JRC-R에 명시된 FERPA에 대한 예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학생 기록 및 기타 기밀 정보는 기록을 공유하는 교직원이 학생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관심을 갖고 있고, 기록이 정당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공유된다는 전제 하에 이메일을 통해 학군 내 다른 교직원과 공유할 수 있다.

전자 메일 시스템을 포함한 학군이 보유한 기술 제품에, 또는 기타 모든 전자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는 모든 학생에 관한 기록은 학생 기록부의 일부로서 학부모/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FEPRA의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전자 통신을 통해 학생의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교직원은 기술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밀 기록이 본의 아니게 비관련자에게 전송 또는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 기록이나 기타 학생의 기밀 정보를 FEPRA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메일로 공개하는 교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행위

파괴 행위를 하는 자는 권리가 박탈되며, 학교는 그에 대해 징계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괴 행위는 학군 내 모든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나, 모든 형태의 전자 통신, 모든 네트워크 또는 전자 통신에 포함된 데이터나,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 다른 사용자에 의한 사용이나, 학군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위해 및 파괴, 변경, 남용하거나 그 작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업로드하거나 이를 만들고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군은 시스템 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무허가 소프트웨어

교직원 및 학생이 소프트웨어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운로드했거나 달리 소지하게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직원, 학생 또는 기타 허가 사용자는 학군의 소유가 아니거나 학군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학군 관할 컴퓨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용 권한

교직원 및 학생은 학군 관할 컴퓨터 및 CCSD Net을 인터넷 및 이메일 통신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때,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도구의 허용 용도와 허용되지 않는 용도를 이해해야 한다. 교직원 및 학생의 인터넷 및 전자 통신 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다. 본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며, 학교 당국에 의한 징계 조치 및/또는 법적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군은 언제든지 학군 관할 기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군 관할 컴퓨터와 CCSD Net을 이용하여 수천에 이르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정보 리소스를 탐색할 수 있다. 인터넷은 학생에게 전세계의 사람들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인터넷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단점을 크게 초월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매체 및 정보 출처를 사용할 때 자녀가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알리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체리크리크 학군은 자녀가 전자 네트워크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각 가족의 권리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학군에 의한 보증 없음

체리크리크 학군은 인터넷 및 전자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 학군 관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에 관해, 또는 이러한 이용 및 서비스에 오류 또는 중단이 없을 것이라는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도 하지 않는다. 학군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학군이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수신되는 정보를 허가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군은 교직원이 학군 관할 컴퓨터나 인터넷 및 전자 통신의 사용 또는 조작으로 인해, 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손실과 서비스의 중단이 포함된다. 인터넷이나 전자 통신을 통해 획득한 모든 정보의 사용에 따른 위험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

전자 메일

전자 메일은 네트워크를 통해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자 메시지이다. 학군의 시스템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자가 전송하는 전자 메일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리크리크 학군은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움직임을 검토하고 감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사용자는 학군 관할 서버에 저장된 전자 메일을 포함한 파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교장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본 정책을 이행하고, 본 정책이 교육과 학생의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안일: 1997년 6월 9일
채택일: 1997년 8월 11일
개정일: 2008년 8월 11일

참고 법률: 47 U.S.C. 254(h) (2000년 인터넷 아동 보호법)
47 U.S.C. 231 (1998년 온라인 아동 보호법)
20 U.S.C. 6801 조 이하 참조 (초등 및 중등 교육법)
C.R.S. 24-72-204.5 (전자 통신의 감시)

참조: EGA, 전자 메일
EGAD, 저작권/로열티
EHCA, 웹 및 인터넷 게시
JS 학생의 인터넷 및 전자 통신 사용
JRC 학생부 기록/학생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인터넷 및 전자통신에 대한 학생의 사용 (JS)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라 불리는 지구 컴퓨터 통신망 및 전자통신 (전자우편, 체팅룸 외 다른 전자통신)은 교육과정 및 학생 학습의 무한한 지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자원들이 학교에서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학습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터넷 및 전자통신 사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명하게 쓰고, 문제해결 수단을 사용하며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컴퓨터 및 조사 능력을 갈고 닦음을 요한다.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또한 꾸준한 학습자세를 지지하며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와의 상담 및 문의, 다른 학생이나 개인과의 통신 및 교육적 또는 개인적 정보를 위한 자료를 찾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위원회는 인터넷 및 전자통신이 제공하는 교육적 가능성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교육의 목적과 배치되는 자료들을 얻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믿는다. 그러나 인터넷 및 전자통신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해로운 여러 출처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동적인 환경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그들 자신들의 학군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찾거나 그에 접촉하게 될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학생들을 음란한 정보, 아동 포르노 및 교육위원회에서 정의하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한다.

유해성 외설 및 음란성 정보의 차단 및 제거

음란한 자료 및 정보, 아동 포르노나 교육위원회가 정의하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 및 정보를 차단하고 걸러내는 기술은 인테넷이나 전자통신 매체에의 접근이 가능한 학군내 모든 컴퓨터에 설치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 방침을 위반하는 사람을 감독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정 학생이 그러한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이를 감지했을 경우에도 감독직원에게 보고 해야한다.

프라이버시의 비보호

학군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은 학군 소유이며 항시 교육적 목적을 의도한다. 학생들은 인테넷 또한 전자통신 매체 사용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한다. 학군은 인테넷과 전자통신 접촉 및 자료나 정보 전송, 수신을 포함한 모든 학군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 사용을 (아무때나 사전 통보없이) 감시, 점검, 검사, 복사 및 저장할 권리를 보유한다. 학군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접촉, 수신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는 학군의 소유로 남는다.

무단 및 올바르지 않은 사용불가

학생들은학군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느데 있어서 책임감, 능률 및 도덕적 그리고 합법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업기술 및 과학기술 사용법은 끊임없이 진화되기에 모든 허용되지 않는 학군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 사용들을 규정상 명확히 정의 할 수 없다. 그럼으로 다음과같이 옳바르지 않은 사용에 대한 몇가지 예를 명시한다.

그 어느 학생도 다음과 같은 자료나 정보를 접촉, 작성, 전송, 재전송 또는 발송해선 안된다.

- 학군의 교육목적과 관계없는 자료나 정보
- 파괴적 장치 및 무기 제조 및 구입에 관한 정보를 외 폭력을 조성하거나 기물파괴를 지지하는 자료나 정보
-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나체, 성교나 배설에 대한 외설적 호기심 충족을 의도하는 문구나 사진따위의

포르노나 음란한 성적 표현을 포함한 자료나 정보

- 학군의 차별 금지 정책을 위반하여 타인이나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장려하는 행위
- 개인이득, 금전적 착취, 광고 및 상업거래 혹은 정치목적을 위한 자료나 정보
-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도용하는 자료나 정보
- 학교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할 만한 부적당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자료나 정보
- 고의적 허위나 타인의 명예의 고의적 손상을 의도로 구성된 자료나 정보
- 저작권이나 기업비밀로 보호된 자료 외 연방정부 및 주정부법에 보호 되는 자료나 정보
- 본인이 아닌 제삼자로 위장하거나 익명으로 전송되는 자료나 정보
- 시스템 관리자의 특정 허가없이 유료 시설에 접촉하는 자료나 정보
- 서면 승락없이 타인의 인테넷이나 전자통신 구좌에 접근하는 자료나 정보
- 포트 스캔, 네트워크 스캔, 네트워크 감시, 키로거, 패스워드 크래킹 프로그램, 해킹 소프트웨어 또는 권한 없는 파일공유를 실행하는 자료나 정보. 해킹이란 "불법으로 또는 권한 없이 컴퓨터, 컴퓨터 파일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또는 권한 없이 컴퓨터 자료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훔치거나, 손상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교육 위원회 정책에 반하는 자료나 정보

<u>안전보장</u>

학교 구역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은 최고의 우선사항이다. 인터넷이나 전자통신 사용중 안전상의 문제를 인지하는 학생들은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문제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설명해선 안된다. 인테넷 및 전자통신 시스템 관리자 인것처럼 접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학생들은:

- 타인의 암호 및 사용자 이름을 사용해선 안된다.
- 무단으로 학교 구역 기술 장치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선 안된다.
- 다른 시스템 사용자의 전자통신 내용을 읽거나 삭제하거나 복사를 시도해선 안된다.

안전사의 위험이나 다른 기술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과의 문제 내력이 있는 사용자로 확인되는 사용자들은 인테넷 및 전자통신 사용을 거부 당할 수 있다.

<u>개인 전자통신 장치</u>

개인 전자통신 장치는 PDA, 휴대전화,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아이팟, 준, MP3 플레이어, 휴대용 CD 또는 DVD 플레이어 또는 단독으로나 사용자 간 통신 네트워크 형태로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개인용 공학기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학교에서 이들 장치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들 장치를 분별력 있고, 능률적이며, 윤리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어느 학생의 개인 전자통신 장치의 사용이 부적절한지 또는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장치의 몰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러한 장치는 확립된 건물지침에 의거하여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반환된다.

개인 전자통신 장치의 부적절한 사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교육적인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비디오, 사진, 오디오 또는 텍스트를 다운로드, 전송 또는 검색하거나
-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개인 또는 학교와 무관한 파일을 학군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기타 학습 분위기를 교란하는 원치 않은 또는 불필요한 전자통신 또는 기타 통신 발송을 포함하여 그러한 장치를 "사이버-괴롭히기"에 사용하거나
- 그러한 장치를 교육 위원회 정책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개인용 컴퓨터 사용

학생은 건물관리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현장 기술직원을 포함하여 그가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무선이든 유선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CCSD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 권한이 부여된 기술직원은 CCSD 네트워크에 연결될 개인용 컴퓨터가 그러한 목적에 적합하고 학군의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학군의 전자 네트워크에 연결하도록 승인을 받은 이상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

학군은 하드웨어 고장, 데이터 소실 또는 바이러스 침투에 의해 초래된 소실 또는 손상을 포함하여 학생의 컴퓨터가 CCSD 네트워크에 연결된 동안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공중을 위한 전자통신의 사용

학군 컴퓨터의 사용은 교육 및 학교 업무에 제한된다. 학교 또는 학군의 교육 과제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개인 블로그, 위키, 팟캐스트 또는 기타 전자통신 또는 온라인 토론은 학군 컴퓨터로부터 또는 학군의 전자통신망을 통해 접속하지 못한다.

공중 및 온라인 토론 형식을 위한 전자통신은,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블로그, 위키, 게시판, 팟캐스트, 채팅 룸, 리스트서브, 또는 기타 전자우편 목록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으며 교실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적용 가능한 모든 교육위원회 정책과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학생은 학군의 전자통신망 자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교육 또는 교실과 관련한 블로그, 위키, 팟캐스트 또는 기타 전자통신 또는 온라인 토론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군의 전자통신망 자원을 통해 월드 와이드 웹에 접근하려면 학부모/보호자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

학생들은 인테넷 및 전자통신 사용중 집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신상정보를 노출해선 안된다. 학생들은 감독직원의 허락없이 자신의 성이나 다른이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사용해선 안된다.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전자통신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개인적 만남을 만들어선 안된다.

기물파손

기물파손 행위는 학교 구역 컴퓨터 사용의 특혜 취소나 학교내 징계 또는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기물파손은 학군내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된 통신망, 어떤 형태의 전자통신, 어느 네트워크나 전자통신에 함유된 자료, 다른 사용자의 자료, 다른 사용자의 사용 또는 학군 소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파괴, 변경, 악용 또는 기능 파괴 시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암호화 소프트웨어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

무허가 소프트웨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거나 타당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거나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학생 과제 배정 및 사용 감시

학교 구역은 학생들의 책임감있는 인테넷 및 전자통신 매체 사용을 살피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학교 관리자, 교사 및 직원들은 함께 학생들의 인터넷 및 전자통신 사용을 감독하고, 학생들이 여러 정보 출처를 식별하고 그들의 나이와 성장 수준에 알맞는 정보를 분간할 수 있는 지능을 키우고 그들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정보를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직업적 의무가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전자통신상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하기전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와 적적한 자료검색 전략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인터넷 및 전자통신 사용 감독을 맡은 교직원은 학생 인터넷 및 전자통신 안전 및 학생 사용 감독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생의 사용 특전

인터넷 및 전자통신 사용은 개인의 책임감과 그런 도구의 허용 또는 허용되지 않는 사용법의 이해를 요한다. 학생들의 인터넷 및 전자통신 사용은 권리가 아닌 특전이다. 이 규정에 포함된 사용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런 도구사용 특전의 상실과 학교 징계 및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군은 어느때나 학군 기술 사용을 거절, 취소, 보류 또는 구좌패쇄를 할 수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및 보호자는 인터넷 및 전자통신 구좌 지급 및 사용전 매년 학군의 허용된 사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학교 구역의 보장 불가

학교 구역은 인터넷과 전자통신 시설을 포함한 학군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사용에 대한, 명시 혹은 암시된 내용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설 사용 제공은 내용물에 대한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수신된 정보의 정확도 및 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 자료 손실 및 서비스 중단을 포함한 학교 구역 내 학생들이 인터넷 및 전자통신을 사용함으로 입는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터넷 및 전자통신을 통해 얻은 정보의 사용은 학생 개인 책임하에 있다.

수정 일: 2012 년 12 월 12 일
채택 일: 2012 년 1 월 9 일

법적 참고자료:
47 U.S.C. 254(h) (2000 년 어린이 인터넷 보호 법령)
47 C.F.R. 부분 54, 서브 파트 F (학교와 도서관에 대한 보편적 지원)
20 U.S.C. 6751 et seq. (2001 년 기술 법을 통해 교육 강화)
C.R.S. 22-87-101 et. esq.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

기타 참교자료:
AC, 차별 금지/기회의 평등
EGA, e-메일
EGAD, 저작권/특허권
EHC, 전자 정보 통신망
EHCA, 인터넷 및 웹 발행
JB, 평등 교육 기회
JICDA, 품행 및 징계 규약
JICJ, 학생의 전자 통신 장치 사용

학교 방문자
(KI)

교육위원회는 부모/보호자 또는 기타 학군의 주민들이 학교의 수업, 활동 및 기능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무엇인가를 알기위한 최고의 방법은 실제로 참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다.

학교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학교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자에게는 방문을 허용한다.

비관계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교무실에서 신고를 해야하며 적합한 신분증과 학교에 온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방문자들은 방문록에 서명하고 명찰 또는 방문자 패스를 받아서 착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업 또는 조립 프로그램에 초대된 부모/보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내 출입자의 건강, 복지 및 편안과 관련 주법에 따라 직원, 학생 또는 방문자의 학교내에서의 흡연 및 담배 제품으로 된 것을 씹는 것은 금지된다.

학군은 학교내, 학교 버스 또는 학교에서 1000 피트 이내에서 불법물질을 판매 또는 이용하여 형사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가중처벌 될 것임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채택일자: 2000년 10월 10일

참고 법률: C.R.S. 18-9-112, 수정됨
C.R.S. 18-112-105.5
C.R.S. 18-18-407(2)
C.R.S. 22-32-109.1(7) (학교개방 정책은 학교안전 계획의 하나로 요구됨)

참고 자료: ADC, 담배없는 학교
ECA, 건물 보안 및 접근
KFA, 학교시설에서의 대중행위

학교 방문자
(KI-R)

모든 학교의 주요 기능은 적합한 교육환경의 제공 및 유지에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 건강보호, 학생의 안전 및 복지와 교육절차 및 학교 기능의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제약, 규정 및 안내사항을 확립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규적 또는 간헐적인 부모/교사 컨퍼런스, 오픈 하우스, .개강. 전야, 신용평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위원회의 방문 또는 기타 예정된 부모/교사/학교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환경 절차의 저해를 최소화하고 부모/교사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정되지 않은 부모의 수업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1. 방문자는 교무실에서 방문자 등록을 하고 방문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방문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방문일자 및 시간이 예정된 시험, 현장 답사, 특별 프로젝트 또는 외부 방문객으로 인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타학교와의 행사 일정 등과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요청을 거절 또는 새로운 일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수업의 방문은 보통 4시간 이상 초과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장될 수 있다. 연속적인 방문은 그와 같은 연속적인 방문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부될 수 있다.
4. 과거의 방문 환경 또는 조건에 비추어 미래의 방문이 불합리한 훼방이나 방해 또는 지연 및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요청은 거부될 수 있다.

학교 및 수업의 방문이 방해 또는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위협 및 교사와 학생의 교육환경 참여능력을 방해하는 경우 교장은 방문을 종료하고 방문자에게 돌아가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자가 그와 같은 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교장은 중앙부처의 오피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교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의 방문을 직접 또는 교사, 부모 또는 중앙부처 오피스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시할 수 있다.

1987년 발행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사정(査定) 및 평가
(IKA)

I. 성적향상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의 평가

학생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익히며 목적을 이루고 배려하도록 하고자 하는 학군의 교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A 학교 구역 프로그램

학교 구역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교육장은 행정직원의 한 명을 임명하여 학교 구역 프로그램의 평가를 담당하도록 한다. 임명된 행정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1. 학교 구역 전체의 사정 및 평가 프로그램의 계획, 개발 및 유지.
2. 지역, 주정부 및 전국 민간 및 전문 기관이나 평가 기관과의 협력 및 보조.
3.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하여 교장, 교사 및 지도 행정관 및 학사 위원과의 협조.

부교육장은 사정 및 평가 담당국을 통하여 교육의 수준 및 학생들이 학업수행 향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구역 전체의 평가 정보는 교장, 교사, 상담 안내원, 학사 위원회 및 기타 관련 직원들이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충당하고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일정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것은 또한 자녀들의 학업상태와 관련하여 부모들과 상담할 때에도 이용된다. 학군전체의 평가절차는 다양하며 각 지역별로 개발된 시험 및 평가, 설문, 인터뷰, 전국 표준 시험, 관찰 및 성취도 위주의 평가 등을 반영한다.

학교 구역이 제공하는 자료는 각종 평가의 결과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침, 예산 또는 프로그램의 변화 등을 계획하는데 이용된다.

학교 구역의 사정 및 평가 프로그램은 담당 행정관, 사정 및 평가국, 교직원 멤버에 의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한다. 교육 위원회가 매년 검토하여 성공적인 학교를 위해 추천하는 평가 프로그램과 함께 3-5 년 단위의 사정 및 평가 계획을 개발한다.

교육의 수준 및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학군의 자료를 작성하여 주정부 교육위원회의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학군의 자료와 매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군의 사정 및 평가 프로그램 결과는 매년 발표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학교 프로그램

학교 향상 프로그램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빌딩 행정관 및 직원들이 담당한다. 각 빌딩의 행정관은 학교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신중하게 평가되도록 하기위한 평가계획을 개발한다.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점에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장은 빌딩 행정관 및 직원이 프로그램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군 및 학군외의 자료, 조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C 지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원칙 안내

모든 프로그램의 평가활동은 학생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를 신중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지도 프로그램 및 결과의 이용에 대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 교육의 질을 평가학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수업일정 및 지도를 위하여 꾸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교육의 질에 대한 지표는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가능하여야 한다.

4. 사정과 평가는 지도의 종합적인 요소이다.
5. 교육의 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 (학군, 학교, 교실) 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II.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학생의 사정 및 평가

위원회, 교육장, 지도 행정관, 교장 및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익히며 목적을 이루고 배려하도록 하고자 하는 학군의 교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업수행의 사정 및 평가에 일임을 맡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평가의 주요 목적은 위원회가 채택한 수학능력 기준과 수업일정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보를 학생 및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평가 정보는 교사, 지도 행정관, 교육 위원회 및 지역사회가 학생의 성장과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Cherry Creek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한다.

A. 주 평가 시스템

학군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분야의 몇부분에 대한 표준 시험을 치뤄 평가한다.

1. 연필과 용지 시험 옵션

컴퓨터기술을 사용하여 평가를 관리하는 것이 학군의 의도이다. 그러나 컴퓨터 평가의 한 부분을 완료하는데 연필과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의 경우, 컴퓨터 대신 연필과 용지를 사용하여 주 평가를 완료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제 504 팀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한다.

연필과 용지를 사용하여 평가를 완료하는 결정에 간주되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 학교/교실의 기술적 능력과 자원
- 학생의 컴푸터 및 서면 평가 이전 경험
- 특정학교/교실의 교육 방법론이 컴퓨터 평가와 일치한가의 여부 또는
- 특정 학교에서 다른 형식으로 주 평가 집행 가능성

연필과 용지 사용 옵션을 결정하기 전 교육감 또는 그/그녀의 지명인은 결정에 영향을 받는 학교 교장, 학군에 등록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와 협의한다.

2. 학부모/보호자의 학생 시험 면제 요청

주 정부의 특정 평가에서 자녀(들)을 면제하기 원하는 학부모/보호자는 평가 정책 규제 및 주 법률에 따라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시험 면제를 요청하면 학군은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제 과정 정책은 주 평가에 적용되지 학교 학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의 주 평가 결과 공유

콜로라도 교육부서는 학군에 등록된 각 학생에 대한 학업 성장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각 공립학교에게 이전 학년의 주 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이전 학교년 주 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정보는 개별 학생의 학교 누적 기록에 포함된다. 적합한 교직원이 학생의 주 평가 결과를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장기적인 학업 성장 정보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주법과 이 정책과 동반된 규정에 따라 학군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연간 기준으로 평가일정을 배포해야 하며 해당 학년도에 치뤄야하는 평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학교 구역 전체의 평과 제도

학군의 사정 및 평가 제도는 학군의 교훈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군의 사정 정보는 학생의 학업진전에 대한 평가 및 감시와 관련 교사의 판단을 보조 및 지원하며 교사의 판단을 대치할 수 없다. 주정부 및 전국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군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보강 및 지원하는 자료이다. 학군차원의 사정 제도는 학군의 직원이 학교내 및 학교간의 교사들 판단의 일관성과 효력을 가늠할 수 있게해야 한다.

학군차원의 사정 제도는 학생의 성장과 수학에 책임이 있는 학생, 교사, 부모, 학교 행정관 및 교육 위원회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성적책임 제도이다.

주법과 이 정책과 동반된 규정에 따라 학군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연간 기준으로 평가일정을 배포해야 하며 해당 학년도에 치뤄야하는 평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교실 및 학교 차원의 성적 및 사정 제도

본 학군은 달성목표를 각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전념한다. 본 학군은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절차에서 지적인 성취를 강조하여야 한다.

행정 및 전문 요원은 학생들의 학습목적과 학군의 학업능력 성취에 대한 진전상황을 평가 및 기록할 수 있는 사정제도를 개발한다. 각 학생별 기록 및 보고서는 부모와 교사 모두가 학생의 수학능력 향상의 평가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관리 및 교부되어야 한다.

교실 및 학교의 평가제도는 다양한 평가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지식과 기능을 골고루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성적 및/또는 평가 제도가 근본적으로 단순한 판단의 사안임을 교육 위원회가 인정하지만 인간의 오류 또는 학생의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특정한 방법을 활용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학생의 사정 및 학업성적 향상에 대한 원칙 안내

학생 평가의 모든 활동은 학생들의 성장과 수학능력의 향상에 주력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은 학생 평가의 개발 및 시행과 결과의 사용에 대한 안내이다.

A. 학생의 수학능력 및 진전 상황의 평가에 있어서 교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의 수업활동, 성적, 숙제, 평가 등을 근거로 하는 학생의 수학능력 및 진전에 대한 교사의 판단은 신용할 수 있는 것이다.

B. 학생의 평가는 생산적인 지도변화와 학생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수업일정, 지도, 평가, 직원 개발) 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C. 모든 수준의 평가는 신빙성, 유효성 및 일반성 등의 적절한 기술적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을 낮추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평등 문제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D. 학군 및 학교 차원의 평가는 교사의 지속적인 사정 및 평가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E. 각종 사정 및 평가는 각각의 핵심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이상적인 선례를 활용하여야 한다.

F.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가의 형태로 각자의 수학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한 번의 평가로 학생의 수학능력 학업 목적의 달성을 평가하는 증거로 충분할 수 없다.

G. 학생의 평가 제도는 학생의 성취도를 공평하고 비교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간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III. 개념 정의

사정

학생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여러차례 사정의 결과가 하나의 평가로 될 수 있다.

평가
사정 정보에 대한 판단의 적용. 학업의 이행을 의도했던 결과와 비교한다.

마지막 수정: 2012 년 1 월 9 일
현재 수정: 2016 년 2 월 8 일
법적 참고: C.R.S. § 22-7-1006.3(1) (주 평가 시행 일정)
C.R.S. § 22-7-1006.3(1)(d) (학군은 콜로라도 주 정부 교육부에 연필과 종이 형식으로 주 평가를 치르는 학생의 수를 보고해야한다)
C.R.S. § 22-7-1006.3(7)(d) (주 평가 결과를 가능한 경우 학생의 성적표에 포함한다)
C.R.S. § 22-7-1006.3(8)(a) (학생의 주 평가 결과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정책)
C.R.S. § 22-7-1013(1) (학군 학업 기준)
C.R.S. § 22-7-1013(6) (주 평가에 연필과 종이의 사용에 대한 요구 정책)
C.R.S. § 22-7-1013(7) (학부모/보호자에게 평가 일정을 제공하는 절차의 필수)
C.R.S. § 22-7-1013(8) (부모가 주 평가 참여에 자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절차)
C.R.S. § 22-11-101 et seq. (2009 년 교육 책임법)
C.R.S. § 22-11-203(2)(a) (교장은 학생들의 학업 성장 정보를 "수신시" 교육자들에게 제공 필수)
C.R.S. § 22-22-504(3) (학생 주평가 결과와 장기간 학업성장 보고에 대한 설명 필수)

참고 자료.: JLDAC, 학생들의 검사/시험
LC, 교육 연구 기관과의 관계
JRC, 학생에 대한 정보 및 학생기록 공개

만성 또는 급성 건강 상태의 학생 (JLCDA)

위원회는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또는 급성 건강 상태로 음식 알르레기, 곤충 독침이나 다른 환경 요소 또는 항원 (아나팔락시스)에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팔락시스 쇼크의 관리에 관한 주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개 위하여 다음의 요구 사항을 세운다.

의료계획
학교 간호사 또는 학교 관리자는 학교 간호사와 상의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또는 급성 건강 상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의료 계획을 개발및 구현한다. 응급의료 초치에 대한지침에 대하여 학교와 응급 서비스 간의 의사소통을 계획한다. 만약 학생이 연방 법률에 따른 장애 학생이거나, 제504 계획 학생,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 학생 및 또는 기타 계발 계획의 학생이면 해당 연방법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간호사나 학교 간호사와 협의한 학교 관리자, 자격증 직원이 학생별 선택 상황에 선택한 간호 작업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IHP 는 해당 정책에 따란 간호 업무의 위임이 반영된다.

합리적인 방침
합리적인 방침은 학교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원인이 될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 만약 학생이연방 법률에 따른 장애 학생이거나, 제504 계획 학생,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 학생 및 또는 기타 계발 계획의 학생이면 해당 연방법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응급 약품 액세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치료하기 위함 비상 약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지정된 교직원만 액세스 할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면 이사회 방침 JLCA, 학생 건강 서비스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 자체가

알레르기를 치료 할 수 있는 약물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한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의 알레르기나 필락시스 쇼크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학교에 제공해야한다.

직원 교육

학교장 또는 동급 학교 관리자는 학교 간호사와 상의해 긴급 아나필락시스 치료 교육 수식자을 결정하되 학교에서 수업을 한는 동안 만성 또는 급성 건강 상태가 있는 학생과 관여된 직원을 포함한다. 최소한 이 훈련은 급성 건강 상태의 기본적인 이해와 중요성 및 아나필라시스 쇼크의 증상을 인식하는 능력 및 그것의 반응을 알고 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 받는다. 이 훈련은 자가 에피프린 주입 지침을 포함한다.

채택: 2010년 6월 14일
수정: 2016년 2월 8일
참고 법률: 20 U.S.C. 1400 et. seq.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7)
29 U.S.C. 701 et. seq.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42 U.S.C. 12101 et. seq.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C.R.S. 12-38-132 (delegation of nursing tasks)
C.R.S. 22-2-135 (Colorado School Children's Food Allergy and Anaphylaxis Management Act)
C.R.S. 22-32-139 (policy required regarding management of food allergies and anaphylaxis among students)
C.R.S. 25-1.5-109 (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shall develop, maintain and make
available a standard form for school districts to gather information concerning student's food allergies)
1 CCR 301-68 (State Board of Education rules regarding Administration of Colorado School Children's Asthma
and Anaphylaxis Act and Colorado School Children's Food Allergy and Anaphylaxis Management Act)
참고 자료: JLCA, Student Health Services and Requirements

메모:

메모: